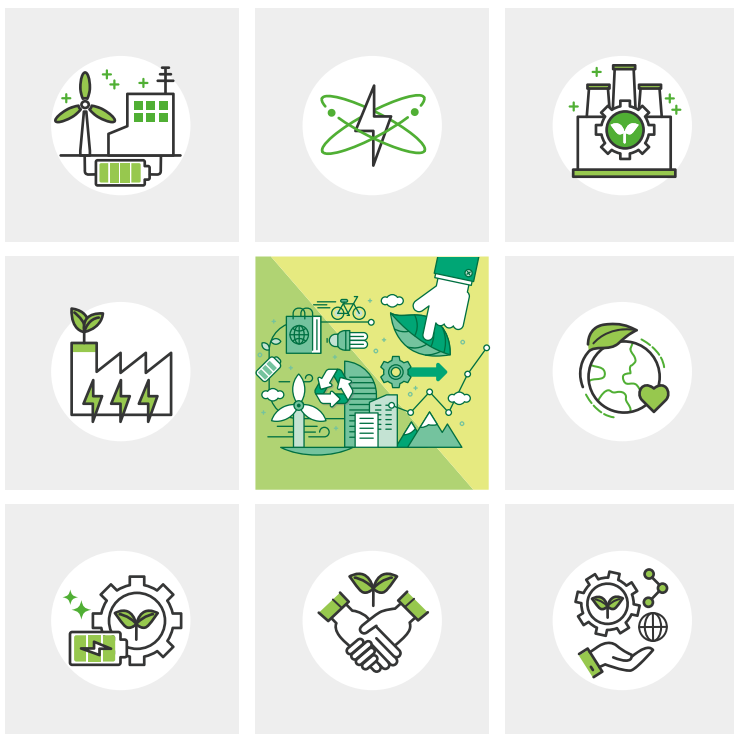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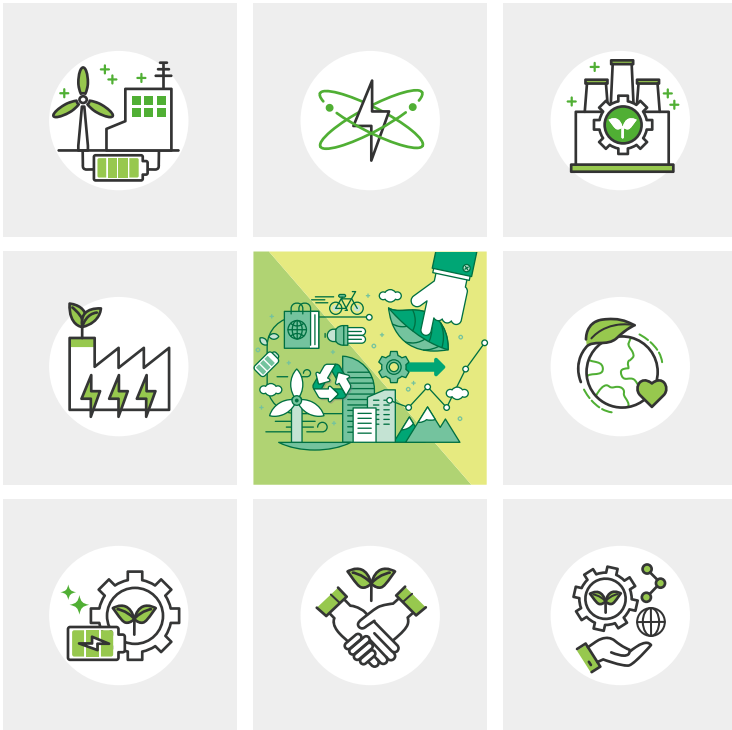


# 기업현장·지자체 담당자를 위한 환경규제 혁신 핸드북



2024. 3.

# 기업현장·지자체 담당자를 위한 환경규제 혁신 핸드북



## 들어가는 말

- 환경부는 환경보전과 국민의 안전과 건강 등 환경목표는 견고히 유지하면서,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낡은 규제는 적극 개선하고 있습니다.
  - 새 정부 출범 이후 363개의 개선과제를 발굴·추진하였으며, 2024년 3월말 기준 234개 과제를 완료하였습니다.
- 「**환경규제 혁신 핸드북**」은 기업현장·지자체 환경규제 업무 담당자부터 환경규제 혁신에 관심이 있는 국민을 위해 발간되었습니다.
  - I. 주요 개선사례는 현장사례를 통해 환경규제 개선 효과를 설명하였고, II. 추진과제 목록에서는 화학물질 관리, 탄소중립 등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 내용을 총정리하였습니다.
- 규제개선 혜택을 온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환경규제 혁신 핸드북**」이 유용한 길라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 목 차

### I 주요 개선사례 05

### II 추진과제 목록 33

- ① 화학물질 관리체계 개편 ..... 35
- ② 탄소중립 전환 촉진 ..... 46
- ③ 순환경제 구현 ..... 59
- ④ 환경영향평가 내실화 ..... 79
- ⑤ 국민체감형 규제개선 ..... 89
- ⑥ 기업 현장애로 규제개선 ..... 107

- <참고> 1. 현황 및 담당부서 ..... 132
2.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운영 ..... 133
3. 화학물질관리 규제 합리화 방안 및 시행시기 ... 135

기업현장·지자체 담당자를 위한  
**환경규제 혁신 핸드북**



I

## 주요 개선사례

기업현장·지자체 담당자를 위한  
**환경규제 혁신 핸드북**



환경부

## 01 화학물질 관리

## 1

## 소량의 신규화학물질 등록신청 자료를 간소화하여 기업의 등록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 ☑ 소량 신규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 간소화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개정, '22.7월)

**기 존** 소량 신규화학물질 등록신청시 9개의 시험자료를 생산 또는 구매하여 제출

**개 선** 물에 잘 녹지 않는 물질이나, 다른 화학물질 합성에 사용하는 물질(중간체) 등은 시험자료 9개 중 2개를 생략하도록 하여 기업의 등록 부담을 완화

소량의 신규화학물질을 다수 취급하는 A사는 화학물질 제조·수입 전에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사전에 화학물질 등록을 하여야 하나, 9개의 시험자료를 생산하는데 물질당 약 34백만원이 소요되어 부담이 되었다.

그러나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물용해도가 1mg/L 미만이거나 중간체·공정속도조절제 용도로 쓰이는 경우 시험자료 2개를 생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A사는 물질등록에 드는 비용의 2/3를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I. 추진과제 목록 p.35 1번 과제



2

##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해 반도체 업종 맞춤형 취급시설 기준을 도입하였습니다.

### ☑ 반도체 업종 맞춤형 취급시설 기준 도입

(「반도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 '22.12월)

**기 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관리 기준이 업종 등 취급 특성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어 현장 적용 및 설치검사에 어려움 발생

**개 선** 반도체 제조업종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특성을 반영한 취급시설 기준 마련

B사는 반도체 생산설비를 증설하려고 하고 있다. 반도체 생산설비는 완제품 또는 모듈 형태로 설치·운영되며, 생산설비 내부의 배관 재료, 내압시험 여부 등을 검사받아야 한다. 그러나 생산설비 내부검사를 위한 개폐시 설비의 품질 보증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완제품 또는 모듈 형태의 생산설비 내 배관이 「화학물질관리법」의 시설기준을 반영한 제작요구서에 따라 제작되어 국제인증을 받으면 시설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받게 되어 검사 부담 경감과 검사 기간 단축이 기대된다. B사는 화학안전은 담보하면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며 반기고 있다.

## 01 화학물질 관리

## 3

## 3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 기준의 유효기간을 연장합니다.

### ☑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 기준의 유효기간 연장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시행 '23.10.4.)

**기 존** 영세사업장에 한하여 화학물질안전원의 교육과정 이수시 기술인력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규정의 유효기간이 종료 예정(~'23.12월)

**개 선** 교육효과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유효기간 5년 연장(~'28.12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제조·보관)하고 있는 C사업장은 20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술인력이 필요하나, 기술인력 기준이 엄격\*하여 영세한 C사업장은 화학물질 전문인력을 구하기 힘든 실정이다.

\* 석사 학위 이상 취득+해당 실무 경력 3년 이상 / 기사자격증 취득+해당 실무 경력 5년 이상 등

현재까지는 기술인력 전문교육 과정(30인 미만 종업원 사업장 대상)을 통해 기술인력 자격을 충족하고 있었으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23.12.31)에 따라 학위와 실무경력 등을 동시에 만족하는 기술인력을 선임하지 못할 경우 영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었다.

정부가 발표한 대로 자격기준 규정의 유효기간이 연장(~'28.12.31) 되면 인력확보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I. 추진과제 목록 p.39 18번 과제

4

##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화학물질 대체명칭 작성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 ☑ 기업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화학물질 대체명칭 작성방법 개선

(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개정, '23.5월)

**기 존** 종전 혼합물 또는 고분자화합물에 대한 대체명칭(총칭명) 작성방법은 미국·EU에 비해 영업비밀 보호 효과 부족

**개 선** 혼합물 제품 양도·양수 시 구성 성분에 대해 EU 총칭명 작성법을 허용하는 등 총칭명 작성방법을 개선하여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강화

D사는 여러 화학물질이 혼합된 염·안료 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다. 혼합물 제품의 경우 구성성분 자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데, 기존 혼합물 내 화학물질에 대한 대체명칭(총칭명) 방식은 용도, 기능 등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타사가 본래의 화학물질명을 유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양수자에게 제품 내 화학물질 정보제공 시 영업비밀 노출이 늘 우려되었다. 제품 내 구성성분 노출로 유사 제품이 경쟁사에 의해 제조·판매될 경우 막대한 손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화학물질명 노출로 인한 영업비밀 침해 걱정을 덜게 되었다. 화학물질 총칭명 작성방법 관련 고시가 개정되어, 혼합물에 대한 영업비밀 보호 기능이 강화된 EU의 총칭명 작성방법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D사는 신규 제품 개발 시 화학물질명 노출에 대한 부담이 적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I. 추진과제 목록 p.38 17번 과제

## 02 탄소중립 촉진

## 1

## 친환경 감축기술 등 온실가스 감축 실적 인정이 확대되었습니다.

### ☑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정 범위 확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개정, '22.12월)

**기 존** 친환경 원료(바이오납사) 활용 및 바이오매스 사용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부재

**개 선** 온실가스 감축 인정 대상을 바이오납사 등 저탄소 친환경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와 모든 재생에너지(바이오매스 포함)로 확대

E사는 그간 원유에서 만들어지는 납사(Naphtha)를 이용하여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해 왔는데, 최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바이오납사(Bio-Naphtha)의 혼합사용을 추진중에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상 바이오매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인정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배출량 감축을 인정함에 따라 E사는 친환경원료 사용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II. 추진과제 목록 p.47 9번 과제

2

## 해외 온실가스 감축 실적의 국내 전환이 용이해졌습니다.

### ☑ 해외 감축 실적 국내 전환절차 간소화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개정, '22.12월)

**기 존** 해외 감축사업(CDM)의 경우 UN에서 인증받은 사업임에도 국내에서 다시 심사함에 따라 기업 부담 가중

**개 선** 제출서류·검토항목을 간소화하고 해외사업 우선 검토, 관장기관-환경부 동시 검토로 소요 기간 최소화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F사는 국제공인기관의 등록 및 감축 실적 인증이 이루어졌음에도 국내 감축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재심사를 위한 새로운 서류를 준비하고 심사를 통과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애로가 있었다.

하지만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UN에서 인증받은 감축실적(CDM 사업)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할 때 검토항목을 '국내기업의 참여 여부 및 참여비율(20% 이상)'으로 간소화하고, 최초 감축실적 인증 신청일부터 관장기관과 총괄기관(환경부)이 동시에 검토하여 소요시간이 단축되었다. 이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우리 기업의 해외 온실가스 감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 중추국가'로서의 위상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II. 추진과제 목록 p.46 3번 과제

## 03 순환경제 구현

## 1

## 커피박(커피찌꺼기)을 다양한 용도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폐기물 재활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22.11월)

**기 존** 커피박(찌꺼기)의 재활용 가능 유형이 비료·사료 등으로만 한정되어 그 외 용도는 별도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 필요

**개 선** 커피박의 재활용 가능 유형을 발전연료, 벽돌 등 요업제품 제조 등으로 확대

20대 G는 최근에 재활용(업사이클링) 프로젝트로 개발된 화장품을 샀다. 커피찌꺼기(커피박)를 이용해 만들어진 화장품이라고 한다. 그간 커피박은 일반쓰레기로 분류되어 종량제 봉투에 버려져 카페에서도 골칫덩어리로 여긴다는 뉴스를 봤었다.

이제는 순환자원으로 인정('22.3)이 가능해지면서 폐기물 규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버려지는 커피박은 '12년 이후 7년 만에 50% 이상 증가했는데, 재활용되면 온실가스 감축(1t 폐기시 338kg의 이산화탄소 배출)에도 기여하고, 재활용 사업장에 따르면 재활용에 따른 상품 판매수익도 상당하다고 한다.

II. 추진과제 목록 p.59 2번 과제

2

## 플라스틱이 다시 플라스틱으로, 폐플라스틱 열분해로 순환경제가 완성됩니다.

### ☑ 폐플라스틱 재활용 유형 확대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22.11월)

**기 존** 폐플라스틱 열분해를 통해 생산된 열분해유를 연료로만 사용 허용

**개 선** 폐플라스틱 열분해를 통해 생산된 열분해유를 석유 또는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로도 사용 가능

탄소중립과 순환경제를 위해 노력해온 H씨는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분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새벽부터 시설을 운영하여 생산한 열분해유의 용도가 한정적이어서 보일러 연료나 자체 열원으로만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앞으로는 열분해를 통해 생산된 열분해유를 플라스틱 원료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용도가 다양해졌다. I씨는 진정한 순환경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며, 더욱 탄소중립과 순환경제를 위해 힘쓰기로 다짐했다..

## 03 순환경제 구현

## 3

##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운영으로 신기술·서비스가 확대됩니다.

### ☑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제도 신설

(「자원순환기본법」 개정 '22.12월 / 시행 '24.1월~)

**기 존** 자원순환 신기술·신산업이 각종 폐기물 규제(폐기물처리업 허가, 재활용 유형·기준 등)로 인해 활성화 애로

**개 선**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서비스의 실증·상용화를 위한 규제특례 신설

※ (규제샌드박스)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조건 하에서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혁신의 실험장

\*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sandbox)에서 유래

EU 등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 자원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순환경제’ 중요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중소기업인 사업장은 제지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부산재를 이용하여 백판지를 제조하는 순환경제 신사업 아이디어가 있음에도 유해성·안전성 검증 등 여러 절차로 인해 적시에 시장에 출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24년부터는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제도’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면제·유예받고 순환경제 신제품도 적시에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또한, 혁신적인 순환경제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도록 사업장과 같은 영세한 중소·중견기업이 실증특례 사업비와 책임보험비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II. 추진과제 목록 p.61 13번 과제  
참고2 p.133



4

## 전기차 폐배터리 순환이용이 더 쉬워졌습니다.

### ☑️ 전기차 폐배터리 순환자원 지정 및 보관용량 확대

(순환자원 지정 고시 제정, '23.12월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3.12월)

**기 존** 폐기물 규제 적용으로 전기차 폐배터리의 순환이용에 한계, 재활용 원료의 보관기간이 1일 처리용량의 30일분 이하로 원료 확보에 애로

**개 선** 전기차 폐배터리 순환자원 지정으로 폐기물 규제 면제, 보관용량 기준을 1일 처리용량의 30일분에서 180일분으로 확대

• J사는 전기차 폐배터리를 활용하여 ESS(에너지저장장치)를 생산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폐배터리는 폐기물이어서 취급을 하기 위한 재활용업 허가를 받고, 폐기물 운반·보관 기준을 지켜야 했다.

이제는 재활용이 아닌 재제조·재사용 용도의 폐배터리는 순환자원으로 지정되어 각종 폐기물 규제가 면제되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J사는 향후 시장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여 투자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기업인 K사는 리튬이차전지인 전기차 폐배터리 또는 공정스크랩 등을 구매하여 정제·재련의 공정을 통해 유기금속을 추출하여 수입을 창출하고 있었다. 그간 해외에서 대량의 원료(폐배터리, 공정스크랩)를 수입할 기회가 있었으나, 보관량 및 처리기한의 한계로 포기하였다.

앞으로는 보관기간이 기존보다 6배 증가하여 대량의 원료 확보가 가능해져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을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되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반기고 있다.

II. 추진과제 목록 p.61 12번, p.66 36번 과제

## 04 환경영향평가 내실화

## 1

## 환경영향평가 관행을 개선하여 재검토 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

### ☑ 파평산단 환경영향평가 1/3 기간 단축, 2.3천억 투자 가능

(사전컨설팅 및 기존자료 적극 활용, '22.10월)

**기 존**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의 재검토를 위한 변경협의 진행에 장시간 소요

**개 선** 사전컨설팅 지원 및 주변 산업단지 조사결과 활용으로 기간 단축(1년→4개월), 재검토 결과 유치업종(8개→18개) 및 배출제한업종 등 변경

L씨는 파주에 파평산단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입주 예정인 70개 업종의 입주가 무산되면서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 좌초 위기에 있었다. 환경영향평가 결과 포름알데히드 등 수치가 높게 나와 이 물질을 배출하는 업종은 원천적으로 입주하지 못한다는 협의의견을 받았기 때문이다. 인근의 포름알데히드 수치와 비교하여 왜 파평산단만 튀는 수치가 나왔는지 납득하기 어려웠다. 환경부에 건의했더니 변경협의를 신청하면 재검토하겠다고 하였다. 문제는 통상 변경협의를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려 금리 등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었다.

다행히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사전컨설팅을 통해 무엇을 조사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빨리 완료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었다. 또한 인근 산단 등 기존 데이터를 활용하여 협의까지 4개월 만에 완료되어 예상보다 기간이 1/3로 단축되었다. 이를 통해 '24년까지 2,300억원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II. 추진과제 목록 p.79 2번 과제

2

## 지역축제의 환경영향평가 부담을 해소하여 지역발전을 지원합니다.

### ☑ 매년 반복되는 지역축제 평가 합리화

(공문 발송, '22.12월)

**기 존** 지자체에서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매년 하천점용허가(일시)를 받아야 하고 이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매년 반복 실시

**개 선** 매년 반복되는 지역축제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사업기간 (n년간)을 설정하여 협의내용을 통보

지자체 M군은 지역민의 놀거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해 9월경 △△강에서 꽃축제를 개최한다. 방문객의 편리함을 위해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하천변에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면적이 넓어 축제 개최시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해 예산을 마련하는데 부담이 되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매해 받을 필요 없이 5년마다 한번 받으면 된다. 지난해 12월, 환경부에서 일시적·반복적인 지역축제에 대해 사업기간을 정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면, 정해진 사업기간 내 소규모 평가를 실시하지 않도록 제도를 합리화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약 6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04 환경영향평가 내실화

## 3

##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기준을 정비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 ☑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기준 합리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23.3월)

**기 존** 당초 협의한 사업 규모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재협의 대상에 포함, 소규모 사업은 대규모 사업에 비하여 작은 면적의 증가도 재협의 대상에 해당하여 형평성 문제 대두

- 100만㎡ 개발사업의 경우 14만㎡ 증가 시 30% 미만(14% 증가) ⇒ 재협의 대상 아님
- 15만㎡ 개발사업의 경우 5만㎡ 증가 시 30% 이상 증가 ⇒ 재협의 대상

**개 선** 재협의 대상 규모 판단기준 중 당초 협의한 사업규모의 증가 비율을 삭제하고,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만 적용

※ 재협의 대상이 아닌 경우 변경협의 대상임(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 생략)

N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공장 설립·운영 중 해외 주문물량의 증가로 생산설비를 확대하고자 바로 옆 부지에 공장설비를 증설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증설계획 면적이 당초 협의한 면적(15만㎡)보다 30% 이상 증가(5만㎡)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의 재협의 절차 진행에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공장 증설이 늦어질까 우려하던 참이었다.

마침 '23년 3월 제도개선으로 재협의를 아닌 변경협의 대상임을 확인하고,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히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N는 당초 예상보다 3개월 이상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해외 주문 물량을 더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며 반기고 있다.

II. 추진과제 목록 p.82 11번 과제

4

## 숲속 야영장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면적 합리화

(적극행정, '22.9월)

**기 존** 숲속야영장 설치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기준을 전체 부지면적으로 선정하나, 유사 사업인 자연휴양림 등은 실질 개발면적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

**개 선**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에 대하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전체 부지면적에서 실질 개발면적으로 개선(「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50대 직장인 O씨는 25년 다닌 직장을 그만두고 고향에 땅을 샀다. 6만㎡ 규모의 숲속야영장을 운영해 제2의 인생을 살겠다는 포부였다. 평생 모은 돈을 투자했는데 시작부터 장애물을 만났다. 숲속 야영장을 만들려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근에서 운영 중인 산림욕장은 같은 규모임에도 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알아보니 야영장은 평가 기준을 전체부지로 산정된다는 것이다.

산림욕장 등으로 업종 변경을 해야 하나 고민하던 찰나, 환경부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합리화한다고 발표하였다. 건축물 설치 등 실질개발 면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평가서 작성 비용과 평가서 준비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O씨의 노후 인생 목표였던 숲속 야영장 운영이 눈앞으로 다가온 것 같다.

II. 추진과제 목록 p.81 9번 과제

## 05 국민체감형 규제개선

## 1

## 자연경관심의 대상 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 ☑ 자연경관심의 대상 사업 기준 합리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23.3월)

**기 존** 환경영향평가 시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소하천 정비사업, 제방 안쪽에서 이루어지는 하천공사 등이 자연경관영향 심의 대상에 해당하여 사업자의 비용부담 가중 및 불필요한 행정력 소요

**개 선** 소하천 정비사업을 자연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 하천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자연경관영향 심의 대상 명확화\*

\* 대상지역의 범위를 '하천경계'에서 '하천구역의 경계'로 변경하여 제방 안쪽에서 이루어지는 하천공사 등은 심의대상에서 제외

P지자체는 홍수예방을 위해 ☆☆소하천과 ♪♪하천에 대해 정비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중이다. 금번 (소)하천정비는 하천 제방 안쪽에서만 이루어지는 하천정비 사업으로 자연경관 훼손 및 시계(視界) 차단에 영향이 없음에도 소하천정비사업 또는 '하천 경계 200m 이내'에 해당되어 자연경관영향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였다.

자연경관심의 대상이 조정되어 소하천정비사업과 하천 제방 안쪽에서 이루어지는 하천정비사업은 자연경관영향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됨에 따라, 관련 절차를 계획하던 P지자체는 조속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며 반기고 있다.

II. 추진과제 목록 p.94 23번 과제

2

## LNG 사용시설 관리에 대한 중복규제를 해소하였습니다.

### ☑ LNG 사용시설의 대기 자가측정 제도 개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2.12월)

**기 존** LNG 사용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황산화물에 대해 자가측정을 실시하여 관리하고, 도시가스사업에 따른 품질검사에서도 황함유량을 분석하여 중복 관리

**개 선** '황산화물에 대한 자가측정을 연료의 황함유분석표로 갈음'할 수 있는 단서 조항에 LNG(가스) 포함

용인에 거주하며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Q씨는 매번 서류 관리에 골치다. LNG보일러 3대를 운용하고 있다보니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황산화물에 대한 자가측정을 진행하고, 또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황함유량에 대해서도 별도로 품질검사를 진행한 후 각각의 결과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올해도 자가측정 준비를 하던 중, Q는 측정대행업체로부터 '22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LNG사용시설도 황산화물에 대한 자가측정을 황함유분석표로 갈음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자가측정 결과를 황함유분석표로 갈음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중복된 서류 관리 문제의 해소는 물론이고 자가측정 비용까지 줄일 수 있게 되어 Q씨의 얼굴에는 화색이 돌았다.

II. 추진과제 목록 p.92 15번 과제

## 05 국민체감형 규제개선

## 3

## 가스연소 굴뚝 시설 관리기준을 유해대기물질 배출 여부에 따라 차등화 하였습니다.

### ☑ 가스연소 굴뚝(플레어스택) 시설 관리기준 합리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23.8월)

**기 존** 플레어스택은 배출가스의 불완전연소 여부를 광학가스 탐지 카메라를 이용한 모니터링으로 확인, '24년부터는 연소구간 발열량 기준도 준수하여야 하는 이중 규제 적용

**개 선** 플레어스택을 유해대기물질 배출 여부에 따라 배출 시 연소구간 발열량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비배출 시에는 광학가스 탐지 카메라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제도 개선

원유정제업을 하는 R사는 '19년부터 비산배출 시설관리기준에 따라 광학가스 탐지카메라로 플레어스택에서 배출되는 가스를 매일 촬영하고 불완전연소 여부를 운영기록부에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24년부터는 새로운 '플레어스택 연소구간 발열량 기준'도 충족해야 함에 따라 이 두 개의 관리제도가 중복규제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앞으로는 유해대기오염물질의 플레어스택 배출 여부에 따라 '연소구간 발열량 기준'과 '광학가스탐지카메라를 이용한 불완전연소 감시'를 구분하여 적용하게 되었다. R사는 합리적인 규제 완화로 업무부담도 경감되고 광학가스탐지카메라 유지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며 반기고 있다.

II. 추진과제 목록 p.91 8번 과제



4

## 법인의 전기차 구매지원을 확대, 배터리교환형 전기이륜차 보조금을 신설하였습니다.

### ☑ 전기자동차(이륜차) 및 전기이륜차 보조금 제도 개선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23.2월),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23.4월))

**기 존** 법인 소재 지역의 지방비 한계로 인해 법인의 전기차 구매 시 지원 제한, 전기이륜 차체와 배터리를 모두 구매하는 경우에만 구매보조금 지원

**개 선** 법인의 전기차 구매 시 국비보조금 별도 수령 허용,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방안 마련

• S사는 소형 전기화물차를 대량으로 구매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지자체의 예산이 부족하여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지자체 담당자의 답변을 듣고 낙담하던 차에 법인 대상 전기자동차 국비보조금 단독 지원 제도 신설로('23) 국비보조금 지원을 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할 수 있었다.

• 배달업 종사자인 T씨는 내연기관 이륜차를 운행할 때 소음, 매연에 대한 민원이 많아 전기이륜차를 알아보았으나, 전기이륜차의 짧은 주행거리와 긴 충전시간이 아쉬웠다. 배터리를 바로 교체할 수 있는 배터리교환형 전기이륜차가 대안이었으나,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아 너무 비싸 구매를 망설였다.

그러던 중 배터리교환형 전기이륜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기준이 신설되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되었으며 더하여 정부의 전기차 충전기 구축 지원 사업으로 배터리교환 스테이션도 많이 늘어나 충전 걱정 없이 전기이륜차를 구매하여 운행할 계획이다.

II. 추진과제 목록 p.90 5번, p.93 19번 과제

## 05 국민체감형 규제개선

## 5

## 조기 폐차 보조금 신청과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가 한번에 가능합니다.

### ☑ 노후경유차 폐차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방식 개선

(조기 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 '23.9월)

**기 존**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후 3~6개월이 지난 후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후납제 방식으로 매년 3월(전년 하반기), 9월(금년 상반기) 정기 부과

**개 선**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폐차 즉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로 납부 편의 개선

2010년에 경유차를 구입한 U씨는 매년 환경개선부담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다. 노후된 경유차를 일찍 폐차하면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뉴스를 듣고 조기폐차를 신청하여 폐차를 하였는데 5개월이 지나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받게 되어 체납자가 된 기분에 몹시 마음이 상하였다.

앞으로는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 할 경우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즉시 납부할 수 있게 되어 폐차한 이후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불편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II. 추진과제 목록 p.98 37번 과제

1

## 무라벨 먹는샘물의 날개 판매를 허용하여 폐기물 발생을 줄입니다.

### ☑ 무라벨 먹는샘물 날개 판매 허용

(「먹는샘물 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개정, '22.12월)

**기 존** 무(無)라벨 먹는샘물은 포장 겉면에 제품정보 의무표시를 전제로 '묶음 판매'만 가능('날개판매'는 불가)

**개 선** 먹는샘물 제품에 무라벨 QR코드 활용 시, 날개 제품도 판매 가능하도록 허용

40대 직장인 V씨는 평소 편의점에서 생수를 구입해 마신다. 편리해서 좋지만, 분리수거를 할 때마다 라벨을 떼어내야 하는 것이 불편하기도 하고, 불필요한 쓰레기가 발생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 어느 날 편의점에서 라벨이 없는 생수를 발견하고 병뚜껑에 있던 QR코드를 찍어보니 제품정보가 이미지로 나왔다. 이미지를 자유롭게 확대할 수 있어 수원지나 미네랄 함량 등 제품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편리했으며 무엇보다 분리수거가 편리하고 비닐 쓰레기가 줄어 V씨는 앞으로도 무라벨 생수를 구입할 계획이다.

## 06 현장애로 해소

## 2

## 현장 전문인력의 정수시설운영 관리사 취득을 지원합니다.

### ☑ 정수시설운영 관리사 취득방식 다양화

(「수도법」 개정 '23.8월 / 시행 '24.8월~)

**기 존**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제도는 1~3급 모두 시험검정형으로 운영함에 따라 실무경험은 많으나 시험 준비가 어려운 현장 근로자의 자격 획득 애로

**개 선**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제도 중 3급(실무자급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과정이수형 자격방식을 도입

일반수도사업자인 W자치단체는 하루 수돗물 생산량이 5천m<sup>3</sup> 이하 정수장 3곳, 1만m<sup>3</sup> 이하 정수장 1곳을 운영하고 있다. 정수시설 운영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수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시설규모별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자격 보유자 4명, 2급자격 보유자 1명이 필요하나 자격시험 대상자가 대부분 공무원 또는 정수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근로자이고 시험의 난이도가 높아 자격 취득이 어려웠다.

\* 수처리공정, 수질분석 및 관리, 설비운영(기계 장치 또는 계측기 등), 정수시설 수리학/ 1차 객관식, 2차 주관식

다행히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자격 취득방식으로 과정이수형이 도입 ('23.8.16「수도법」 개정, '24.8.17 시행)되어 자격증 취득 인력이 확대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자격증 취득과정에서 실무능력도 배양할 수 있어 정수장 운영관리의 개선도 기대하고 있다.

II. 추진과제 목록 p.109 10번 과제

3

## 통합허가사업장의 권리의무승계 처리기준을 현실화하였습니다.

### ☑ 통합허가사업장 권리의무 승계 업무처리기준 명확화

(적극행정 및 유권해석, '22.7월)

**기 존** 통합관리사업장이 비(非)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 등을 인수(합병, 양도 양수 등)하는 경우, 권리의무승계에 따라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 신·증설 등에 해당하여 변경허가 대상이 되나, 시설 인수전에는 다른 사업자의 시설 이므로 통합허가 신청에 필요한 자료 확보 등이 곤란하여 사전 변경허가 신청이 불가

**개 선** 권리의무승계로 배출시설을 인수하는 경우 사후(1년이내) 변경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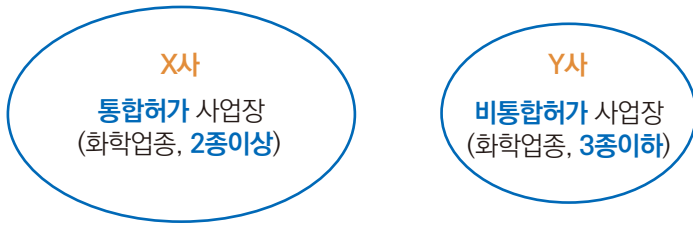
통합허가를 완료한 X사(화학업종)에서 동일 부지내에 위치한 동일 업종의 Y사(3종 이하, 대기법 허가 사업장) 흡수합병을 계획 중이다. 통합관리 사업장은 배출시설 등을 인수하는 경우 신·증설에 해당하여 인수 전에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수 대상인 사업장도 개별법에 따른 허가를 득하여 적정하게 운영 중인 사업장임에도, 변경허가를 완료하고 인수·합병 절차를 이행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등 기업경영의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타 사업장의 배출시설 정보가 담긴 공정도, 연·원료 사용량 등 사업장 정보를 확보하기 쉽지 않다.

## 06 현장애로 해소

'22년 7월 환경부에서 적극행정을 통해 해결책을 찾았다. 통합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권리의무승계 이후 변경허가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환경부가 기업 부담은 덜면서도 더 나은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규제 합리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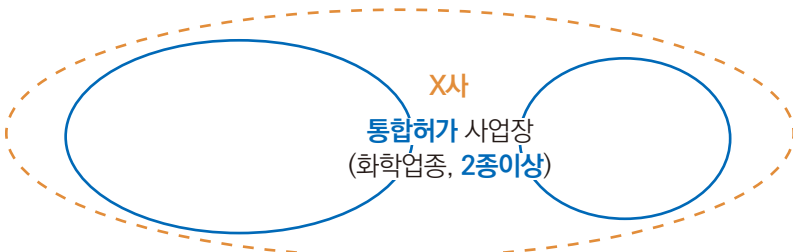
[ 전 ]

동일 사업부지



[ 후 ]

동일 사업부지



4

## 공장설립 승인지역 내 허용 업종을 확대하고 준수사항을 면제하여 기업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 ☑ 공장설립 승인지역 허용업종 확대 및 준수사항 최소화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 '23.1월)

**기 존** 상수원보호구역의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4~7km에는 폐수가 발생하지 않고,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한 주민에 한하여 떡·빵류 제조업 등 9개 업종만 허용(차단 및 집수시설을 설치토록 준수사항 부여)

**개 선** 기존 허용업종과 유사하거나,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단순 부품조립 공장 등 4개 업종\*을 추가로 허용하고,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공장은 차단·집수시설 설치 면제

\* 빵튀기 제조업, 단순 전자부품 제조업, 곡물 제분업, 간판 제조업

공장설립 승인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40대 Z씨는 빵튀기 제조 공장을 운영하려 하고 있다. 빵튀기 제조 설비는 오염물질 배출이 전혀 없는 시설이다. 예전에는 공장 부지가 공장설립 승인지역 범위에 해당해도 공장설립 승인지역에서 영위할 수 있는 제조업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공장을 운영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상수원 보호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빵튀기 제조업, 단순 부품조립 공장 등을 공장설립 승인지역에 설립할 수 있게 되어, 거주민의 환경규제 해소 및 소득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Z씨는 거주하던 지역에서 소득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며 공장을 운영하며 상수원 수질 보호에도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 06 현장어로 해소

## 5

## 통합허가사업장의 수질기준 합리화로 과도한 시설투자 부담을 합리화 하였습니다.

### ☑ 통합허가사업장 방류수 한계배출기준 합리적 설정

(통합관리 대상 배출시설 등의 한계배출기준 고시 개정, '23.12월)

**기 존** 한계배출기준을 적용받는 통합허가대상 사업장의 경우 기존 최대배출기준에 비해 최대 80배까지 강화

※ (예) 1,4다이옥산: 4.0mg/L → 0.05mg/L(80배), 불소: 15mg/L → 3mg/L(5배)

**개 선** 기존 최대배출기준의 70%(최대 49%)를 한계배출기준으로 설정

※ (예) 불소: 15mg/L(최대) → 10.5mg/L(한계) → 7.4mg/L(엄격)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c씨는 통합허가를 받기 위해 작성한 수질오염물질 배출영향분석 결과를 보고 마음이 무거워졌다. 기존에는 불소 배출허용기준 15mg/L를 적용받았으나, 통합허가를 받게 되면 배출허용기준 보다 강화된 한계배출기준(청정지역 기준인 3mg/L)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장 통합허가를 완료해야 하는 시기는 다가오는데, 여유 부지도 없는 상황에서 방지시설을 확대하려니 c씨는 너무도 막막했다.

그런데, 환경부 고시 개정으로 통합허가대상 사업장의 폐수 한계배출기준이 최대배출기준의 70% 수준으로 설정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불소의 경우 10.5mg/L를 지키면 된다고 하니, c씨의 시설개선 부담이 한결 줄었다. 총오염도가 환경기준의 2.5배를 초과하면 엄격한 한계배출기준을 적용하여 최대배출기준의 49%까지 강화된다고 하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시설을 잘 운영할 계획이다.

II. 추진과제 목록 p.115 33번 과제



기업현장·지자체 담당자를 위한  
**환경규제 혁신 핸드북**



# II

## 추진과제 목록

- ① 화학물질 관리체계 개편(43개) … 35
- ② 탄소중립 전환 촉진(51개) …… 46
- ③ 순환경제 구현(79개) …… 59
- ④ 환경영향평가 내실화(32개) …… 79
- ⑤ 국민체감형 규제개선(64개) …… 89
- ⑥ 기업 현장애로 규제개선(94개) … 107

기업현장·지자체 담당자를 위한  
**환경규제 혁신 핸드북**



환경부

완료 과제 (38개)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1	소량 신규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 간소화  <a href="#">완료</a>	연간 제조·수입량 0.1~1톤인 소량의 신규화학물질 등록 신청시 인체 유해성, 환경 유해성 등 9개 항목의 시험자료 제출 필요	물용해도 1mg/l 미만이거나 중간체 또는 공정속도 조절제 용도 화학물질의 경우 환경 유해성 2개 항목에 관한 시험자료 제출 생략
		「화평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22.7.29.)	
2	연구개발용 소량 신규화학물질 수입요건 완화  <a href="#">완료</a>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면제 확인 신청서에 화학물질명과 고유번호를 반드시 작성할 필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을 소량 수입하는 경우 물질안전 보건자료 첨부시 면제확인 신청서에 화학물질명, 고유번호 작성 생략
		「화평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22.7.29.)	
3	유해화학물질 신규지정시 시행일 유예 기간부여 <a href="#">완료</a>	유독물질 지정고시일로부터 즉시 시행	지정고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유독물질 지정고시」 개정 완료('22.10.6.)	
4	정광·광물 형태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기준 조정  <a href="#">완료</a>	정광·광물을 마대자루 등으로 포장한 경우 일반형, 밴형,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운반 가능	밀폐형 비산방지조치를 한 경우, 덤프트럭 및 덤프형 화물자동차 운반 허용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 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완료('22.12.12.)	
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밸브 기준을 타법과 일치  <a href="#">완료</a>	안전밸브 설치 면제는 안지름 150mm 이하인 압력용기만 가능	용기의 폭, 높이, 단면 대각선 길이가 150mm 이하인 압력용기도 안전밸브 설체 면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타 법령 기준과 일치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등 4개 고시 개정 완료('22.12.12.)	

01

화학안전

02

탄소중립

03

수원지

04

환경영향평가

05

국민체감

06

환경영향

참고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6	「위험물법」에 따른 운반용기 검사를 받은 경우 운반용기 검사 면제 <a href="#">완료</a>	위험물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운반하는 용기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운반용기 검사와 「화관법」의 기밀시험 이행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운반용기 검사에 합격한 경우, 「화관법」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를 면제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등 3개 고시 개정 완료('22.12.12.)	
7	「고압가스법」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칸막이 기준 준수로 인정 <a href="#">완료</a>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방파판이 설치된 운송차량도 「화관법」에 따른 칸막이 설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액화요동방지장치(방파판) 기준에 적합한 운송차량은 「화관법」에 따른 칸막이를 설치한 것으로 인정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완료('22.12.12.)	
8	가열·건조 설비의 직화 금지 예외규정 마련 <a href="#">완료</a>	유해화학물질 취급 가열·건조설비는 직접 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	가열 또는 건조설비에 불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공정(정련, 카드뮴제조, 비철금속 제조 등)은 예외로 허용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완료('22.12.12.)	
9	반도체·항만에 특화된 시설기준 도입 <a href="#">완료</a>	업종별 유해화학물질 취급 형태 등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급시설 설치·검사기준은 취급특성을 미고려	취급특성을 반영한 업종별 시설기준 확대
		「반도체 제조, 항만 시설기준 고시」 제·개정 완료('22.12.15)	
10	철강재 사용도로 용도제한 유예 <a href="#">완료</a>	'23년부터 크롬(6+)화합물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은 물탱크 방청도로 및 페인트 용도로의 취급을 제한	대체물질 적용에 따른 옥외폭로 시험 등 취급제한 이행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 적용 시기를 2년 연장('23.1.1→'25.1.1)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부칙) 개정 완료('22.12.20.)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1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검사 관련 대표 설비 검사제도 적용 범위 확대 <a href="#">완료</a>	반도체 제조업 중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대표설비 검사제도 적 용 대상은 전자직접회로 제조업 (2611)만 해당	대표설비 검사제도 적용 범위에 유사 반도체 소자 제조업(2612) 추가
		유권해석 안내('22.12.22.)	
12	국제적으로 기 평가된 물질의 유해성 자료제출 부담 완화  <a href="#">완료</a>	국제적으로 평가완료되어 공개 된 경우 유해성 자료제출을 면 제할 수 있으나, 면제를 위해서 는 업체 스스로 입증 자료 제출 필요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중 유해성 자료제출 의무가 면 제되는 국제평가완료물질 및 자 료제출 면제 범위 공지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22.12.29., '23.2.21.(재공지))	
13	승인받은 살생물 물질을 함유한 제품의 수입·제조·판매 유예  <a href="#">완료</a>	'22년까지 승인된 살생물 물질 을 함유한 살생물제품은 '24년 까지 살생물제품 승인이 유예 됨. 살생물제품의 승인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승인 유예기간 ('24년)내 제품유통에 대한 명확 한 지침이 부재하여 유통 금지 를 우려	승인받은 물질을 함유한 살생물 제품이지만 제품승인 계획이 없 는 업체에 대해 제품승인 미신 청사유서 제출 시 '24년 12월까 지 제조·수입·판매·유통이 가능 하도록 안내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22.12.30.)	
14	화학물질 양도 시 정보 제공범위 합리화  <a href="#">완료</a>	화학물질 양도시 양수자에게 등록번호를 포함하여 화학물질 안전정보 제공 중 → 혼합 화학 물질 양도시 개별 물질에 대한 등록·신고번호가 제공되어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성분·함유량 노출 우려	비공개 승인받은 화학물질명, CAS 번호 등이 화학물질등록 번호로 인해 노출될 우려가 있 는 경우, 화학물질등록번호 비 공개 처리 허용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 개정 완료('22.12.31.)	

01 화학안전관리  
02 탄소중립  
03 수질환경  
04 화학제품평가  
05 국민체감  
06 현장애로  
참고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15	「화평법」 변경 등록대상 명확화	화학물질의 구체적 용도가 변경된 경우도 모두 변경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불명확	「화학물질등록평가법」상 변경 등록 대상인 ‘구체적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 명확화
		<div style="text-align: right;">(완료)</div> 「기존화학물질 등록 실무가이드」 개정 완료('23.1.20.)	
16	연구실 특성을 반영한 설치검사기준 마련	연구실은 소량취급, 다양한 연구장비(반응기, 분석기기 등)의 신설·변경이 잦아 가동 전 설치검사 이행시기 모호	연구장비의 잦은 도입 등 취급 시설 특성을 반영, 연구실의 가동 전 설치검사 대상을 명확화
		<div style="text-align: right;">(완료)</div> 「유권해석 및 연구실 검사기준」 해설서 마련('23.1.27.)	
17	기업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화학물질 대체명칭 작성방법 개선	종전 화학물질 대체명칭(총칭명) 작성방법은 미국·EU에 비해 영업비밀 보호 효과 부족	혼합물 제품 양도·양수 시 구성 성분에 대해 EU 총칭명 작성법 허용 등 기업 영업비밀 보호 강화 * (혼합물) 공급망 내 정보전달 시 혼합물 성분에 대한 총칭명을 EU 지침에 따라 작성 가능 * (고분자화합물) 혼합물 전체의 유해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고분자화합물의 단량체(구성요소)가 유해화학물질인 경우도 총칭명 허용
		<div style="text-align: right;">(완료)</div> 「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 완료('23.5.26.)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18	영세사업장 「화관법」 기술인력 자격기준 완화규정 유효기간 연장	3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명시된 기술인력 영입이 어려우나 적용 제외 규정의 유효기간이 '23년으로 만료('23.12.31.)	3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의 「화학물질관리법」상 기술인력 자격 완화기준 유효기간(~'28.12.31.) 연장
		「화관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23.10.4.)	
19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자격 확대	화공, 산업안전, 가스 등 일부 자격에 대한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기준 규정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등을 공통으로 다루는 유사 자격(표면처리·정밀공업 화학자격 등)까지 폭넓게 인정
		「화관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23.10.4.)	
20	안전교육 효과 제고	화학물질 취급담당자는 안전교육을 취급 전에 모두 받아야함 (16시간)	화학물질 관리 이론과 실무 경험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취급 전·후에 나누어 받을 수 있도록 이수시기 개선
		「화관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23.10.4.)	
21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	급·만성독성, 액체·고체 등 물질 특성과 관계없이 유독물질 취급 사업장에 시설기준 등 화관법상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산업계 부담	유독물질을 급성·만성·생태독성으로 구별 지정하고, 유해성·취급량 등을 고려하여 관리 형태·수준 등 차별화
		「화평법」 개정 완료('24.2.6.), 「화관법」 개정 완료('24.2.6.)	

※ 「화학물질관리법」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24.2.6.) 사항의 구체적인 시행 시기 등은 참고3(p.13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1 화학안전관리  
02 탄소중립  
03 수질관리  
04 화학안전평가  
05 국민체감  
06 현장애로  
참고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22	연구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 일원화 <span style="float: right;">완료</span>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은 화관법 자체 점검(매주)과 「연구실안전법」 일상점검(매일)을 중복 실시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일상점검 대상 연구실은 「화관법」 자체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
		「화관법」 개정 완료('24.2.6.)	
23	신규화학물질 등록대상 완화 <span style="float: right;">완료</span>	국제적 수준보다 엄격한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0.1톤)으로 산업계 부담	'화학안전정책포럼'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EU 수준(1톤)으로 조정
		「화평법」 개정 완료('24.2.6.)	
2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주기 완화 <span style="float: right;">완료</span>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영업허가 대상여부에 따라 1년 또는 2년마다 정기검사 실시	유해물질 취급량이 적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위험도가 낮은 취급사업장은 검사주기를 연장하는 방안 마련
		「화관법」 개정 완료('24.2.6.)	
25	유해성 정보의 생산·전달·활용 체계 개편 <span style="float: right;">완료</span>	화학물질 등록기준은 엄격하나, 생산정보의 종류와 활용은 제한적	'화학안전정책포럼'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소량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정보의 실효성 있는 생산·전달·활용방안 마련
		「화평법」 개정 완료('24.2.6.)	
26	고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의 환기설비 기준 합리화 <span style="float: right;">완료</span>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	미분 체류의 우려가 없는 고체상태 물질을 보관하는 실내 보관시설에는 환기설비 설치 예외 허용하는 방안 마련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완료('23.12.29.)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27	화평법 위해성자료 비대상물질 정보제공 간소화 <span style="float: right;">(완료)</span>	화학물질 양도시 위해성 자료 비대상 물질도 등록·신고번호 기재로 영업 비밀 노출 우려	화학물질 양도시 위해성 자료 비대상 물질의 경우 등록·신고 번호 대신 등록·신고 여부만 기 재도록 허용
		「화평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23.12.18.)	
28	금지물질 허가사항 정보 공유 <span style="float: right;">(완료)</span>	금지물질(60종)을 취급할 경우 환경부 허가 및 고용노동부 승 인을 받아야 함	금지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환경부의 허가사항을 고용노동 부와 공유
		「화관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23.10.4.)	
29	살생물제품 묶음 승인 (살생물제품군) 제도 마련 <span style="float: right;">(완료)</span>	실효성 있는 살생물제품군 승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상세 규정 부재	살생물제품군의 정의, 판정기 준, 승인신청 시 제출자료의 범 위·서식 등 살생물제품군 제도 운영을 위한 상세내용 고시에 규정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 에 관한 규정」 개정 완료('23.12.28.)	
30	유해화학물질 알선판매업 영업신고제 도입 <span style="float: right;">(완료)</span>	보관·저장시설 등 취급시설이 없는 알선판매업의 경우에도 영 업허가 대상에 포함	보관·저장시설 등 취급시설 없 이 알선 판매사업장에 대하여 영업신고로 전환
		「화관법」 개정 완료('24.2.6.)	
31	화관법 상 '영업시작' 기준 명확화 <span style="float: right;">(완료)</span>	'영업시작'의 기준이 명확히 제 시되지 않아 기관마다 다르게 해석, 처분 우려	법률자문, 타법의운영사례 등을 종합하여 '영업시작'의 정의 명 확화
		유권해석 안내('23.8월)	

01

화학안전관리

02

탄소중립

03

수질환경

04

환경영향평가

05

국민체감

06

환경정보

참고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32	유해화학물질 물리·화학적 특성을 반영한 검지·경보설비 설치 합리화	유해화학물질의 누출, 화재·폭발을 미리 감지하기 위해 액체, 기체 상태의 물질에 대한 검지·경보 설비 설치 필요	저증기압, 고점도 등 물질특성 및 취급조건 등의 현장상황을 고려한 검지·경보 설비기준 차등화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완료('23.12.29.) <span style="float: right;">완료</span>	
3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 신고 절차 효율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하는 자가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	검사기관이 관할 환경관서의 장에게 검사결과 제출로 변경
		「화관법」 개정 완료('24.2.6.) <span style="float: right;">완료</span>	
34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확인 신청 및 신고절차 간소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신고 시, 신고인은 화학제품관리 시스템에 각 단계마다 동일 정보를 여러 번 입력해야 함	신고인이 최초로 시스템에 입력했던 항목(22개)은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기능 개선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기능개선 완료('23.12.12.) <span style="float: right;">완료</span>	
35	환경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절차 간소화 및 신청 기관 권익 개선	지정단계에서 분석능력 평가 중복 및 심의위원회를 통한 기관 지정 승인, 신청기관 권익을 대별할 이익신청 기회 없음	중복되는 분석능력 평가 삭제 및 심의위원회 삭제하고 이익신청 심의위원회 도입
		「잔류성 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완료('23.6.12.), 「환경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완료('23.6.12.) <span style="float: right;">완료</span>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36	국외 화학물질 수입업자 부담 완화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ue; border-radius: 5px; padding: 2px;">완료</span>	국외 제조·공급자가 화학물질정 보를 누락·허위 제공하더라도 책임소재 처벌은 국내 수입자에 게 한정	국외 제조·공급자가 국내 대리 인을 선임하여 수입 전 화학물 질의 확인 및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 신설
		「화관법」 개정 완료('24.2.6.)	
37	중소기업의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비용 지원 대상 확대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ue; border-radius: 5px; padding: 2px;">완료</span>	기존화학물질 대상으로 중소기 업의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비용 지원	중소기업 지원사업 대상을 신 규화학물질까지 포함하여 확대 추진
		지원대상 확대 시행('24년~)	
38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폐기물은 화학물질 관리법 적용 제외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ue; border-radius: 5px; padding: 2px;">완료</span>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 은 유해화학물질로서 「화학물 질관리법」 적용 대상이며, 폐기 물로서 「폐기물관리법」의 관리 대상으로 중복 규제 적용	「화관법」 관리대상에서 지정폐 기물 수집·운반 및 처분업 제외  * 화학사고 대응 등 「화관법」으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지속 적용
		「화관법」 개정 완료('24.2.6.)	

01 화학물질관리법

02 탄소중립법

03 수질환경보전법

04 환경영향평가법

05 국민체감

06 환경영향평가

참고

## 진행중 과제 (5개)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39	기업의 등록비용 부담 개선  <span style="color: green; font-size: small;">(진행중)</span>	시험자료 제출 생략요건 입증 시 증명자료 제출 요구	국외 공개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증명자료 제출을 면제
		「화평법 시행규칙」 개정중(입법예고, '23.11.3.~'24.1.2.)	
40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의 화평법 등록 부담 완화  <span style="color: green; font-size: small;">(진행중)</span>	폐기물 추출·정제 등 재활용 과정 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화학물질이 기등록된 화학물질과 동일한 경우 에도 등록 필요	재활용 화학물질이 기 등록된 화 학물질과 동일한 경우 등록을 면 제할 수 있는 기준 마련
		「화평법」시행령 개정중(입법예고, '23.11.3.~'24.1.2.)	
41	화학물질 시험방법과 KS불일치 해소  <span style="color: green; font-size: small;">(진행중)</span>	관련법령상 화학물질 시험방법 은 OECD 지침을 준용하나, 분 배계수시험 규정과 KS 측정방 법이 상이하여 기업혼란 야기*  * 법령과 산업표준이 달라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며 생산성 하 락의 요인으로 작용	화학물질 시험방법중 분배계수 시험은 KS기준을 적용토록 개정 하고 KS와의 정합성 제고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개정안 마련중	
42	화학사고 정의 구체화  <span style="color: green; font-size: small;">(진행중)</span>	화학물질의 종류, 사고피해의 경·중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화학사고로 분류하여 조치	화학사고의 정의, 판단 및 조치 기준 명확화
		화학사고 정의 및 판단기준 등 개선안 마련중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43	화학제품관리 시스템의 세부 기능 개선  <span style="border: 1px solid green; border-radius: 5px; padding: 2px;">진행중</span>	제품사진 또는 첨부파일 첨부 시 드래그앤드롭(Drag and Drop) 기능 불가	제품사진 또는 첨부 파일 첨부시 드래그앤드롭(Drag and Drop) 이 가능하도록 개선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검토중	

과제별 담당 부서

	과제번호	담당 부서 (044-201-****)
과제 분류 (총 43개)	1, 2, 3, 10, 14, 15, 17, 18, 21, 25, 27, 35, 36, 37, 39, 40, 41	화학물질정책과 (6772)
	4, 5, 6, 7, 8, 9, 11, 16, 19, 20, 22, 23, 24, 26, 28, 30, 31, 32, 33, 38, 42	화학안전과 (6841)
	12, 13, 29, 34, 43	화학제품관리과 (6807)

01 화학제품관리

02 탄소중립

03 수질개선

04 환경영향평가

05 대기질감

06 환경유역

참고

## 02 탄소중립 전환 촉진 (51개)

### 완료 과제 (37개)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1	부문별·연도별 온실가스감축 목표합리적 설정  <a href="#">완료</a>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부문별·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합리적 설정 필요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반영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23.4.11.)	
2	상쇄배출권 활용한도 합리화 검토  <a href="#">완료</a>	제3차 국가배출권할당계획상 상쇄배출권 활용한도 합리화 필요	상쇄배출권 발급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4차 계획기간('26~'30) 인정한도 확대 검토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수립방향 논의('23.6.22., 총괄분과 5차 회의)	
3	해외감축 실적 국내 전환절차 간소화  <a href="#">완료</a>	해외 감축사업(CDM)의 경우 UN에서 인증받은 사업임에도 국내에서 다시 심사를 받아 기업 부담 가중	제출서류·검토항목을 간소화하고 해외사업 우선 검토, 관장기관·환경부 동시 검토로 소요 기간 최소화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개정 완료('22.12.30.)	
4	통신업종 최적가용기술 가이드라인 마련 및 인센티브 요청  <a href="#">완료</a>	업종별 최적가용기법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 설정 또는 업종별 인정범위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 설정 필요	최적가용기술(BAT)을 배출효율 상위 10%로 구체화하고, BAT 판단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개정 완료('22.12.30.)	
5	신증설 배출권 추가할당 조건 완화  <a href="#">완료</a>	신증설이 아닌 고효율 설비로 교체시 추가할당 필요	노후설비 교체 등으로 배출 원단위를 일정 수준 이상 개선함으로써 배출량이 증가하는 경우 증설 시설 인정방안 마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개정 완료('22.12.30.)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6	배출효율 기준(BM) 적용 대상 사업장 내부감축실적 인정 <small>(완료)</small>	BM 할당 대상도 GF 할당 대상과 동일하게 감축실적만큼 차기 할당량 산정에 반영 필요	BM 할당대상업체 추가할당 고려 시 BM 할당시설 또는 사업장의 감축실적을 인정하여 배출량 산정토록 개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개정 완료('22.12.30.)	
7	열분해유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정 확대 <small>(완료)</small>	페플라스틱 열분해유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실적도 탄소배출권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정 요청	폐기물 재활용을 통한 원료 사용 등으로 감축실적 발생 시 배출권 할당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旣 개정('21.12), 관련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 승인
		제43차 배출량인증위원회 감축방법론 승인('22.3.29.)	
8	굴 패각 원료 사용시 온실가스배출량 산정 제외 <small>(완료)</small>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바이오매스 혼소 이외 굴패각 등을 원료로 사용해 감축활동 중이나, 이에 대한 인정 및 지원제도 부재	굴패각을 가공하여 CO2 성분이 없는 가공물(CaO)만 원료 등으로 사용시 배출량 제외 가능
		제도시행사항 안내('22.11.1.)	
9	친환경·감축 기술 적용 인센티브 부여 <small>(완료)</small>	석유화학업계 감축 기술 중 친환경 원료(바이오납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나, 산정 지침에는 감축 기준이 명확히 없는 상황	바이오납사 등 저탄소 친환경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온실가스 감축 실적 인정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개정 완료('22.12.30.)	
10	재생에너지 온실가스 감축 실적 인정범위 확대 <small>(완료)</small>	현행 배출량 산정 제외 대상 재생에너지에는 태양광, 풍력, 수력만 규정되어 있어 바이오매스의 경우 감축실적으로 미인정	온실가스 감축 인정 대상을 모든 재생에너지(바이오매스 포함)로 확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개정 완료('22.12.30.)	

01  
환경정책기본  
02  
탄소중립  
03  
수질환경  
04  
환경오염방지  
05  
국민체감  
06  
환경애로  
참고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11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량 인정기준 마련  <a href="#">완료</a>	폐기물 감량, 재활용, 바이오가스 활용, 바이오플라스틱 보급 등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 인정 기준 마련 요청	폐기물 감량·재활용, 바이오가스 활용 등에 대한 일반적인 방법론은 이미 등록되어 있어 내·외부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외부사업 방법론 기 등록사항 안내('22.11.1.)	
12	전자산업의 온실가스 감축설비 저감효율 측정주기 합리화  <a href="#">완료</a>	전자산업의 온실가스 저감효율 측정 관련 해외는 샘플링 규격이 합리화(美:35%/5년)되었으나, 국내의 경우 측정 다(100%/5년)	국제기준에 맞게 전자산업의 온실가스 감축설비 저감효율 측정 대상 합리화*  * 전체 설비의 연 20% → 연 10%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 개발 가이드라인」 개정 완료('22.12.30.)	
13	폐기물부문 배출량 할당 체계 개선 및 바이오 플라스틱 보급 지원  <a href="#">완료</a>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굴뚝 자동 측정방법을 활용한 배출량 산정 방법론 및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폐기물소각시설 등 온실가스 직접 측정을 위한 공정시험기준 마련
		「온실가스 공정시험기준」 제정 완료('22.11.25.)	
14	배출량 산정 계획서 검증 절차 개선  <a href="#">완료</a>	계획기간 내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매년 배출량 산정계획서 검증이 필요해 불필요한 행정업무 및 비용 발생	측정방법 등의 변경이 없는 경우 기존 제출한 배출량 산정계획서를 활용토록 개선, 연 2회 보고의무를 → 연 1회 동시제출로 변경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개정 완료('22.12.30.)	
15	열 사용 간접배출량 산정 관련 지원 필요  <a href="#">완료</a>	배출량 산정 시 열(스팀) 공급업체의 경우 많은 업체가 연동되어 있어 배출량 오류 시 과도한 행정비용 및 인력 낭비 발생	배출계수 산정 오류로 인한 기업의 행정비용을 저감하기 위해 배출량 보고(3월) 이전 사전 컨설팅 실시(~2월)
		열(스팀) 공급업체 대상으로 배출계수 개발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추진 완료('23.1.~2.)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16	배출권 총당부채 현실화 방안 마련  <span style="float: right;">(완료)</span>	회계 결산기준(연말)과 배출권 제출 기한(차년도 6월) 간 차이로 초과 배출량에 대해 배출권을 구매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 전까지는 배출 부채로 남아있는 문제 발생	일부 구매량에 대해 결산기준도달 이전 부채에서 상계할 수 있도록 배출권 사전제출(12월 말) 허용방안 마련
		적극행정으로 추진중('22.12월~)	
17	시장안정화조치 시행기준 개선 및 세부기준 공개  <span style="float: right;">(완료)</span>	시장안정화 조치 시행이 정부의 재량으로 되어 있어 시장 상황에 따른 발효기준 및 시행방법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업체 예측가능성 하락	가격·물량 등 발동 요건별 시장안정화 조치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배출권시장 안정화 조치 가이드라인」 수립('23.7.27.)	
18	배출권 가격 예측 정보 공유 강화  <span style="float: right;">(완료)</span>	배출권 가격의 높은 변동성으로 가격 예측이 곤란함에 따라 전문 트레이더가 아닌 업체 담당자는 적절한 배출권 매수·매도 시점을 알기 어려움	기업의 합리적인 배출권 매매 시기 결정 지원을 위해 가격정보 등 정보공개 범위 확대
		장내·외 가격정보 공개 확대 및 정보제공 창구 일원화('23.2.~)	
19	배출권시장 유동성 확보 및 가격 안정화  <span style="float: right;">(완료)</span>	배출권시장 거래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미비 등으로 거래 활성화 제한, 할당대상업체의 경우 연속 상·하한 상황 발생 시 대응 방안 부재	배출권거래 관련 정보공개 확대 및 유상할당 경매량 조정방안 설계를 포함한 시장 안정화 조치 개선방안 마련
		「배출권시장 안정화 조치 가이드라인」 수립('23.7.27.)	
20	증권사 배출권 한도 증액  <span style="float: right;">(완료)</span>	증권사(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보유한도가 20만톤으로 제한되어 있어 거래 활성화가 어려움	배출권거래 중개회사 보유한도 상향(20→50만톤)
		배출권거래중개회사 보유 한도 변경 알림('22.11.24.)	

01  
환경정책  
02  
탄소중립  
03  
수질규제  
04  
환경영향평가  
05  
국민체감  
06  
환경애로  
참고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21	CDM '다' 유형 감축량 인증기준 개선 <small>(완료)</small>	외부사업 지침에서 인정하는 4가지 해외 CDM 사업 유형 중 '다' 유형은 감축실적 인증 비율 산정 시 국내기업 참여 비율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유형별로 차등 적용되던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증범위를 통일토록 개선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개정 완료('22.12.30.)	
22	해외 CDM 사업 감축실적 (CER) 국내 감축실적(KOC) 전환 기한 유예 <small>(완료)</small>	'20년말까지 해외 CDM 사업에서 발행된 CER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실적(KOC) 인증을 위해서는 '22년 말까지 신청이 필요하나 현재 절차 중단	적당한 지연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기한 연장(~'23.末) * 코로나 팬데믹으로 유치국 입국 불가 등
		외부사업 승인·인증 관련 안내('22.11.24.)	
23	인증위원회 개최 횟수 확대 및 감축사업 방법론 증빙자료 상세기준 마련 <small>(완료)</small>	외부 감축사업 인증신청 시 관장기관 사무국 담당자에 따라 방법론 해석 기준이 상이해 승인 지연사례 발생	관장기관 검토결과와 환경부 협의의견이 달라 인증이 지연되지 않도록 환경부 검토의견을 유형별로 공개하여 검토기준 일관성 제고
		「외부사업 검토 사례집」 제작·배포('22.12.5.)	
24	감축실적 인증이 중단된 UN CDM 사업 외부사업 신청 절차 마련 <small>(완료)</small>	파리협정 이후 국가 간 상응조정에 대한 국제사회 규칙이 미확정되어 '21년 이후 발생한 감축실적 미발급 중	활용이 중단되어 있는 UN 등록 외부사업(CDM 사업) 중 국가 간 상응조정이 필요없는 국내 사업은 활용 허용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개정 완료('22.12.30.)	
25	외부사업 심의기한 제도화 필요 <small>(완료)</small>	외부사업 방법론 등록절차는 소요기간이 길고 승인 보류가 다량 발생하여 활용가능성이 낮은 상황	현재에도 배출량인증위원회 심의 요청 후 33일 이내에 부문별 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 중에 있음
		제도시행 사항 안내('22.11월)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26	배출권거래제 교육 확대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ue; border-radius: 5px; padding: 2px;">완료</span>	제도 초기에 비해 배출권거래제 운영 관련 교육이 많이 축소되어 기업 담당자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기회 확대 요청	할당업체 대상 배출권거래제 운영 교육 정례화 추진
		배출권거래제 운영 교육 정례화 추진('23.1월~)	
27	배출권시장 참여 연회비 면제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ue; border-radius: 5px; padding: 2px;">완료</span>	배출권시장 참여자에 대한 연회비가 할당량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50~100만원) 중으로, 소규모 업체에는 부담으로 작용	거래횟수, 거래량 등을 기준으로 거래 규모가 작은 소규모 업체에 대한 연회비 면제방안 검토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개정 완료 ('23.3.14.)	
28	배출권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 연장 요청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ue; border-radius: 5px; padding: 2px;">완료</span>	「조세특례제한법」 상 온실가스 배출권 부가가치세 면제가 '22.12.31.까지로 되어 있어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 연장 필요	배출권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 (~'25.12.3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완료('22.12.23.)	
29	중소·중견기업 공통 절감기술 지원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ue; border-radius: 5px; padding: 2px;">완료</span>	탄소중립 관련 정부 지원정책이 대규모 R&D 및 대형업체 위주로 □ 중소기업에 대한 공통 온실가스 절감기술 개발 및 설비 지원 필요	중소·중견 할당업체 대상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지원규모를 지속 확대 중이며, 향후 사업선정 시 기업규모별 점수 차등 확대*를 위해 관련 지침 개정 추진  * (현행) 중소 10점, 중견 8점 → (개선) 중소 10점, 중견 7점, 공시 대상 중견 4점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운영지침」 개정 완료('22.12.8.)	

01 환경정책기본법  
02 탄소중립법  
03 수질환경보전법  
04 환경영향평가법  
05 국민채감  
06 환경영향평가  
참고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30	물류업체 특성 및 운영 현실을 고려한 배출권거래제 소통 강화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ue; border-radius: 5px; padding: 2px;">완료</span>	배출권거래제 운영 시 다배출업 종 대비 교통·물류부문 간담회 등 지원사항이 미흡한 실정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체' 등 산업계 협의 채널 운영 시 물 류업종 참여 지속 추진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체(교통 등 물류) 회의 개최('22.9.28.)	
31	혁신기술 R&D 투자, 혁신 펀드 조성 등 기후대응기금 활용방안 제고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ue; border-radius: 5px; padding: 2px;">완료</span>	유상할당 확대에 따른 수입으로 다배출 업종에 대한 혁신기술 개발 및 신기술 투자 지원 확대 필요	유상할당 수입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기후대응기금' 신설('22년 ~), 탄소중립 R&D 및 저탄소 기 업 금융 지원 등을 추진 중이며 배출권 할당업체 지원방안 다변 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다 양한 감축 지원방안 검토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 지원방안 연구용역 완료('22.7.~'23.5.)	
32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확대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ue; border-radius: 5px; padding: 2px;">완료</span>	할당대상업체 중 중소,중견기업 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 교체비 지원 중	기존 중소,중견기업 지원('22)에 서 유상할당 대기업까지 지원대 상 확대('23~)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대상을 유상할당 대기업까지 확대 선정('23.2.~9.)	
33	배출권 제출시기 조정을 통한 거래시장 안정화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ue; border-radius: 5px; padding: 2px;">완료</span>	배출량 확정 이후 차입/이월 신 청기한 등이 촉박하여 짧은 기간 내 거래 집중으로 배출권 가격 등락폭 심화	시장 불안정성 완화를 위해 법령 개정 등을 통한 이월 차입/이월 신청 기한 연장(10일→90일)
		「배출권거래법」 개정 완료('24.2.6.)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34	배출권 위탁매매 허용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ue; border-radius: 5px; padding: 2px;">완료</span>	현행 배출권거래제는 할당대상 업체 중심의 직접 거래만 허용함 에 따라 거래의 편의성이 낮고, 적은 거래량으로 인해 가격 변동 성이 높아 기업의 탄소 감축 투 자 저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에 위탁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
		「배출권거래법」 개정 완료('24.2.6.)	
35	배출권 이월제한 완화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ue; border-radius: 5px; padding: 2px;">완료</span>	배출권 가격 변동성이 높아 기업 의 탄소 감축 투자 저해	배출권 이월 가능 물량 확대를 통해 가격 변동성 완화 및 감축 투자 유인 제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변경 (’23.12)	
36	대형 전기화물차 1회충전 주행거리 시험방법 개선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ue; border-radius: 5px; padding: 2px;">완료</span>	현재 대형 전기화물차 인증 기 준은 1회충전 주행거리 측정시 136kg의 화물을 적재 후 73km/ h로 정속 주행하도록 규정 * 현행 시험방법으로 1회충전 주행 거리 측정시 약 1,000km 주행 가 능하며 14시간 소요 예상	완적상태로 주행하는 화물차 특 성을 반영하여 적재량기준*을 상 향, 장시간 주행에 따른 운전자 피로도 증가 및 생리현상 해결을 위해 150km 주행 이후 10분간 의무휴식 부여 * (현재)136kg → (개정안)트랙터형 34톤(컨테이너 및 트레일러 무게 포함), 카고형 제작허용 총중량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개정 완료('23.7.4.)	
37	바이오매스 원료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대상 확대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ue; border-radius: 5px; padding: 2px;">완료</span>	철강, 석유화학 업종에서 바이오 매스 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만 배 출량 차감 인정	정유업종 등 타 업종에서도 바이 오매스 원료를 사용한 경우 배출 량 차감 인정
		배출권거래제 명세서 작성 가이드라인 개정 완료('23.12.27.)	

01  
환경정책기본법  
02  
탄소중립기본법  
03  
수질환경기준  
04  
환경영향평가법  
05  
국민체육진흥법  
06  
환경영향평가법  
참고

## 진행중 과제 (14개)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38	명세서 검증 적합성 평가 및 추가검토 간소화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5px; padding: 2px;">진행중</span>	배출량 적합성 평가 시 과도한 증빙자료 요청 및 추가검토로 행정비용 및 인력 낭비 발생	배출량 산정 편의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IT 기반의 배출량 인증시스템을 구축하여 자동화평가 도입, 주요시설에 대해서만 심층평가 하도록 배출량 인증체계 개편 추진
		온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의 배출량 산정 기능 고도화 예정('24.~)	
39	전기차 저온 주행거리 시험 측정방법 개선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5px; padding: 2px;">진행중</span>	전기차의 저온 주행거리 측정시 극단적인 조건*으로 측정하여 실제 저온 주행거리와 격차 발생, 업체별 히터 성능 상이로 저온 주행거리와 상온 주행거리에 큰 차이 발생 * 저온환경(-6. 7℃)에서 히터 온도 최대(실내온도 39℃까지 상승)팬 속도 최대로 작동시킨 상태에서 주행	연구용역('23.6~'24.3월), 해외사례 분석 등을 통해 전기차 저온 주행거리 시험측정 방법 개선안 마련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개정안 마련중	
40	녹색기업에 대한 보고·검사 의무 면제 등 인센티브 확대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5px; padding: 2px;">진행중</span>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및 사업장에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등에 따른 보고·검사 의무 면제 인센티브를 부여중이나, 「환경오염시설법」상 보고·검사 의무 면제 인센티브는 부재 *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자원과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 개선, 녹색경영체계의 구축 등을 통해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기업 및 사업장	통합환경관리제도*상 통합허가 이후 1~3년 내 수행하는 정기보고·검사 등 「환경오염시설법」상 각종 보고·검사 의무도 면제 * 환경영향이 큰 업종의 대규모 배출 사업장에 대해 기존 오염매체(대기·수질·토양 등)별 배출시설 관리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제도('17년~, 환경오염시설법 시행)
		「환경기술산업법」 개정중(국회발의, '22.8.31.)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41	전기차 배터리 방전 테스트 방식 일원화  <span style="float: right;">진행중</span>	전기차 에너지 소비효율과 대기배출물질·소음 측정을 위한 배터리 방전 테스트 방법이 부처 간 상이*하여 이를 일원화할 필요  * ▲산업·환경·국토부 공동고시(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온실가스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최대속도의 65~75%로 주행하여 배터리 방전▲환경부 고시(제작자 시험검사 및 절차 규정): 105km/h 정속 주행으로 배터리 방전	공공고시 소관부처 간 협의(산업·환경·국토, ~'23년)를 통해 전기차배터리 방전테스트 기준 개선안 마련
		「자동차에너지 소비효율·온실가스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마련중	
42	대기배출허용총량 초과배출 기업에 대한 이중 제재 부담 완화  <span style="float: right;">진행중</span>	대기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기업은 과징금 부과, 차년도 배출허용총량 삭감 등 이중 제재 부담	연구용역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총량삭감 비율 하향 조정 등 부담완화 방안 마련
		「대기관리권역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중(연구용역 진행, '23.10.19. ~'24.4.15.)	
43	온실가스 상쇄 배출권 확대  <span style="float: right;">진행중</span>	온실가스 배출권과 같이 사용 가능한 상쇄배출권의 활용도가 축소되어, 온실가스 배출 기업의 경영 부담 가중	국가감축목표 달성을 담보하면서 기업의 의무이행 유연성도 함께 고려한 최적의 상쇄배출권 한도 설정
		최적의 상쇄배출권 한도설정 검토중(관계부처, 전문가 검토·논의중)	
44	거점 단위 녹색 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제공 확대  <span style="float: right;">진행중</span>	「녹색융합클러스터법」 제16조(입주기업지원)에 국유재산 사용에 관한 특례 부재	「녹색융합클러스터법」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입주기업의 애로 사항 해소를 위한 근거 규정 반영 추진
		「녹색융합클러스터법」 개정안 마련중	

01  
환경정책기본법  
02  
탄소중립법  
03  
수질환경보전법  
04  
환경영향평가법  
05  
국민체육진흥법  
06  
환경영향평가법  
참고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45	이산화탄소 포집 관련 배출량 차감 인정시설 추가	할당대상업체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이동하여 다른 제품의 원료 등 8가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량만큼 배출량 산정에서 제외	이산화탄소를 포집·이동하여 사용량(MRV) 확인이 가능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및 해저 등 격리시설에 저장(CCS)하는 경우에도 배출량 차감 인정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5px; padding: 2px;">진행중</span>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개정안 마련중	
46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 출시 기반 마련	배출권을 활용한 금융상품 개발을 제한하여 투자 유도에 한계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 출시를 허용하여 민간의 간접투자 활성화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5px; padding: 2px;">진행중</span>	ETN 출시 허용방안 검토중	
47	배출허용 총량제를 유연하게 이행하기 위한 차입(차년도 허용총량사용)허용	차년도 배출허용총량 차입 미시행	총량제의 할당량 준수를 위해 당해연도 할당량 부족시 다음연도 배출허용총량 일부를 미리 사용하는 차입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장 부담 경감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5px; padding: 2px;">진행중</span>	차년도 배출허용 총량 사용방안 검토중(외부감축활동 방법론 및 유연성 기제 도입 세부방안 마련 연구구역, '23.10월~'24.4월)	
48	배출허용 총량제를 유연하게 이행하기 위한 상쇄(사업장경계 밖 감축활동) 제도 도입	사업장 외부감축활동을 감축량으로 인정받는 상쇄제도 미시행	중소사업장 연료전환 지원 등 사업장 외부 감축활동을 감축량으로 인정받는 상쇄제도 시행하여 총량제도의 유연화를 통한 사업장부담 경감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5px; padding: 2px;">진행중</span>	차년도 배출허용 총량 사용방안 검토중(외부감축활동 방법론 및 유연성 기제 도입 세부방안 마련 연구구역, '23.10월~'24.4월)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49	CO <sub>2</sub> 포집·이용·저장(CCUS)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기술·설비에 맞는 대기오염물질 관리방안 마련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적용에 맞는 대기오염물질 관리방안 부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기술·설비에 적용 가능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변화에 대한 보정 방안 마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중	
50	대기관리권역 총량 초과시 할당량 감량 개선	총량 초과시 과징금 부과 및 차년도 할당량 감량	할당량 감량 규정을 완화하여 기업부담 완화
		「대기관리권역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중	
51	지자체 녹색 생활 확산 제도 시행 법적근거 마련	에코마일리지 사업 시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서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취급·처리를 통해 실제 거주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하나, 인센티브 부여사업의 지자체 추진 근거 부재로 정보 확인 어려움	인센티브 부여사업(탄소중립포인트, 에코마일리지)의 지자체 추진 근거 마련토록 법령 개정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중	

01 환경영향평가법  
02 탄소중립법  
03 수질환경기준  
04 환경오염물질관리법  
05 국민체감  
06 환경영향평가  
참고

과제별 담당 부서

	과제번호	담당 부서 (044-201-****)
과제 분류 (총 51개)	1	기후전략과 (6643)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7, 38, 43, 45, 46	기후경제과 (6582)
	51	기후적응과 (6953)
	40	녹색전환정책과 (6595)
	44	녹색산업혁신과 (6702)
	36, 39, 41	대기미래전략과 (6946)
	42, 47, 48, 49, 50	대기관리과 (6902)

완료 과제 (42개)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1	순환자원 인정기준 완화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ue; border-radius: 5px; padding: 2px;">완료</span>	순환자원 인정기준(법률 2, 시행령 9)이 엄격하고 인정절차(60~120일)가 복잡하여, 순환자원 인정비율 낮음	시행령 2개 기준(소각·매립 제외, 인정 용도로 사용)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 완료('22.12.30.)	
2	식물성잔재물(커피찌꺼기) 재활용 가능유형 확대(커피박 재활용 활성화)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ue; border-radius: 5px; padding: 2px;">완료</span>	커피박(찌꺼기)의 재활용 가능 유형이 비료·사료 등으로만 한정되어 그 외 용도는 별도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 필요	커피박의 재활용 가능 유형을 발전연료, 벽돌 등 요업제품 제조 등으로 확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22.11.29.)	
3	재활용 환경성 평가제도 활성화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ue; border-radius: 5px; padding: 2px;">완료</span>	재활용에 대한 현행 규제체계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기업의 어려움 상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기반 구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22.11.29.)	
4	폐기물처리 시설 신증설 적극 허가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ue; border-radius: 5px; padding: 2px;">완료</span>	일부 지자체가 민원 등을 이유로 법률의 위임 없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조례 등으로 제한하는 사례 제기	지자체 조례·지침 조사 후 부적절 조례·지침 개정 요구 및 이행 상황 점검을 통해, 「폐기물관리법」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신규시설 허가 및 기존시설 증설 적극 허용
		폐기물처리업 허가 제한 지자체 조례·지침 점검 및 4개 지자체 정비 완료('22.11.~12.)	
5	재활용 제품 제조 규격화(인화점 기준 완화)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ue; border-radius: 5px; padding: 2px;">완료</span>	페플라스틱 열분해유의 석유 또는 석유화학제품 원료로 활용 시 재활용 기준 미비	페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 및 석유화학 원료로 제조시 재활용 기준에 인화점 제외 등 기준 마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22.11.29.)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6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실적 인정 범위 확대 (전기전자제품 제조 시 재활용 실적 인정 확대) <span style="color:blue">완료</span>	다양한 종류의再生资源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전기·전자제품 제조시 폐전기·전자제품을 재활용한再生资源로만 재활용의무량 감면대상으로 인정	폐전기·전자제품뿐 아니라 모든再生资源(합성수지류)를 사용한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여 재활용의무량에서 감면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완료(22.12.30.)	
7	중간가공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규제 완화 <span style="color:blue">완료</span>	중간가공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타인명의 임시차량 이용이 불가하며, 환경 위해 우려가 적은 생산자책임재활용대상 폐기물을 중간가공한 경우에도 수집·운반증 발급의무 적용	타인명의 임시차량에 대한 수집·운반증 발급 허용 및 환경 위해 우려가 적은 경우 수집·운반증 발급 의무 폐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2.11.29.)	
8	순환자원 인정 활성화를 위한 지정·고시제도 도입 <span style="color:blue">완료</span>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폐기물관리법」상 규제를 면제(18~)하고 있으나, 사업자별로 환경청장에게 순환자원 인정 신청시 인정·기준절차가 복잡하여 업계 부담	환경성·경제성이 높은 품목을 순환자원으로 先 인정·고시하고, 後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체계로 전환
		「자원순환 기본법」 전부개정 완료(22.12.31.)	
9	신규품목 폐기물 여부 신속판단 <span style="color:blue">완료</span>	기술개발 및 급속한 산업 발달로 인해 신규물질의 다양한 용도로의 활용이 가능함에도, 법적·제도적 기반이 즉시 뒷받침되지 못함에 따라 신규물질의 활용 지연 및 제한 초래	신규 품목의 폐기물 여부를 신속 판단(자문위원회를 거쳐 즉시 결정) 후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통해 폐기물에서 제외(즉시)
		유권해석 안내(22.12.31.)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10	포집된 이산화탄소 폐기물에서 제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이산화탄소스트림(51-36-01)”이 폐기물로 분류되어 이를 재활용 시 「폐기물관리법」상 규제가 적용되어 이를 활용한 사업 추진 애로	용기에 담긴 이산화탄소가 대기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이하인 가스(공장 굴뚝 이후)에서 포집된 경우 폐기물에서 기 제외(유권해석)
		유권해석 안내('22.12.31.)	
11	열분해시설 재활용시설로 분류	페플라스틱 열분해시설은 화학적 재활용시설이나 현행법상 소각시설의 한 종류로 분류되고 있어 설치·관리 기준 등이 엄격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3]을 개정하여 재활용시설의 종류에 열분해시설을 추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의2]을 개정하여 페플라스틱으로 석유화학제품 원료(열분해유) 제조가 가능하도록 재활용 유형 추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 완료('22.11.29.)	
12	폐배터리 재활용 폐기물 규제 제외	폐배터리 관련 신산업 창출을 위해 활발한 실증연구 등이 진행중이나, 폐기물 규제가 적용되어 민간시장 활성화에 제약 발생	순환자원으로 인정·고시하여 폐기물 규제 면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 완료('22.12.30.), 「자원순환기본법」 개정 완료('22.12.31.)	
13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제도 신설	자원순환 신기술·신산업이 각종 폐기물 규제(예 : 폐기물처리업 허가, 재활용 유형·기준)로 인해 활성화 애로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의 실증·상용화를 위한 규제특례 신설을 위한 「자원순환기본법」 개정
		「자원순환기본법」 개정 완료 및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22.12.31.) ※ 참고2(P.133) 참조	

01 환경영향평가제도  
02 탄소중립  
03 순환경제  
04 환경영향평가제도  
05 도시개발  
06 환경영향평가  
참고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14	재활용 대상 분담금 지원 확대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ue; border-radius: 5px; padding: 2px;">완료</span>	플라스틱 중 일부만 재활용 (57%)되고, 나머지 잔재물은 (43%)은 시멘트 소성로로 투입 되거나 단순 소각 매립	플라스틱을 열분해유로 재활용 할 경우 EPR 지원단가 및 인정 사업물량 확대
		재활용지원금 단가 상향('23.5.4.)	
15	철스크랩 공급부족 대응 순환 자원화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ue; border-radius: 5px; padding: 2px;">완료</span>	철 스크랩 공급 부족 심화에 따른 「폐기물관리법」 규제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순환자원화 촉진 지원 필요	활용가치가 높은 폐기물의 순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환자원 인정기준 완화
		「자원순환법 시행령」 개정 완료('22.12.30.)	
16	재생원료 사용비용 표시 허용 및 지자체 구매노력 부여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ue; border-radius: 5px; padding: 2px;">완료</span>	재생원료는 원재료 대비 경제성 확보가 어려워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 한계	재생원료 사용 촉진을 위해 재생원료 사용제품에 대한 홍보 수단 및 공공조달에 따른 안정적인 수요 확보
		「자원재활용법」 개정 완료('23.3.28.)	
17	공공선별장의 선별설비 자동화·현대화 지원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ue; border-radius: 5px; padding: 2px;">완료</span>	공공재활용선별시설 신증설 지원	공공재활용선별시설 자동선별 설비 등 시설 현대화 지원
		'23년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및 현대화사업 대상 선정 완료('22.12.26.)	
18	버섯폐배지 재활용 유형 확대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ue; border-radius: 5px; padding: 2px;">완료</span>	버섯폐배지의 재활용 가능 유형이 비료·사료 등으로만 한정되어 그 외 용도는 별도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 필요	유지제품, 화력 및 열병합발전소의 연료 등으로 재활용 유형 및 기준 확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22.11.29.)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19	배출자 변경신고 간소화  <a href="#">완료</a>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 해당 시, 지정폐기물 해당여부 확인 필요	상호, 소재지 및 처리계획 변경 등 폐기물 변경이 없는 경우 지정폐기물 해당여부 확인 의무 제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22.11.29.)	
20	왕겨 및 쌀겨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폐기물 인계인수 입력 의무 면제  <a href="#">완료</a>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 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 필요	왕겨 및 쌀겨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폐기물 인계인수 입력 의무 대상에서 제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22.11.29.)	
21	보증금제 대상 일회용컵 수집운반 체계 개선  <a href="#">완료</a>	보증금제 대상 1회용컵 수집운반을 위해서는 수집운반업 허가, 밀폐형 압축, 압착 또는 암롤 차량 필요	폐기물 처리신고 대상으로 완화하고, 밀폐형 덮개 설치 차량 허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22.11.29.)	
22	사료용 쌀겨 폐기물 제외  <a href="#">완료</a>	왕겨 및 쌀겨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로 관리	사료용 왕겨 및 쌀겨는 폐기물에서 제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22.11.29.)	
23	페플라스틱 열분해유 재활용유형 확대  <a href="#">완료</a>	오염, 이물질 혼입으로 단순 소각·매립되는 페플라스틱을 열분해하여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 기반 미비	페플라스틱 열분해유 재활용 유형 확대, 페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 세부기준 마련 등 열분해유 활용 확대를 위한 규정 정비(유형확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22.11.29.)	

01 환경영향평가제도  
02 탄소중립제도  
03 순환경제  
04 환경영향평가제도  
05 도시채권  
06 환경영향평가  
참고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2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음식물류폐기물의 에너지 회수 재활용은 혐기성소화·분해 등 생물학적 방식(R-9-4)만 허용	음식물류폐기물의 유기성 물질은 열적 처리 방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활용이 가능함에 따라 재활용 유형(R-9-3) 확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23.5.31.)	
25	폐기물 재활용 유형 확대	폐유, 폐윤활유는 석유 및 석유 화학제품의 원료물질로 제조할 수 있는 재활용 유형 부재	폐윤활유 및 그 밖의 폐유를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물질로 제조할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 및 기준 마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23.5.31.)	
26	기술관리인 자격기준 확대	소각시설, 시멘트 소성로, 용해로 및 소각열회수시설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에 대기환경기사 및 화공기사 등이 포함	소각시설, 시멘트 소성로, 용해로 및 소각열회수시설 자격기준에 시험과목이 유사한 에너지관리기사를 추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23.5.31.)	
27	재활용환경성 평가기관 지정기준 개선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은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정 가능	폐기물 유해특성 항목(용출독성 제외)에 대하여 시험분석 가능 기관에 의뢰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개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23.5.31.)	
28	폐의류의 재이용 활성화	생활폐기물로 발생하는 폐의류를 단순 선별 등을 통해 원형 그대로 재사용하는 경우 해당 재활용 유형(R-1-1) 및 재활용신고자 기준 부재	폐의류(생활폐기물) 재활용 유형(R-1-1)을 추가하고, 폐기물 처리신고 대상에 폐의류를 원형 그대로 선별 포장 후 본래의 용도로 재사용하도록 판매·수출하는 자를 추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23.5.31.)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29	유기성 오니 발전연료 사용 제한 폐지  <span style="float: right;">(완료)</span>	유기성 오니의 발전소 연료 사용시 사용 가능량이 총 연료 사용량의 5%로 제한되어 재활용 확대 곤란	「폐기물관리법」 별표 5의3을 개정하여, 유기성 오니의 발전소 연료 사용량 제한 해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23.5.31.)	
30	폐목재 폐기물분류 코드 개선  <span style="float: right;">(완료)</span>	폐목재 폐기물 분류의 경우, 재활용 인허가, 배출자 배출신고, 환경부 통계 등에서는 대·중·소 분류까지 구분하고 있으나, 폐기물 분류코드에서는 소분류는 구분하지 않음	폐기물 분류 코드만으로도 폐기물 분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표준화/간소화(기존 14개에서 7개로 간소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23.5.31.)	
31	편의점에서의 나무젓가락 사용 허용  <span style="float: right;">(완료)</span>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편의점(종합소매업)에서 식품접객업으로 신고한 경우 일회용 나무젓가락 사용이 불가하여 국민 불편함 야기	편의점(종합소매업)에서 식품접객업으로 신고한 경우 일회용 나무젓가락 사용 허용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23.4.19.)	
32	세척가능한 잉크로 직접 인쇄한 페트병의 재활용 등급 개선  <span style="float: right;">(완료)</span>	페트병 몸체에 인쇄된 잉크가 재활용공정시 세척 가능여부와 무관하게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로 분류되어 분담금 가중 부과 등 애로	페트병 라벨 중 몸체와 같은 재질에 열알칼리성 분리잉크 사용하여 인쇄하는 라벨에 대한 재활용 용이성 등급 상향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고시」 개정 완료('23.4.14.)	

01 환경영향평가제도  
02 탄소중립(탄소배출권거래제)  
03 순환경제  
04 환경영향평가제도  
05 국민체감  
06 환경영향평가  
참고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33	폐기물 이산화탄소 전환탄산화물의 재활용을 폐기물 재활용업자와의 참여제한 개선 <a href="#">완료</a>	이산화탄소 전환 탄산화물은 폐기물로 분류되어, 폐기물 재활용 업체외에서는 활용이 불가능	탄산화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모든 업체에서 활용가능하도록 개선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폐기물 해당 여부 유권해석 및 순환자원의 인정 기준 완화('22.12.30)	
34	소각열 회수율 감면기준 개선 <a href="#">완료</a>	소각열 회수율에 따른 폐기물 처분부담금 감면기준은 회수율 50% 이상부터 3단계로 감면하고 있으며, 사업장비배출시설계는 사업장폐기물의 부담금 요율을 적용	소각열 회수율 감면기준을 확대(30% 이상부터) 및 세분화(6단계)하고,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의 부담금 부과요율을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적용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 완료('23.12.19.)	
35	행정처분 기준 개선 <a href="#">완료</a>	대기, 소음·진동, 수질오염물질,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폐기물처리신고자가 폐기물처리업자보다 강화된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 바, 형평성 보완 필요	폐기물처리신고자가 대기, 소음·진동, 수질오염물질,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1차 처분을 처리금지 1개월에서 경고조치로 완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23.12.28.)	
36	폐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a href="#">완료</a>	재활용 기업은 재활용원료가 되는 폐배터리, 공정스트랩 등의 보관기간이 1일 처리용량의 30일분 이하로 보관기준 때문에 원료 확보에 애로	원료확보차원에서 보관기준(보관량, 처리기한)을 1일 처리용량의 30일에서 180일분 이하로 확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23.12.28.), 전기차 폐배터리 순환자원 지정, 고시('24.1.1.)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37	재포장 금지 예외기준 명확화	재포장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날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에 대한 설명·안내가 불명확*해 기업활동 애로 * 날개로 판매하지 아니하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날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여 수정·배포
		[완료] 재포장 금지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 완료(‘23.8.31.)	
38	소매업 빈용기 반환·처리 부담 경감	소매업자는 영업시간 내 언제나 빈병을 반환받아야 하며 시간·요일을 특정하여 반환 거부 시 과태료 처분 * 생계형 소매점(165㎡ 미만)은 인력 및 장소 부족으로 빈용기 반환 처리에 애로	무인회수기 설치 등을 통해 소매업 빈용기 반환·처리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빈용기 반환 우수 소매점 포상 신설
		[완료] 빈용기 반환 우수 소매점 포상제도 신설(‘23.12.6.)	
39	폐기물처리 신고대상 폐기물 추가	1회용컵은 폐기물처리 신고시 수집, 운반만 가능	폐기물처리 신고시 수집, 운반 및 압축, 보관 등 재활용 가능도 록 개선
		[완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23.12.28.)	
40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폐기물 분류번호 신설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된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는 그 밖의 폐섬유로 관리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의료기관 일회용 기저귀 분류번호 신설로 체계적 관리
		[완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23.12.28.)	

01  
환경정책기본  
02  
탄소중립기본  
03  
수질환경  
04  
환경영향평가  
05  
국민체감  
06  
환경영향  
참고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41	무기물 복합재질 재활용용이성 판단기준 문제 개선 검토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5px; padding: 2px;">완료</span>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기준」에서 무기물(탄산 칼슘, 미네랄 등) 충전 합성수지 필름(시트)류, 용기(트레이)류 포장재를 물질 재활용 및 열적 재활용이 어려운 물질로 재활용 등급을 분류	무기물 충전 단일재질 합성수지 필름(시트)류, 용기(트레이)류 포장재의 경우 물질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활용 우수'로 분류하는 방안에 대해 업계 의견 청취 등 재검토
		연구용역(「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 도입성과 관련 연구용역」, '22.12.6.~'23.4.5.) 결과를 토대로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기초자료 활용	
42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통계 개선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5px; padding: 2px;">완료</span>	재활용 중간처리시설 반입량만 집계	재활용방식(물질/화학/에너지 회수, 수거 및 선별 등)별 세분화된 통계마련
		폐기물 종류별 재활용 방식에 따른 통계 반영(제6차 전국 폐기물통계 조사 발표, '23.4.27.)	

진행중 과제 (37개)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43	인체유래 폐기물 재활용 허용	<p>현행 「폐기물관리법」은 태반을 제외한 모든 의료폐기물의 재활용을 금지하고 있어, 미용·의약품 개발 등에 활용 불가</p>	<p>기술발전에 따라 폐치아·폐지방의 활용도 및 경제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재활용을 허용</p> <p>* '15.1월 '치아 활용 골이식재 가공 기술' 신의료기술평가 통과, '20.8월 '인체유래 콜라겐 적용 의리기기 실증' 착수 등</p> <p>* 다만, 생명윤리 및 안전성 측면 우려 해소를 위해 폐지방 활용 시의 경제성·유효성 및 안전성 등에 대한 검증 필요</p>
		<p>「폐기물관리법」 개정중</p> <p>※ 폐지방 활용 실증사업 진행 (규제자유특구, '19.8~'23.8월)</p>	
44	이산화탄소 전환탄산화물 재활용 유형 신설	<p>CCUS 기술로 포집된 이산화탄소 포집물은 폐기물에 해당하고 폐기물관리법상 규제가 적용되어 산업·건설 소재 등으로 재활용 곤란</p>	<p>「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의3]을 개정하여 이산화탄소 포집물의 재활용 허용유형 범위 확대</p>
		<p>적극행정으로 추진중('22.8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중(입법예고, '23.8.4.~'23.9.15.)</p>	
45	생분해 플라스틱 활용기반 마련	<p>국내 매립지 부족, 재활용 산업 보호·육성을 위해 생분해성 플라스틱에 대한 국내 범용적 활용 추진에 제한</p>	<p>국내 재활용 체계 편입이 어려운 제품군에 대해 플라스틱 사용을 집중하여, 해당 제품군 내 시장 실적을 통해 해외 진출 확대 추진</p>
		<p>생분해성 플라스틱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이해관계자 논의 중</p>	

01

환경친화적 에너지

02

탄소중립 실현

03

순환경제

04

환경친화적 평가

05

국민체감

06

환경애로

참고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46	제품 포장 간이 측정방법 가이드라인 마련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과대포장하지 않도록 포장기준(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을 지켜야 하나 다양한 형태의 제품 포장이 존재하여 포장별로 측정방법을 적용하기 쉽지 않아 현장어로 발생	제품포장 간이 측정방법에 관한 해설서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택배 포장방법에 관한 간이 측정방법 등 세부기준 마련
		과대포장 등 가이드라인 마련 용역 수행('22.12.~'23.8.), 과대포장 간이 측정방법 해설서 마련중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5px; padding: 2px;">진행중</span>	
47	전기차 폐배터리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전기차 폐배터리 중 재사용 또는 재활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연구사업 등으로 매각 또는 무상제공 가능하여 연구목적 수요에 대한 폐배터리 공급이 부족	매각이 불가능하거나 재활용기술 개발이 필요할 경우 연구목적으로 무상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반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마련중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5px; padding: 2px;">진행중</span>	
48	화학적 재활용 폐기물부담금 감면 기준 마련	화학적 재활용에 대한 재생원료 사용 인증 기준 미비	화학적 재활용에 대한 재생원료 사용 인증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 진행
		순환경제를 위한 재생원료 사용 인증 기준 마련중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5px; padding: 2px;">진행중</span>	
49	열분해 기술 R&D 지원·시설 확충	공공열분해시설 '22년 4개소 추진	공공열분해시설 '23년 2개소 추진 예정
		공공열분해 시설 추진 지자체 대상 간담회 등 지속 추진('23.3월~)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5px; padding: 2px;">진행중</span>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50	비닐류 선별 설비 등에 대한 확충 <span style="color: #00AEEF;">▶</span> 진행중	공공재활용선별시설 신증설 지원	폐비닐 전문 선별시설 지원('22~)
		'23년 폐비닐 전문 선별시설 구축 사업 대상 선정('22.12.23.), 확충 지원 지속 추진('22~)	
51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체계구축-DB구축 방안 및 운영 법적근거 마련 <span style="color: #00AEEF;">▶</span> 진행중	전기차 배터리 관련 부처별 기능에 따라 분산관리	배터리 제작(산업부), 등록·운행·탈거(국토부), 재활용(환경부), 재제조·재사용(산업부) 등 DB를 연계하여 통합 운영
		DB 구축방안 및 운영 법적근거 마련(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예정	
52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체계 구축-배터리 내부제어 시스템 정보 공유방안 마련 <span style="color: #00AEEF;">▶</span> 진행중	충방전 방식에 의한 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대당 8시간 가량 소요	배터리 내부제어시스템 정보를 활용한 성능평가 도입으로 대당 30분으로 단축
		배터리 내부제어시스템 정보 공유방안 마련중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53	사용후배터리 관련 기술 R&D지원 <span style="color: #00AEEF;">▶</span> 진행중	사용후 배터리 진단 및 재활용 기술 개발 중	사용후배터리 진단·평가 기술 고도화, 재제조·재사용·재활용 기술 개발 등을 위한 R&D 지원
		사용후배터리 재활용 R&D 과제 추진중('22~'24)	
54	사용후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span style="color: #00AEEF;">▶</span> 진행중	민간기업별 재활용 기술에 대한 실증지원 체계 부재	사용후배터리 재활용 기술개발·실증, 창업·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용후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클러스터 운영방안 용역 발주('23.6월) 및 조성사업 착공('23.7월, '25년 상반기 완공 예정)	

01

환경부 폐기물관리국

02

다산재활용사업관리국

03

수업관리국

04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5

국립환경과학원

06

환경산업연구원

참고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55	폐LED 조명의 EPR 대상 조정  <span style="border: 1px solid green; border-radius: 5px; padding: 2px;">진행중</span>	평판형 폐LED 조명은 재활용 회수율이 저조하여 EPR 대상의 효과가 작고 업체의 부담 가중	적극행정위원회 의결로 평판형 폐LED조명 EPR대상에 제외
		적극행정으로 추진중('23.1월~),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중(입법 예고, '23.1.17.~'23.3.8.)	
56	폐기물 배출자의 관리대상 작성방법 개선  <span style="border: 1px solid green; border-radius: 5px; padding: 2px;">진행중</span>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시마다 내용을 관리대장에 날짜별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 부담	폐기물 발생 및 처리 내용의 작성기한을 매월 말일 기한으로 작성토록 개선  * 月 단위 관리로 작성시 업체부담 감소 (2시간/日→ 4시간/月 소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중	
57	폐기물 매립시설 상부토지를 주차장 야적장 등으로 이용 확대  <span style="border: 1px solid green; border-radius: 5px; padding: 2px;">진행중</span>	폐기물 매립시설은 매립 종료 후 30년간 사후관리하며, 매립 시설 상부의 토지이용 용도를 제한	최중복토층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차장, 야적장 등으로 토지이용 가능 용도 확대
		「폐기물관리법」 개정중(국회발의, '24.1.8.)	
58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 설치기준 개선  <span style="border: 1px solid green; border-radius: 5px; padding: 2px;">진행중</span>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 설치는 시간당 처분능력 100kg 이상의 기계적 방식으로만 한정*('01년~)  * 배출자는 의료폐기물 직접처리 시 소각시설(처분능력 25kg ↑) 또는 관련조건을 특한 멸균분쇄 시설(①중기멸균, ②열관멸균, ③마이크로웨이브멸균)을 갖춰야 함	기술변화를 반영하여 다양한 멸균분쇄기술 허용 및 처분능력 기준 완화*  * 국제기준(WHO)은 멸균조건(99.9999% 멸균)을 만족하면 멸균·분쇄 장비로 인정하고 있으며, 미국·일본·영국 등은 멸균방법의 다양성을 허용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중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59	전자제품 환경성 보장제 불필요한 행정서류 제출절차 간소화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5px; padding: 2px;">진행중</span>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하는 기업 도 의무이행계획서 및 결과보고 제출 의무 부여	재활용부과금 납부 기업에 의무 이행계획서 및 결과보고 의무 면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중	
60	폐기물처리 업체대상 관할청의 측량 점검 근거 규정 마련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5px; padding: 2px;">진행중</span>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폐기물량 확인 방법은 폐기물의 특성을 반영하 지 못해 측량값의 정확도 제고 필요	환경청·지자체의 실보관량 측정 지원방안 마련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 마련중	
61	폐기물분류 체계 재조정을 통한 리튬이온 배터리 통합 관리 필요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5px; padding: 2px;">진행중</span>	환경친화적 자동차 배터리 분류 기준이 모호, 일반 차량배터리 와 동일한 취급으로 재활용에 한계	기존 폐기물 분류코드와의 정합 성을 고려하여 별도 코드개설 또는 전기차폐배터리로 분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중	
62	생활폐기물의 민간 소각시설 처리 활성화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5px; padding: 2px;">진행중</span>	관내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양 이 지자체가 보유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처리량을 초과하는 경 우 대부분 폐합성수지, 폐지 등 가연성인 생활폐기물임에도 불 구하고 매립시설에서 매립 처리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 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 지자체의 공공소각장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매립되는 가연 성폐기물(폐합성수지 등)에 대해 해당 지자체 관내 민간소각장에 서 처리될 수 있는 방안 강구
		변경허가(민간 소각장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생활폐기물 추가) 협조 요 청 문서 시행 등 조치방안 마련중	

01

환경친화적  
제품

02

탄소중립  
제품

03

순환경제  
제품

04

환경친화적  
포장

05

도시채광

06

환경애로

참고

참고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63	사업장 비배출 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다량배출자(생활폐기물 배출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허용 <span style="color: green;">▶ 진행중</span>	다량배출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위탁처리	다량배출자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지자체 조례에 따라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허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중(입법예고, ~'23.9.15.)	
64	폐기물 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요건에 열분해시설 추가 <span style="color: green;">▶ 진행중</span>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개정('22.11.29 개정·시행)에 따라 검사대상 시설에 열분해시설이 포함된 바, 검사기관이 갖춰야 할 시설·장비 요건 규정 필요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대상에 열분해시설을 추가하면서 기존 소각시설 검사기관이 열분해시설을 검사할 경우 기술인력, 시설·장비를 증보코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중(입법예고, ~'23.9.15.)	
65	어업·양식업용 폐합성수지 수집·운반자의 임시보관장 설치 추가 <span style="color: green;">▶ 진행중</span>	양식용 부자, 김발장, 어망 및 로프를 수집·운반하고자 할 경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후 수집·운반 및 임시보관장소 승인 가능	양식용 부자, 김발장, 어망 및 로프를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 품목으로 추가, 지자체와의 대행계약 없이 수집·운반 가능한 폐기물로 지정 및 임시보관장소 승인대상에 추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중(입법예고, ~'23.9.15.)	
66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 판단기준 완화 <span style="color: green;">▶ 진행중</span>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변경)신고 대상 판단기준이 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증가량 산정기간이 '전년도 1년간'으로 불명확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변경 확인 대상 여부 산정기준과 동일하게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중(입법예고, ~'23.9.15.)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67	쓰레기종량제 봉투 환불 및 타지역 활용 편리성 제고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5px; padding: 2px;">진행중</span>	이사 등으로 불필요해진 종량제 봉투를 환불 요청할 경우, 판매점에서 구매 영수증 요구 또는 환불 거부	영수증 없이도 가까운 판매점(구매여부와 무관)에서 환불하거나, 신규 전입지역에서 바로 사용가능토록 개선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안 마련중	
68	식품접객업 및 집단 급식소에서 1회용 종이컵 사용 허용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5px; padding: 2px;">진행중</span>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 종이컵의 매장내 사용 금지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 종이컵 사용 허용 ※ 식품접객업(카페,음식점등) 및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 종이컵 허용하되, 다회용기 사용 지원 강화 등으로 1회용품 줄이기 노력 지속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중	
69	투명 PET컵 식품 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안 포함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5px; padding: 2px;">진행중</span>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재질 병모양의 합성수지 포장재로 한정. 컵모양은 불가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재질 컵모양의 합성수지 포장재 추가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개정 검토(조건별 재생원료 시험분석 실시 및 식약처 협의 후 고시 개정 추진)	
70	재활용환경성 평가제도 개선방안 마련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5px; padding: 2px;">진행중</span>	재활용환경성평가 신청자가 평가 신청 시에 구체적인 확인 사항 및 구비 서류에 관한 정보 확인이 어려워, 신청과정에서 지속적인 자료 보완 요청을 하는 등 신청단계에서 장기간 소요	(평가신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에 '신청자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신설 (모델링평가) 매체접촉형 재활용 모델링 결과의 적합여부를 사전에 심의·보완할 수 있도록 '재활용 환경성 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재활용 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마련중	

01  
환경정책기본법  
02  
탄소중립기본법  
03  
순환경제  
04  
환경영향평가법  
05  
도시채광  
06  
환경영향평가  
참고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71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합리화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5px; padding: 2px;">진행중</span>	환경오염과 관계없는 단순·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1개월 처분	단순·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경고로 하향 조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중	
72	영농폐비닐 세척과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페토사) 재활용방법 개선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5px; padding: 2px;">진행중</span>	영농 멀칭비닐 재활용(세척)과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페토사)의 경우 재활용 기준에 따라 '수분함량 70% 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일반토사류를 부피기준으로 50% 이상 혼합하여 재활용'하도록 규정	단순 폐비닐 세척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물질이 제거된 공정오니의 경우 재활용대상 농지의 종류 및 토양의 특성에 따라 일반 토사류 등과 혼합없이 농경지의 성토재로 재활용 허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중	
73	폐기물 처리계획 신고·처리 전산화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5px; padding: 2px;">진행중</span>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기초 지자체 장에게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서면으로 제출	차세대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폐기물배출자 신고서 접수·처리 및 증명서 발급 전 과정이 가능토록 관계부처 협의 및 기능 구축
		폐기물 처리계획 신고·처리 업무 전산화 시스템 구축(~'26)	
74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보험 갱신기준일 명확화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5px; padding: 2px;">진행중</span>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보험의 사유 변동시, '변동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보험갱신이 필요하나 기산일 해석 혼란	보험금액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해 명확히 안내가 될 수 있도록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업무 처리지침을 개정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마련중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75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부정당제재 종료기업 감점 삭제  <span style="border: 1px solid green; border-radius: 5px; padding: 2px;">진행중</span>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부정당 제재* 기업에 대하여 제재종료 후에도 적격업체 평가시 감점 처리하여 이중처벌 문제 * 국가·지방계약법에 따라 부당·부정 행위자는 최대 2년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심사시 감점항목(0.06점~2점)을 삭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개정안 마련중	
76	페플라스틱 열분해시설 검사기관 규정 정비  <span style="border: 1px solid green; border-radius: 5px; padding: 2px;">진행중</span>	열분해시설 검사기관 규정 부재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2.11.29)에 따라 검사대상시설에 열분해시설 추가	페플라스틱 열분해시설을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의 장비,인력요건 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중(입법예고, ~'23.9.15.)	
77	일반·지정 폐기물 혼합 처분시설의 이중 행정처분 개선  <span style="border: 1px solid green; border-radius: 5px; padding: 2px;">진행중</span>	지정·일반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분하는 시설은 한가지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중복하여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	특례규정 신설 또는 가이드라인을 정비하여 중복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중(입법예고, ~'23.9.15.)	
78	커피찌꺼기 재활용 유형 추가  <span style="border: 1px solid green; border-radius: 5px; padding: 2px;">진행중</span>	커피찌꺼기 재활용 유형은 R-2-2, R-4-2 등 규정	커피찌꺼기 재활용 유형에 R-4-7추가 * R-4-7: 유·무기성 화합물, 산화물 등의 화학물질이나 안료나 도료, 페인트, 착색제 등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유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중(입법예고, ~'23.9.15.)	
79	폐식용유의 재활용 기준 추가  <span style="border: 1px solid green; border-radius: 5px; padding: 2px;">진행중</span>	폐식용유는 바이오디젤 또는 바이오디젤연료유로 재활용 가능	바이오중유로도 재활용 가능하도록 허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중(입법예고, ~'23.9.15.)	

01

환경정책기본법

02

탄소중립기본법

03

수질환경보전법

04

환경영향평가법

05

도시채감법

06

환경영향평가법

참고

과제별 담당 부서

	과제번호	담당 부서 (044-201-****)
과제 분류 (총 79개)	1, 8, 9, 10, 12, 13, 15, 20, 21, 22, 31, 33, 34, 35, 42, 45, 46, 47, 68	자원순환정책과 (7350)
	17, 28, 50, 65, 67	생활폐기물과 (7424)
	2, 3, 6, 7, 14, 16, 18, 25, 26, 27, 32, 36, 37, 38, 39, 41, 43, 44, 48, 51, 52, 53, 54, 55, 59, 68, 69, 70, 72, 78, 79	자원재활용과 (7367)
	4, 19, 30, 40, 56, 57, 58, 60, 61, 62, 66, 71, 73, 74, 75, 77	폐자원관리과 (7369)
	5, 11, 23, 24, 29, 49, 63, 64, 76	폐자원에너지과 (7401)

완료 과제 (26개)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1	환경영향평가 소통협의체 운영 및 활성화	생태우수지역, 심각한 환경영향이 우려되는 대규모 환경영향평가사업 등은 평가서 보완요구 등 장기간 소요에 따른 협의 기간 지연사례 발생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사업 중 심각한 환경영향 우려 대규모사업에 대해 협의 완료 전 협의기관, 전문가, 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소통협의체를 운영하여 환경영향 규모, 심각 정도, 저감방안 등을 중점 검토하여 신속한 협의 추진
		<p>사전 컨설팅 추진('23.2.기준, 육상풍력 48건, 해상풍력 77건)</p> <p>협의를-검토기관 간 조정회의 개최('22.7.19., 7.26.)</p> <p><span style="border: 1px solid blue; border-radius: 5px; padding: 2px;">완료</span></p>	
2	환경영향평가 스코핑 제도 활성화	평가준비서 작성 후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평가서 작성시 적정·타당항목 및 범위를 결정하여야 하나, 형식적인 절차로 운영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필수·구체적인 평가항목·범위 제시하고 누적데이터와 공동데이터를 활용한 현장 조사
		<p>안내서 제작 및 배포('22.3.) 및 스코핑 제도 활성화 대책 수립('22.10.)</p> <p><span style="border: 1px solid blue; border-radius: 5px; padding: 2px;">완료</span></p>	
3	환경영향평가 인접·유사지역 조사 자료 이용 활성화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자는 사업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영향을 확인하고 그 영향을 줄여야 하며, 사업 시행에 따른 영향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질이나 생태 현황을 조사하여야 함	사업자의 불편 최소를 위해 환경조사에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경우, 인접 지역 및 유사 지역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서를 작성하고 사전 컨설팅을 통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항목·범위 등을 제시하여 보완 기간을 단축
		<p>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정보 제공 기능 강화(지속)</p> <p>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역량강화 포럼 실시('22.11.)</p> <p><span style="border: 1px solid blue; border-radius: 5px; padding: 2px;">완료</span></p>	

01  
환경영향평가제도  
02  
탄소중립제도  
03  
수질환경기준  
04  
환경영향평가  
05  
토지취급  
06  
환경영향  
참고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4	재해예방사업 평가 제외	재해예방 목적의 항구적 기능 복구나 예방을 위한 정비사업은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추가 기간 소요되어 신속한 재해 대응에 한계	긴급한 재해예방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제외 적용 기준을 구체화하여 가이드라인 마련
		<a href="#">완료</a>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 개정('22.12.27.)	
5	환경영향평가 검토체계 개선	지난 5년간('16~'20년) 기관별 검토현황은 KEI 검토건수가 가장 많고, 그 외 과학원 등 검토 기관과 큰 차이가 있어 검토체계 효율화 필요	평가서등 검토체계 효율화 위한 기관 간 검토업무 조정(과학원 기능 강화 등)
		<a href="#">완료</a> 「환경영향평가 검토 및 처리 규정」 제정 완료('22.6.,과학원) 환경영향평가 검토체계 개선방안 시행중('23.1월~)	
6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실시 기준 명확화	환경영향평가 협의한 사업계획 변경 시 재협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변경협의(환경보전방안을 마련, 사업계획 반영) 실시	변경협의 시 직전 협의한 사업내용을 기준으로 산정, 변경협의 실시 기준 완화 및 명확화
		<a href="#">완료</a>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완료('22.12.20.)	
7	매년 반복되는 지역축제 환경영향평가 합리화	해당 지자체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매년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매년 반복 실시	매년 반복되는 지역축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사업기간(n년간)을 설정하여 협의내용을 통보
		<a href="#">완료</a> 개선방안 마련 및 지자체, 협의기관 공문 발송('22.12.)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8	산지개발 시 평균경사도 관련 규제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골프장 사업계획 부지면적 중 경사도 25도 이상(5m×5m) 지역의 면적이 40% 이상인 지역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시 중점 검토</li> <li>② 경사도 산정방법이 산지관리법(10m×10m)과 달라 행정절차 추진 시 애로</li> </ul>	<p>골프장 중점 평가 규정 중 경사도 측정방법을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한 방법과 동일하게 개정(5m×5m → 10m×10m)</p>
		<p>「골프장의 중점 환경영향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완료('23.6.19.)</p>	
9	소규모 평가 제외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숲속야영장 설치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기준을 전체 부지면적으로 선정하고 있으나, 유사 사업인 자연휴양림·산림욕장은 실질 개발 면적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불합리</li> <li>②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지하매설물 설치 사업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규제하면서,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 설치하는 지하매설물 설치사업 및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 사업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숲속야영장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기준을 전체 부지면적에서 실질 개발 면적으로 개선</li> <li>②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지하매설물 설치사업을 소규모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서 제외</li> </ul>
		<p>「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완료('23.3.31.)</p>	

01 환경영향평가법  
02 탄소중립법  
03 산림환경법  
04 환경영향평가법  
05 도시계획법  
06 환경영향평가법  
참고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10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 간소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후 환경영향평가(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사업에 대한 변경이 발생할 경우, 다시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후 환경영향평가 절차(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포함)를 거쳐야 함에 따라 사업자 부담 발생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후 환경영향평가(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사업에 대한 변경이 발생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서류를 환경영향평가(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포함)에 포함하여 협의함으로써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 생략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완료('23.3.31.)	
11	기존사업 확장시 재협의 기준 정비	평가 협의 후 사업 규모 증가, 일정 기간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환경영향 및 주변 여건 변화를 고려한 재협의 실시	재협의 대상 규모 판단 시, 동일한 면적 기준(최소 평가대상 규모 이상)으로 적용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완료('23.3.31.)	
12	환경영향평가 약식평가 확대	환경영향이 비교적 작은 사업에 대하여 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약식 절차로 평가 진행	재협의 대상사업(최소 평가대상 규모 200% 이하)도 환경영향이 적은 경우, 약식평가 절차로 진행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완료('23.3.31.)	
13	환경영향평가 조정요청 제도 도입	협의내용에 대한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과의 의견제시 보장 미흡	협의의견 통보 전에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의견 통보 후에는 조정여부 결정을 위한 중립적 조정위원회 신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완료('23.3.31.)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14	환경영향평가 총괄조정회의 활성화	협기관-검토키관 간 의견이 상충되는 경우 협의가 지연되거나 일방적인 검토·협의의견 통보시 사업자의 불만 증대 우려	협의-검토키관 간 의견충돌이 있거나, 주요 검토사항이 누락 또는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중점 검토사업 등에 대한 의견 조정 등으로 필요시 협기관-검토키관과 사업자 의견 청취 등 총괄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조율
		협업업무 처리 규정 개정 완료('22.12.31.)	
15	환경영향평가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EIASS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가 제한적이며, 모바일 웹서비스 이용시 편의성 저조	평가 원문 조회, 사업 정보 등 기존 데스크탑 웹(WEB) 기반으로 제공되던 EIASS 서비스를 모바일 웹(WEB)으로 확장하여 사용자 중심 서비스 제공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운영지침 개정('23.2.) 모바일서비스 시범운영('23.7월~), 대국민 서비스 제공('23.12월~)	
16	발전사업용 전기저장장치(ESS)의 환경영향평가 규제 완화	전기저장장치(ESS)는 오염물질 배출이 크지 않음에도 일반 발전소로 분류되어 10,000kW 이상 규모 설치시 환경영향평가 대상	전기저장장치(ESS)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를 태양력, 풍력, 연료전지 발전소와 같은 수준인 100,000kW로 완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완료('23.12.19.)	
17	하수도 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적용 합리화	동일한 내용의 하수도 사업임에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서 제외, 민자사업과 재정사업 추진방식 간 형평성 문제 발생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반영된 하수도사업일 경우 '민간투자법'에 근거한 민투사업일 지라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완료('23.12.19.)	

01  
02  
03  
04  
05  
06  
참고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18	전략평가 이의신청 절차 신설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ue; border-radius: 5px; padding: 2px;">완료</span>	전략평가 협의내용 반영 곤란 사유가 있을 경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절차 미흡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조정 시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거쳐 결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완료('23.12.19.)	
19	소규모 평가 면제 대상 확대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ue; border-radius: 5px; padding: 2px;">완료</span>	전략평가 협의를 거쳐 지정된 친수지구내에서 공원 등 일정규모 이상 사업 추진시 소규모 평가 대상	친수지구내 사업으로서 오염배출시설이 포함되지 않는 사업은 소규모 평가 대상에서 제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완료('23.12.19.)	
20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판단기준 합리화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ue; border-radius: 5px; padding: 2px;">완료</span>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등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추진 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며, 대상규모 미만으로 이미 개발한 사업도 연접하여 개발하는 경우 일정 조건*에 모두 해당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 既 승인면적과 추가 승인면적의 합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이상, 추가로 승인 등을 받으려는 면적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의 30퍼센트 이상	既 승인면적(여러번의 추가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을 초과하기 직전의 면적)과 추가 승인면적의 합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이상인 경우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 개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완료('23.12.19.)	
21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처리기한 명문화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ue; border-radius: 5px; padding: 2px;">완료</span>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협의기간이 10일 이내로 명문화되어 있으나, 변경협의 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일부 지자체에서는 4~6개월 이상 변경협의 지연 등의 문제가 다수 발생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처리기한 명문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완료('23.12.19.)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22	민간투자사업 (도로철도)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적용 합리화 (민간투자사업-정부재정사업간 차별해소)	동일한 내용의 도로철도 건설 계획이더라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재정사업과 달리 주민의견 재수렴, 변경협의, 재협의 규모 산정시 별도 규정(최소지역범위)를 적용받지 못하는 불합리 발생	민간투자사업(도로철도)도 재정사업과 동일하게 별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완료('23.12.19.)	
2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판단기준 합리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기준으로 협의된 규모의 30% 이상 사업규모 증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이 있으나, 단순 건축물 또는 건축부지의 이동 등 추가 훼손이 없는 경우도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으로 변경협의를 하도록 규정	토지이용계획이 30% 이상 변경되더라도 녹지면적이 감소하지 않으면 변경협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변경협의 기준 합리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완료('23.12.19.)	
24	초급기술자 자격기준 완화	평가대행업체에 '초급 평가기술자'로 취업하려면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의 평가 실무경력 또는 석사학위가 요구됨. 현재의 초급 평가기술자 자격 기준은 사회초년생의 취업 제한요소로 작용, 업체는 기술인력 부족으로 영업정지 처분 등으로 애로	환경영향평가업의 초급 평가기술자의 요건에서 경력기간 단축(학사+평가실무3년→학사학위), 경력분야 확대(평가실무→환경분야) 등 적용으로 대학생 등 청년층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기술자 진입장벽 완화 및 업체 기술인력 구인난 해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완료('23.12.19.)	

01 환경영향평가법  
02 탄소중립법  
03 수질환경기준  
04 환경영향평가법  
05 도시계획  
06 환경영향평가  
참고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25	긴급 재난대응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면제	「재난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는 평가 등이 제외되 나, 한정된 사업범위, 관련 행정 절차 등으로 대응에 한계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관 리를 위해 긴급한 수행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한 사업은 평가 제외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완료('24.2.20.)	
26	도시정비사업 등 조례평가 이행	현 제도는 소규모 평가와 지자체 조례평가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소규모 평가를 실시	지역별 다양한 특성·여건을 고 려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대상 중복 시 조례평가 이행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완료('24.2.20.)	

## 진행중 과제 (6개)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27	스크리닝 제도 단계적 도입  <span style="color: green; border: 1px solid green; border-radius: 5px; padding: 2px;">진행중</span>	계획·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기준으로 평가대상을 법령에 규정하고 있어 지역·사업내용의 특성 고려없이 동일한 평가 절차 진행	사업내용, 지역특성 등에 대한 환경영향을 추정, 평가대상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스크리닝 제도 단계적 도입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중(국회발의, '23.3.30.)	
28	재협의 기준 합리화  <span style="color: green; border: 1px solid green; border-radius: 5px; padding: 2px;">진행중</span>	평가 협의 후 사업 규모 증가, 일정 기간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환경영향 및 주변 여건 변화를 고려한 재협의 실시	평가협의 후 5년 이내에 승인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주변 여건 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재협의 여부 판단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중(국회발의, '23.3.30.)	
29	과도한 보완 요구 이의신청 절차 도입  <span style="color: green; border: 1px solid green; border-radius: 5px; padding: 2px;">진행중</span>	현실 여건에 맞지 않는 과도한 보완 요구 등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음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보완, 조정 요청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근거 신설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중(국회발의, '23.12.8.)	
30	산림복원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외  <span style="color: green; border: 1px solid green; border-radius: 5px; padding: 2px;">진행중</span>	산림의 조성·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한 산림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제외 * '산림복원사업'은 「산림자원법 시행령」제2조 제2항에서 산림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4 제외 대상 미포함	훼손된 산림 생태계의 기능회복 및 유사성격의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 가능할 것으로 판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중	

01

환경영향평가법

02

환경영향평가법

03

환경영향평가법

04

환경영향평가법

05

환경영향평가법

06

환경영향평가법

참고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31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행 실적 보고 개선	대행계약 이행 실적 보고는 대행계약의 발주자가 발급한 대행계약 이행증명서와 세금계산서 사본을 포함하여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보고해야 하나, 발주자 사정으로 30일 기간을 초과하여 이행증명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등을 발급한 사례가 다수 발생 * 실적보고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대상	계약 종료에 따른 대행계약 이행 실적 보고서 30일 이내 실적보고서 우선 제출하고, 추후에 첨부서류(대행계약 이행증명서, 세금계산서 사본)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합리화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ue; border-radius: 5px; padding: 2px;">진행중</span>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중	
32	설명회·공청회 생략 여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 규정 삭제	주민방해 등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설명회·공청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다수 발생	설명회·공청회 생략 여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규정 삭제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ue; border-radius: 5px; padding: 2px;">진행중</span>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중(법제처 심사중)	

과제별 담당 부서

	과제번호	담당 부서 (044-201-****)
과제 분류 (총 32개)	4, 6, 7, 8, 9, 10, 11, 12, 13,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국토환경정책과 (7271, 7280)
	1, 2, 3, 5, 14, 15	환경영향평가과 (7301, 7296)

완료 과제 [42개]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1	적산전력계 검침값 입력애로 해소 위한 규제 개선	아날로그 적산전력계 이용 시 현장검침 필요하나, 설비 간 거 리가 멀어 모든 설비를 매일 동 일한 시간에 검침(원격검침을 위해 디지털 타입으로 변경 하 는 경우 상당한 예산 필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소규모(4,5종) 대기배출 사업장]은 적산전력계 의무 설 치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적 산전력계 의무 부착이 최소화될 것으로 전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완료('22.5.31.)	
2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급 간소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 인 증 등급은 4단계로 구분하고 있 으나, 최상위 등급(1등급) 인증 이 90%를 넘어 2등급 이하 등 급 세분화 실효성 부재	1등급은 유지하되, 2·3등급 및 등급 외는 하나로 통합하여 2단 계로 구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22.7.31.)	
3	중소중견기업 굴뚝자동측정 기기 설치부담 완화	대기3종 이하 배출구(연 20톤 미만 배출)는 '22.12.31일까지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설치 가 필요하나 시설개선 필요 등 의 사유로 기한 내 부착이 어려 운 시설 다수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현행 조 사*를 거쳐 일정기간 TMS 부착 을 유예조치  * '22년 말까지 부착대상 배출구 (352개) 중 281개 미부착
		미부착 대상시설 유예 신청 확인 후 부착 유예 통보('22.8.31.)	
4	대기배출 허용기준 표준산소농도 적용 예외 조건 정비	대기배출사업장의 오염물질 배 출농도 측정시 공정 특성상 외 부공기가 유입되는 시설은 예외 인정, 관련 규정의 적용 업종 확 대 필요	공정 특성상 외부공기가 유입되 는 대기배출시설의 표준산소농도 적용에 관한 합리적 규정 마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관보게재('22.12.28.)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5	전기차 구매시 국비보조금 별도수령 허용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국비+지방비)을 지급 중이나, 해당 법인의 지점이 없는 지자체에서 전기차 구매 시 국비보조금 별도수령 불가	법인이 전기차 구매 시 국비보조금 별도 수령 허용 마련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 완료('23.2.13.)	
6	자동차 온실가스 중복규제 해소	자동차 환경성 관리 차원에서 자동차 제작사 대상 저공해차(무공해차) 보급목표제* 및 소형차 온실가스·연비 관리제도** 시행 중이며 미달성 제작사에 각각 기여금과 과징금을 중복 부과  * 전체 차량 판매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저공해차 및 무공해차로 판매하도록 의무 부과('22년 저공해차 20%, 무공해차 8~12%)  ** 연간 판매한 차량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여 온실가스 저배출 차량의 생산·판매 유도	보급목표제 기여금과 온실가스·연비 과징금을 중복 부과받는 자동차판매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기여금 감액범위를 설정하고 세부감액수준을 고시로 정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완료('22.12.27.)	
7	보조금 성능평가 항목 현행화 및 절차 간소화 (보조금 성능평가 항목 등 개선)	보조금 지원대상 적합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보급평가 절차 항목 간소화 요구	평가항목·기준에 대해 간소화 등을 검토하여 고시 개정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 완료('23.8.10.)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8	플래어스택 배출 이중 규제 합리화	플래어스택은 배출가스의 불안 전연소 여부를 광학가스탐지카메라를 이용한 모니터링으로 확인해야 하며, 2024년부터는 연소구간 발열량 기준도 준수하여야 하는 이중 규제 적용	플래어스택을 유해대기물질 배출여부에 따라 배출시 연소구간 발열량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비배출시 광학가스탐지카메라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제도 개선
		<p><a href="#">완료</a>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23.8.16.)</p>	
9	자동차연료 첨가제 재검사 시 배출가스 검사 생략	자동차연료 첨가제-촉매제 검사 유효기간(3년) 종료 후에도 계속하여 제조하려는 자는 재검사를 받아야 하나, 검사항목 중 배출가스 검사의 소요시간 및 비용이 과도	자동차연료 첨가제 재검사 시 제조기준, 유해물질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배출가스 검사항목 생략
		<p><a href="#">완료</a>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22.12.28.)</p>	
10	벤조a피렌의 오염시험 결과표시에 대한 기준 마련	대기오염물질 중 벤조a피렌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상 결과표시에 대한 기준이 없어 오염물질이 정량한계 미만으로 검출되더라도 “불검출”이 아닌 미량의 농도값을 표시 → 인·허가 과정 등에서 오해 소지	벤조a피렌 등 공정시험법상 결과의 표시 기준이 없는 항목에 대해 결과의 표시기준을 추가하여 공정시험기준을 개정
		<p><a href="#">완료</a> 「대기오염공정 시험기준」 개정 완료('23.4.4.)</p>	
11	친환경차 보급 중장기 목표 수립	산업계의 무공해차 보급을 위한 사전준비 기간(최소 2년)을 고려하여 예측 가능한 중장기 보급목표 제시 필요	산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저무공해차 보급목표 수립
		<p><a href="#">완료</a> 보급목표제 차기('23~'25년) 목표 확정('22.12.30.)</p>	

01  
환경정책  
02  
탄소중립  
03  
순환경제  
04  
환경오염  
05  
국민체감  
06  
환경애원  
참고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12	전기자동차 인증기준 및 제출서류 명확화  <a href="#">완료</a>	자동차 제작자는 자동차의 배출 가스 및 소음에 대한 인증을 받 아야 하나 전기차의 경우 인증 기준 및 관련 제출서류가 불명 확하여, 인증에 대한 불확실성 이 큼	전기차 인증기준 및 관련 제출 서류 목록 명확화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완료('23.7.4.)	
13	전기동력 건설기계 보조금 확대  <a href="#">완료</a>	전기굴착기 신규 구매 시 구매 보조금이 지속 지원 될 수 있도 록 검토 요청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저 (무)공해 건설기계 정의 신설 등 지속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 등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완료('22.12.27.)	
14	전기이륜차 기타형 형태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급  <a href="#">완료</a>	전기이륜차 기타형 차량 종류에 따른 소비자 금액은 달라지지만, 보조금은 최대 300만원으로 규 정되어 있어, 전기이륜차 형태에 따른 제조원가 차이를 반영하지 못함	전기이륜차 규모, 성능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조금 체계 를 개편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 발표('23.3.28.)	
15	LNG 사용시설의 대기 자가측정 제도 개선  <a href="#">완료</a>	LNG 사용 시설의 경우 「대기환 경보전법」에 따라 황산화물에 대 해 자가측정을 실시하여 관리하 고 있는데, 도시가스사업 품질검 사에서도 황함유량 분석하여 중 복 관리	‘황산화물에 대한 자가측정을 연 료의 황함유분석표로 같음’할 수 있는 단서조항에 LNG(가스) 포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22.12.28.)	
16	전문정비 사업자 신규 전문기술인력 직무교육 기한 연장 <a href="#">완료</a>	위탁 교육기관의(권역별 선정된 대학)의 교육 일정이 4~11월에 편중되어 있어 기한 내 교육 미 이수자 발생	신규 전문기술인력의 직무교육 기한을 현행 4개월 이내에서 6 개월 이내로 연장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22.12.28.)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17	비산배출시설 시설기준 적용 예외 조건 명확화  <span style="float: right;">(완료)</span>	비산배출시설이 고장, 정비 등으로 시설을 가동하지 못할 경우에도 시설관리기준 준수 의무	고장, 정비 등으로 시설을 가동하지 못할 경우에 자체개선계획서 제출을 통해 시설기준 적용 유예하도록 규정 보완
		「비산배출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세부이행지침」 개정 완료('23.3.21.)	
18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개선  <span style="float: right;">(완료)</sp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유사·파생모델 기준 없음</li> <li>② 처리기간의 정확한 표시 필요</li> <li>③ 인증변경에 대한 기준 불명확</li> <li>④ 영문인증서에 대한 수요</li> <li>⑤ 상위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유사·파생모델 범위 신설</li> <li>② 처리기간의 정확한 표시를 위한 성능인증 신청서 개정</li> <li>③ 인증변경 기준의 명확한 조항을 위한 개정</li> <li>④ 영문인증서 양식 신설,</li> <li>⑤ 성능검사, 점검주기 등의 사후관리 조항 하위법령 마련</li> </ul>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23.6.8.)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완료('23.6.29.)	
19	전기 이륜차 배터리 교환 인프라 활성화  <span style="float: right;">(완료)</span>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 보급 제약으로 관련 배터리 교환 인프라 투자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방안 마련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 발표('23.3.28.)	
20	특정용도 경유차 사용제한 시행 시기 조정  <span style="float: right;">(완료)</span>	택배차·어린이통학차량 경유차 사용제한 「대기관리권역법」 시행('23.4.3)에 앞서 대체차량(전기·LPG 등) 출시가 미흡	관련 기관과의 8차례 간담회로 택배차·어린이통학차량 사용제한 시기를 대체차량 출시 시기로 조정('24.1.1)  * LPG 택배차 '23.12~ , 전기 어린이통학차 '23. 하반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 완료('23.3.28.)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21	해상해안 국립공원 한시적 허용시설 확대	해상해안 국립공원 4개소의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탐방객 편의 시설 등 일부시설은 한시적으로 허용(연간 4개월)하고 있으나, 야영장은 제외되어 있어 최근 캠핑 욕구 증가로 늘어나는 야영장 수요에 대한 대응 필요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한시적 허용시설에 야영장을 추가하여 해안·섬지역에서 탐방객의 편의 제공 및 생활밀착형 국민 불편 해소 ※ 적극행정으로 조기시행 (22.6.17 공문시행)
	<a href="#">완료</a>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 완료(22.11.1.)	
22	하천구역내 반려동물 운동·휴식시설 허용	가축의 방목·사육행위는 하천점용허가 금지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하천구역 내 반려동물 운동·휴식시설 설치에 제한	「동물보호법」상 등록대상동물(개)을 위한 운동·휴식시설 설치 는 하천점용허가 금지의 예외로서 허용
	<a href="#">완료</a>	「하천법」 개정 완료(23.1.3.)	
23	자연경관심의 대상 합리화	경관적 가치가 높은 곳의 경관이 훼손되거나 시계(視界)가 차단되지 않도록, 해당 개발사업 등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 심의	하천 유량, 이·치수 등 하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것으로, 보호지역 주변 외 지역에서의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하천정비사업 및 소하천정비사업 제외 확대
	<a href="#">완료</a>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완료(23.3.14.)	
24	주유소에 회수-액화 통합시설 설치 허용	① 주유소 발생 유증기가 대기중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회수시설 의무화 → 회수된 유증기는 정유사 등으로 가져가 액화 후 재활용 ② 신기술로 회수-액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시설을 개발하였으나, 현재 회수-액화 통합시설에 대한 기준이 없어 사업화에 애로	회수-액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신기술 융합설비의 주유소 내 설치 허용
	<a href="#">완료</a>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형식인증 검사 신청 안내(22.8.23.)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25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내 옥상주차장 설치 허용  <a href="#">완료</a>	부산 에코델타시티내 기업(리노 공업)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옥상주차장을 설치하려 하나, 해당 지역은 철새생태습지 친수 구역으로 지구단위 계획에 의거 옥상주차장 설치 불허	옥상주차장 설치 허용
		「부산 에코델타시티 실시계획 변경 고시」 완료('23.3.30.)	
26	유어장(遊漁場) 설치절차 간소화로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결  <a href="#">완료</a>	유어장은 공원시설로 분류되어 공원계획 변경, 공원사업 시행 허가 등 까다로운 절차 이행에 따른 민원발생	공원시설에서 제외, 행위허가 사항(10일)으로 변경하여 신속 한 민원처리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 완료('22.11.1.)	
27	어촌·어항 시설의 보수·개량 사업의 합리적 개선  <a href="#">완료</a>	제방·방파제 등 어촌어항시설의 빈번한 보수·개량이 있으나, 행 위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지자 체·어촌주민의 공원구역해제 등 민원발생	시설 및 면적증설이 없는 경미한 보수·개량은 신고사항으로 전환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 완료('22.11.1.)	
28	공원 주변 기반시설 설치대상 확대  <a href="#">완료</a>	상수도, 하수도, 배수로 등 공익 상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를 허 용하나, 공원구역 주민을 위한 시설로 제한	공원구역 경계 인근주민도 기반 시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기반시설 설치범위 확 대 허용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 완료('22.11.1.)	
29	「자연공원법」 신고제도 합리화  <a href="#">완료</a>	공원관리청에 신고할 수 있는 행위가 규정되어 있으나, 처리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신고는 수 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 고, 신고민원에 대한 명확한 처 리절차 규정
		「자연공원법」 개정 완료('22.12.13.)	

01 환경영향평가제도  
02 탄소중립  
03 수질환경  
04 환경영향평가  
05 국민체감  
06 환경영향  
참고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30	「자연공원법」 허가 간주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원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려면 공원관리청의 징수허가를 받도록 규정	공원관리청은 공원시설 사용료 징수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한내에 허가여부 또는 연장여부를 통지토록 하고, 기한내 미허가(미연장) 시 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
		「자연공원법」 개정 완료('22.12.13.)	
31	실험동물 「야생생물법」 수입허가 대상 제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농림부 허가 및 「야생생물법」에 따른 기초자치단체장 허가절차 추가이행 의무 발생	적극행정 운영을 통해 법령 개정 전 「야생생물법」에 따른 중복 허가절차 제외(적극행정 운영 알림 공문 발송, '22.11.4.)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23.6.9.)	
32	자동차 평균에너지 소비효율 실적확인서 발급	자동차 제작자는 판매하는 차량에 부여된 평균온실가스·에너지 소비효율 기준을 달성해야 하나 자동차 제작자의 평균온실가스·에너지소비효율 달성 실적(초과 달성 또는 미달성)에 대한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아 향후 사업 계획 수립에 애로	자동차 제작자에 평균온실가스·에너지소비효율 실적확인서 발급
		「자동차 평균에너지 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완료('24.1.4.)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33	가정용보일러 인증 및 검사 개선	① 인증심사시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 ② 인증신청시 제출서류(보일러의 구조·성능·내구성 등에 관한 설명서 등) 과다 ③ 사후관리 요건을 인증기관(환경산업기술원) 내규로 규정 운영	① 인증 심의위원회 삭제에 따른 소요기간 단축 ② 인증신청시 서류제출 간소화 ③ 사후관리 요건 보완 필요(상향 입법 검토)
		온라인 인증시스템 도입으로 제출서류 간소화 완료('23.2월)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 및 검사에 관한 고시」 개정 완료('23.12.5.)	
34	친환경자동차 보조금 지급 절차 간소화	친환경자동차 보조금 지급 절차는 신청서 접수(지원 자격 확인 목적), 지원 가능 확인 요청(대상자 선정 목적), 보조금 지급 신청 등 총 3차례로 구분 → 복잡한 절차로 인해 혼선 야기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및 응답속도 향상 등을 위한 프로그램 개선, 구매보조금 신청에 따른 지원 상담을 위해 안내센터 운영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시스템 개선 완료('23.9월)	
35	성과관리 효율화를 통한 연구몰입 환경 조성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협약기간 중 성과활용보고서를 매 반기별로 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	협약기간 중 성과활용보고서 제출규정을 삭제하고 협약종료 후 보고서를 작성·관리토록 하여 연구자의 편의성 제고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개정 완료('23.12.20.)	
36	야생생물 피해 보상기준 보완	야생동물로 인한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등의 피해액에 대한 피해보상 기준근거 부재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액과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등의 피해액에 대한 피해보상 기준근거 마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완료('23.12.12.)	

01  
02  
03  
04  
05  
06  
참고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37	폐차 환경개선 부담금 납부 불편 해소	<p>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후 3~6개월이 지난 후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로 납부 불편 및 민원 다수 발생</p> <p>* 후납제 방식으로 매년 3월(전년 하반기 분), 9월(해당년도 상반기 분)에 정기 부과</p>	<p>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폐차 즉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로 납부편의 개선</p>
		<p>「조기 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 완료('23.9.8.)</p>	
38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대행 업체 선정방식 투명성 제고	<p>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대행업자 선정위원회의 선정위원 폭이 광범위하며, 공익성 미검증 등으로 투명성 제고필요</p>	<p>위원회 명단관리 및 추천방식 도입, 위원 기피 및 제척 관련 고시 개정, 평가점수 공개 등 조치방안 마련</p>
		<p>「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고시」 개정 완료('23.10.6.)</p>	
39	수소차, 전기차 충전요금 확인 편의성 개선	<p>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시스템에 수소차, 전기차 충전요금의 날짜별 조회 기능 필요</p>	<p>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시스템에 수소차, 전기차 충전요금의 날짜별 조회 기능 추가(전국 평균 가격)</p>
		<p>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시스템 개선 완료('24.1월)</p>	
40	전기차 충전기 관리 강화	<p>전기차 충전기 고장 등에 따른 이용자 불편 야기</p>	<p>전기차충전기 보조금 사업 수행 기관 선정평가시 충전기 고장에 대한 유지관리 강화 방안(유지관리 기간단축, 충전기 성능개선 등) 마련</p>
		<p>「전기차 충전시설 보조사업 보조금 및 설치·운영지침」 개정 완료('24.1월)</p>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41	노후아파트 충전기 설치를 위한 전력 인프라 확충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ue; border-radius: 5px; padding: 2px;">완료</span>	노후아파트 등 전력수급이 어려운 장소에 고정형 충전기 설치 어려움	고정형 외 이동식 충전시설 보급방안 마련
		이동 가능한 대용량 충전시설 보급 예산 반영('24.1월)	
42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 보조금 지원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ue; border-radius: 5px; padding: 2px;">완료</span>	배달용 전기이륜차는 충전 케이블을 이용하여 장시간 충전함에 따라 생계활동에 제한	전기이륜차 배터리만 교환하여 충전이 가능한 충전시설을 보급하여 배달용 전기이륜차 충전시간 문제 해소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보조금 예산 반영('24.1월)	

01

환경정책  
기획조정

02

탄소중립  
기획조정

03

수소경제  
기획조정

04

한국에너지  
연구원

05

국민체감

06

환경정책  
비서관

참고

## 진행중 과제 (22개)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43	댐건설사업 수익자 부담금 가산금 산정방식 합리화  <span style="color: #00AEEF; font-size: small;">[진행중]</span>	댐건설사업에 따른 "수익자부담금"의 가산금 부과는 고정 정액 방식으로 규정되어 부주의로 하 루만 연체해도 가산금 총액을 부과함으로써 단기·장기 연체자 간 형평성 문제 발생  「댐건설법」 개정중(국회발의, '22.9.2.)	가산금 산정방식을 1일 단위로 계산하여 부과
44	댐 건설사업 시행자의 토지 출입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완화  <span style="color: #00AEEF; font-size: small;">[진행중]</span>	행정청이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에 대해 토지 출입·사용 등 위반 행위시 부과하는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 규정은 타 법령상의 동일(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과태료/벌금형)과 비교시 과도  「댐건설법」 개정중(국회발의, '22.9.2.)	댐 건설사업시 토지출입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행정 형벌(징역 또는 벌금형)이 아닌 행정질서벌(과태료)로 완화
45	반도체 초순수 생산공정 국산화  <span style="color: #00AEEF; font-size: small;">[진행중]</span>	반도체 제조 공정의 필수재인 초순수 생산을 해외에 의존, 안정적 반도체 생산과 무역분쟁 등 리스크 대응을 위해 생산기술의 국산화 시급  실증플랜트 구축('22.11.30) 및 운전 가동('22.12월~) 실증플랜트 생산 초순수의 수요처 공급 개시('23.5월~) 실증플랜트 추가 구축(1,200톤) 및 수질·성능검증 완료 예정(~'25년)	초순수 생산기술 국산화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25)
46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 시험 절차·조건 일원화  <span style="color: #00AEEF; font-size: small;">[진행중]</span>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및 전기자동차의 충전조건 등이 고 시별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혼란 유발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개정중(행정예고, '23.12.28.)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및 전기자동차의 충전조건 등 일원화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47	자동차 증발가스 측정 계산식의 국제기준 조화  <span style="border: 1px solid green; border-radius: 5px; padding: 2px;">진행중</span>	휘발유 자동차의 증발가스 측정 방법(고정체적, 가변체적) 중 고정체적 산출식만 인정하고 있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간소화된 측정방법(가변체적)이 허용되지 않음	국제기준과 조화되도록 증발가스 측정방법 중 가변체적에 대한 간소화된 측정방법도 허용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개정중(행정예고, '23.12.28.)	
48	지질공원의 인증 폐지  <span style="border: 1px solid green; border-radius: 5px; padding: 2px;">진행중</span>	제품이나 서비스가 아닌 지질공원을 인증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고 불합리한 면이 있음	인증이 아닌 지질공원 선정을 위한 다른 방식의 법정제도를 유지하면서 지자체가 지역사회 특성에 맞게 제도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검토
		「자연공원법」 개정안 마련중	
49	건축물 오수발생량 산정방법 개선  <span style="border: 1px solid green; border-radius: 5px; padding: 2px;">진행중</span>	건축물 기계실의 경우 통행 및 상주 인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도별 전용면적 비율로 배분하여 오수발생량 산정	건축물의 오수발생량 산정을 위한 면적에서 기계실을 제외하여 국민 부담 경감 효과 기대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개정중(관련기관 협의 등)	

01

환경정책기본법

02

탄소중립기본법

03

수질환경보전법

04

환경영향평가법

05

국민체육진흥법

06

환경영향평가법

참고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50	야간 사업주 부재시 악취배출 허용기준 확인 방안	<p>악취배출시설(축사 등)이 가동 중이나 야간에 사업주·관계자의 부재 또는 고의 통화 거부에 따라 시료채취가 어려워 단속 불가</p> <p>※ 「악취방지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관계 공무원이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악취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11조 제6항에 사업장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시료를 채취해야 한다고 규정</p>	<p>배출사업장의 지도·점검은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라 사업장관계인의 입회하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정 제11조제6항에 따라 다수인 민원 또는 2회 이상 반복적으로 민원이 발생하여 점검하는 경우 관계인 입회 없이 시료채취 가능</li> <li>- 다만, 기존 조문이 시료 채취를 위해서 사업자의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어 관련규정 명확화를 위해 개정 추진</li> </ul>
		<p>「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개정안 마련중</p>	
51	상수원보호구역 행위제한 완화 건의	<p>「수도법」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기준)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입목, 재배 및 벌채 행위 제한</p>	<p>상수원보호구역 내 농지에서의 입목·벌채 등의 행위제한을 완화 추진</p>
		<p>「수도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중</p>	
52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 생태계보전 부담금 감면	<p>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은 훼손된 하천 및 수변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자연환경복원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생태계부담금 감면 비대상</p>	<p>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자연환경복원사업 후보 목록 작성전까지 자연환경복원사업으로 인정하여 부담금 전액 감면</p>
		<p>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기관(시도)에 생태계보전부담금 감면토록 조치</p>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53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감면시 일반회계 활용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5px; padding: 2px;">진행중</span>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감면을 위해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활용토록 규정하고있어, 지자체가 일반회계를 활용하여 수질검사 수수료 감면 불가	수질검사 수수료 감면지원을 위해 일반회계 사용 가능하도록 허용
		「지하수법」 개정안 마련중	
54	상수도관망 관리대행업의 기술인력기준 완화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5px; padding: 2px;">진행중</span>	상수도관망관리 대행업에 3개 분야로 분리되어 있어 각각의 업무를 수행하려면 각각의 인력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시 분야별 기술인력에 대하여 중복 허용
		「수도법 시행령」 개정중(입법예고, '24.1.19.~'24.2.29.)	
55	친환경차 보조금 평가절차 간소화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5px; padding: 2px;">진행중</span>	전기차 성능 평가 시 불필요한 항목, 기준을 개정하고 절차가 간소화되도록 평가항목 및 기준 등을 개선 필요	자동차 운영환경 항목 평가기준 개선(16일방치→7일방치)으로 시험기간 단축('23.8월), 불필요한 항목 삭제 및 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
		친환경차 보조금 평가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중	
56	소음 측정 방법 합리화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5px; padding: 2px;">진행중</span>	동일건물 내에서 소음민원 발생 시 소음원이 특정 사업장(노래 연습장업 등)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 지점(건물내부)에서 소음 측정 불가	특정사업장이 아닌 경우라도 동일건물 내에서 소음민원 발생시 소음피해 지점(건물내부)에서 측정 가능토록 개선
		「소음진동공정 시험기준 고시」 개정안 마련중	
57	배출시설 분류체계 개선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5px; padding: 2px;">진행중</span>	신산업(탄소포집, 열분해시설 등), 생활형배출시설(보일러등) 등에 대해 배출시설 분류체계 부재	배출특성 및 저감기술을 고려해 합리적 기준적용을 위한 시설분류 추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중	

01  
환경정책기본법  
02  
탄소중립기본법  
03  
수질환경기준  
04  
환경영향평가법  
05  
국민체감  
06  
환경장애평가  
참고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58	전기차 배터리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급 방안 마련 <span style="color: green;">▶</span> 진행중	사용 후 배터리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배터리 재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침 개편 필요	배터리 자원순환성 및 에너지밀도를 고려하여 보조금 차등지원 방안 마련
		「전기차 보급사업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마련중	
59	노후 건설기계의 무공해 전환을 위한 지원사업 개편·확대 <span style="color: green;">▶</span> 진행중	배터리식 3.5톤 이하 전기굴착기 보급만 지원	보급지원 대상확대 및 무공해 건설현장, 전동화 개조 등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보급지원 대상확대(배터리식굴착기→케이블식굴착기·지게차/전기→수소/ 3.5톤이하→20톤 이상), 무공해 건설현장 시범구축, 전동화 개조 지원사업 추진
		보조금 지침 개정안 마련중	
60	특정용도 경유차사용제한 관련 대체차량 전환 조건부 경유차 일시적사용 허용추진 <span style="color: green;">▶</span> 진행중	'24.1.1.부터 신규 택배용 화물차, 어린이 통학버스의 경유차 사용 제한 시행	전기·LPG 차량구매 보조금 사업 공고(2~3월) 및 출고 대기기간 고려하여 대체차량(전기·LPG차 등) 전환을 조건으로 (중고)경유차의 일시적 사용 허용 추진
		안내공문 발송	
61	건설기계 범위에 전동식 지게차 추가 <span style="color: green;">▶</span> 진행중	건설기계 범위에 전동식 지게차 부재	물류 제조현장에서 활용되는 지게차로부터의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기 위해 수소·전기 지게차 등 전동식 지게차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중(입법예고, '23.10.26.~'23.12.5.)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62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미준수 자동차 제작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징수 개선 <span style="color: green;">진행중</span>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대한 실적 확인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끝나는 연도의 다음 연도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통지 시기와 관계없이 9월30일 납부하도록 규정	실적확인 필요기간을 고려하여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2년 이내로 수정하고, 납부기한도 통지를 받은후 60일 이내로 수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중(입법예고, '23.10.26.~'23.12.6.)	
63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미충족 상황에 정도보증/정도관리(QA/QC) 추가 <span style="color: green;">진행중</span>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미충족 상황에 모니터링 장치가 배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경우만 규정	교정을 위해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정도보증/정도관리(QA/QC)하는 경우 추가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세부이행지침 개정안 마련중	
64	수질오염 총량제 다음단계 개발부하량 할당 조건 개선 <span style="color: green;">진행중</span>	수질오염총량제 다음단계 기본계획(현단계 기본계획 기간 종료후)에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현단계 지역개발부하량의 60% 범위내 할당가능(해당 개발량 만큼의 삭감계획 마련)	유량, 수질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지역개발부하량 할당가능(60%범위 완화)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개정안 검토중	

과제별 담당 부서

	과제번호	담당 부서 (044-201-****)
과제 분류 (총 64개)	37	녹색전환정책과 (6689)
	35	녹색기술개발과 (6664)

	과제번호	담당 부서 (044-201-****)
과제 분류 (총 64개)	2, 18	대기환경정책과 (6877)
	5, 6, 7, 11, 12, 14, 19, 34, 39, 40, 41, 42, 55, 58	대기미래전략과 (6890)
	1, 3, 4, 8, 10, 15, 17, 24, 33, 50, 57, 63	대기관리과 (6910)
	9, 13, 16, 20, 32, 46, 47, 59, 60, 61, 62	교통환경과 (6922)
	56	생활환경과 (6796)
	43, 44	물관리총괄과 (7653)
	25	수자원개발과 (7658)
	22	하천계획과 (7717)
	64	물환경정책과 (7011)
	38, 49	생활하수과 (7032, 7024)
	51	물이용정책과 (7151)
	54	수도기획과 (7112)
	53	토양지하수과 (7186)
	45	물산업협력과 (7638)
	23, 52	자연생태정책과 (7232)
	31, 36	생물다양성과 (7249)
21, 26, 27, 28, 29, 30, 48	자연공원과 (7318)	

완료 과제 [49개]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1	지하수개발 이용시설 원상 복구계획서 제출 간소화	지하수 관정에 대해 전문지식이 없는 지하수 개발·이용자(민원 인)는 시공업체에 원상복구계획 서 작성을 의뢰할 수밖에 없어 비용부담 발생	원상복구계획서에 표준화된 원 상복구 유형을 선택하여 내용을 간소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서 식 개선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ue; border-radius: 5px; padding: 2px;">완료</span>	「지하수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22.5.30.)	
2	개인하수처리 시설 재질검사 항목 간소화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자는 PE·FRP 재질의 제품(시설)에 대하여 재질 검사를 받도록 규 정하고 있으나, 변별력이 낮고, 시험방법 재현 곤란, 효용성이 낮은 검사항목으로 인해 검사 지연 및 검사수수료 부담 가중  *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오수를 배 출하는 건물·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 리시설 또는 정화조)을 설치해야 함(「하수도법」 제34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강도, 수밀 성 등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항 목 중심으로 간소화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ue; border-radius: 5px; padding: 2px;">완료</span>	「개인하수 처리시설의 재질 검사 기관 및 성능·재질 검사의 수수료에 관한 규정 고시」개정 완료('22.11.28.)	
3	수질오염물질 저감계수 현실화	통합허가 허가배출기준 설정시 공공하·폐수처리시설로 유입되 는 수질오염물질의 저감효과를 반영하고 있으나, 해외 저감계 수(영국 모델)를 적용하고 있어 국내 현실 반영 부족	국내에 적합한* 수질오염물질 저감계수 마련 및 대상 물질 확 대(23개→36개)로 저감효과 추 가 인정  * 국내 공공하·폐수처리시설 현장 실측조사 결과 반영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ue; border-radius: 5px; padding: 2px;">완료</span>	「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및 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 완료('22.12.7.)	

01

환경영향평가제도

02

탄소중립제도

03

수질환경오염방지

04

환경영향평가

05

국민채널

06

환경영향평가

참고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4	통합관리 사업장 환경관리 수준 평가 절차 개선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ue; border-radius: 5px; padding: 2px;">완료</span>	통합관리사업장의 변경허가 때 마다 환경관리 수준평가* 의무 로 기업에 부담 * 사업장의 오염물질 저감수준 등 4개 평가분야에 따른 사업장 환 경관리 수준	사업장에서 희망하는 경우에만 환경관리 수준 평가를 받도록 개선
		「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및 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 완료('22.12.7.)	
5	통합관리 사업장 정기검사 주기 완화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ue; border-radius: 5px; padding: 2px;">완료</span>	사업장 환경관리 수준에 따라 정 기검사 주기를 정할 수 있으나, 관련 기준이 없어 적용 곤란	환경관리수준 평가기준을 정비, 우수사업장은 점검주기 완화(최 대 3년) 및 기업 자율환경관리 유도
		「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평가방법에 관한 고시」 개정 완료('22.10.7.) 「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관리를 위한 업무처리 지침」 개정 완료('22.11.23.)	
6	거점소독시설 폐수처리 방식 합리화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ue; border-radius: 5px; padding: 2px;">완료</span>	기타수질오염원인 거점소독시 설의 소독수 처리방법이 위탁처 리로 한정되어 처리 비용과다로 재정적 부담 발생 * 최근 ASF, AI 등 대응을 위한 폐수량 증가로 연간약 200백만원 소요	기타수질오염원에 대한 합리적 인 규제개선을 통해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 - 위탁처리 외 수질오염방지시 설을 설치하여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할 수 있도록 처 리방법 다양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23.4.4.)	
7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비산 측정 방법 개선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ue; border-radius: 5px; padding: 2px;">완료</span>	석면해체작업은 실내작업, 실외 작업 등에 따라 석면 비산 가능 성이 상이하나, 현행 제도는 측 정 대상을 개별 사업장과 재개 발·재건축·재정비축진 사업장 으로만 구분	석면 비산측정 대상 사업장을 실 내-실외작업으로 분류하고 이에 맞춰 측정지점 및 방법 규정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비산 관리를 위한 조사방법 고 시」 개정 완료('22.11.7.)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8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span style="float: right;">[완료]</span>	유기성 폐자원(음식물, 가축분뇨, 하수찌꺼기)은 에너지 잠재력이 크나 관련 제도 미비로 바이오가스 생산·활용 확대에 한계	공공·민간의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제 도입으로 관련 산업 육성, 기술·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바이오가스 생산실적 거래 시장 조성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정 완료('22.12.30.)	
9	어린이용품 제조기업의 자발적 안전 관리 활성화를 위한 처벌규정  <span style="float: right;">[완료]</span>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 안전기준을 초과한 어린이용품을 제조·판매한 기업은 「환경보건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형벌에 처해짐	어린이용품 제조 기업 등이 자발적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 안전기준을 초과 사실을 발견하여 해당 용품을 자발적으로 회수조치하게 될 경우, 형벌 감면
		「환경보건법」 개정 완료('23.8.16.)	
10	정수시설운영 관리자 취득 방식 다양화  <span style="float: right;">[완료]</span>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제도는 1~3급 모두 시험검정형으로 운영함에 따라 실무경험은 많으나 시험 준비가 어려운 현장 근로자의 자격 획득 애로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제도 중 3급(실무자급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과정이수형 자격방식을 도입
		「수도법」 개정 완료(공포 '23.8.16.)	
11	상생협력 현장실증 프로그램 운영  <span style="float: right;">[완료]</span>	녹색혁신 기술·제품 수요처는 규제 우려*로 실증 요구, 공급 기업은 실증기회*가 없어 혁신 기술·제품 사장(死藏) 우려  * 실증을 위한 혁신 기술·제품 적용으로 배출기준 초과 등 책임문제 우려로 실증 거부	녹색혁신 기술·제품 수요와 공급 매칭·지원으로 수요기업에는 경쟁력 제고, 공급기업에는 실증실적 확보 기회 제공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관리지침」 개정 완료('22.12월)	

01 환경정책기본법  
02 탄소중립기본법  
03 수질환경보전법  
04 환경영향평가법  
05 국민체감  
06 현장애로  
참고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12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대상 확대	창업 이후 3~7년에 자금·경험 부족으로 사업화에 실패하는 확률이 높으나 창업 3년 이후의 재창업자이거나 창업 실패한 전력자는 환경창업을 지원하는 '에코스타트업사업'에 대한 지원을 제한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재창업자의 신청요건 완화(3년→7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지침」 개정 완료('22.12.27.)	
13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서류심사 동시 진행	신기술 인증 완료 후 기술검증을 진행하여 인·검증에 장기간 소요됨, 이에 따라 신속한 혜택 제공에 한계 및 신청기업 업무 부담으로도 작용	한번의 서류심사*로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인·검증 절차 간소화  * 우수성(신기술 인증항목), 현장평가계획(기술검증 항목)을 같은 서류심사 단계에서 동시평가
		「환경기술 인증 평가절차 규정」 개정 완료('23.4월)	
14	브랜드 인증 도입, 변경 수수료 면제	단순 색상, 디자인 차이도 추가 제품으로 분류하여 등록·관리하고, 인증내역 변경 신고 시 신청 수수료 부과	다양한 디자인, 색상을 보유한 제품을 1개 기본모델로 통합·관리하고, 인증내역 변경에 대한 신청 수수료 면제
		「환경표지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개정 완료('22.12.21.)	
15	통합허가 사업장 최대배출기준 합리화	공공하·폐수처리시설에서 적정 처리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최대배출기준은 「물환경보전법」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어 시설개선 부담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 가능한 물질의 최대배출기준은 「물환경보전법」과 동일하게 적용  * '가'지역 기준 → '나'지역 기준(ex) TOC 50→75)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23.2.8.)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16	TMS 생물감시장치 등 증설 협의조건 명확화 <a href="#">완료</a>	특대 II 권역에 한해 기존공장의 증설은 조건부(생물감시장치가 포함된 자동측정기기 부착, 취수·방류량 제한 등 환경부 협의) 허용 중	TMS 생물감시장치 활용방안 구체화하고 외부재이용수 활용 시 취수방류량 제한에서 제외하여 재이용수 활용 증대
		특대고시에 따른 증설조건 협의사항 변경 완료('22.12.)	
17	통합허가 시스템과 기존 매체 업무의 중복 개선 <a href="#">완료</a>	통합관리사업장은 배출시설 운영·관리사항을 통합환경허가시스템과 기존 시스템(대기배출원 관리시스템(대기), 수질오염원 조사시스템(수질), 전국오염원 조사시스템)에 중복 입력 불편	통합환경허가시스템과 수질오염원조사시스템의 공통입력항목에 대한 DB간 정보연계
		(대기) SEMS 데이터 중 통합허가시스템 필요 항목값 연계('22.9월~) (수질) IEPS 수질 배출량 항목을 WEMS 시스템에 전송 연계('23.5월~)	
18	신규 수질오염물질 발생 시 사후신고 절차 신설 <a href="#">완료</a>	폐수배출시설 사업장에서 새로운 오염물질 배출시 사전 변경신고 의무가 있으나, 원료나 공정 등의 변경 없이 원인불명의 새로운 물질이 검출되는 경우 미리 변경신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	원료, 첨가물 및 공정 등의 변경이 없었으나 지도점검 과정에서 원인불명의 새로운 수질오염물질 배출이 적발되는 경우, 30일 이내 변경신고시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적용하지 않도록 개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23.4.4.)	
19	통합관리 사업장 권리의무승계 업무처리 기준 명확화 <a href="#">완료</a>	통합관리사업장이 비(非)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을 인수(합병, 양도양수 등)하는 경우, 권리의무승계에 따라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 신·증설 등에 해당하여 변경허가 대상이 되나 시설 인수전에는 다른 사업자의 시설이므로 통합허가 신청에 필요한 자료 확보 등이 곤란하여 사전 변경허가 신청이 불가	권리의무승계로 배출시설을 인수하는 경우 사후(1년이내) 변경허가
		적극행정으로 추진중('22.7월~)	

01 환경정책기본법  
02 탄소중립기본법  
03 수질환경보전법  
04 환경오염물질관리법  
05 국민체육진흥법  
06 환경영향평가법  
참고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20	통합관리 사업장 한계배출기준 유연성 확대	'15년 이후 설치한 시설과 동일 사양이거나 이에 상당하는 환경 저감 성능을 가진 '15년 이전 시 설은 유연한 한계배출기준 부여 불가	'15년 이전 설치한 상당한 저감 효과가 있는 시설도 유연한 한 계배출기준 부여
		적극행정으로 추진중('22.7월~), 통합관리 대상 「한계배출기준 고시」 개정 완료('22.11.7.)	
21	프탈레이트 사용금지 항목 환경표지 인증기준 개선	환경표지 인증기준 중 '프탈레 이트 사용금지' 항목에서 해당 물질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프 탈레이트 금지 범위 불명확	프탈레이트 사용금지 항목 해당 물질을 유해성이 입증된 물질로 명확하게 규정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개정 완료('22년 5개, '23년 15개)	
22	무라벨 먹는샘물 날개 판매 허용	무(無)라벨 먹는샘물은 포장 겉 면에 제품정보 의무표시를 전제 로 '묶음판매'만 가능('날개판매' 는 불가)	날개로 판매하는 먹는샘물 제품 에도 무라벨 QR코드를 표시하 여 판매 할 수 있도록 허용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개정 완료('22.12.30.)	
23	송전선로 건설을 위한 임시폐수 배출시설 허용	특대지역 내 도로·철도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에만 임시폐수배 출시설 설치 허용	특대지역 내 송전선로 지중화를 위한 터널공사 시에도 임시 폐 수배출시설 설치 허용
		「팔당,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고시」 개정 완료('23.6.2.)	
24	수질오염 방지시설 운영비용 지원기준 명확화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부 기 기를 폐수배출시설 또는 공공폐 수처리시설의 최종방류구에 부 착하여 가동하여야 함	최종방류구에 부착하여야 하는 기기 중 '화학적 산소요구량 자 동측정기기 및 그 부속기기'를 삭제하여 지원기준 명확화 및 현장 애로 해소
		「4대강 수계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23.4.13.)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25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전문기관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부과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ue; border-radius: 5px; padding: 2px;">완료</span>	기술 진단 전문기관 준수사항 위반 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영업정지 시 주민 피해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 완료('23.6.28.)	
26	수질 TMS 초과 판단기준 합리화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ue; border-radius: 5px; padding: 2px;">완료</span>	초과 판단기준은 3시간 평균치 연속 3회 이상 - 수질악화 판단 기준이 너무 짧아 사업장의 대응 어려움 - 단발성 초과도 행정처분 대상이 됨에 따라, 회피를 위해 약품 과다투입 등 사례 발생	초과 판단기준을 24시간 평균치 1회로 변경 - 일시적인 돌출농도에 의한 데이터 왜곡을 방지할 수 있으며, 측정값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기준 합리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23.4.4.)	
27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 관련 사후신고규정 마련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ue; border-radius: 5px; padding: 2px;">완료</span>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변경사항 발생할 경우 사전신고만 가능 - 시설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의 경우 행정절차 상 변경신고의 증빙자료가 뒷늦게 마련되어 불편 야기	시설의 명칭·대표자*, 소재지**는 변경 후 일정기간 내에 사후 변경신고 허용  * 변경 후 2개월 이내 / ** 변경 후 30일 이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23.4.4.)	
28	먹는샘물등 수입판매업의 사무소 공유사용 허용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ue; border-radius: 5px; padding: 2px;">완료</span>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실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의 사무실을 타 영업 사무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23.6.1.)	

01	환경정책기본법
02	탄소중립기본법
03	수질환경보전법
04	환경영향평가법
05	국민체육진흥법
06	환경영향평가법
	참고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29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허용업종 확대 및 준수사항 현실화  <span style="float: right;">완료</span>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상 류 10km에는 공장설립을 제한 하고 있으나 ① 일정지역에 공 장설립을 허용하되 ② 준수조건 부여	기존 허용업종과 유사하거나,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단순 부 품조립 공장 등 4개 업종*을 추 가로 허용하고, 폐수가 발생하 지 않는 공장은 차단·집수시설 설치 면제  * 병튀기 제조업, 단순 전자부품 제 조업, 곡물제분업, 간판제조업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23.1.3.)	
30	첨단산단 지원반 운영  <span style="float: right;">완료</span>	용수공급 계획수립 및 환경평가 협약시 지자체 인·허가 갈등, 관 계기관 의견수렴 과정 등으로 사업지연 우려	관행을 뛰어넘는 과감한 핀포인 트(pin-point) 지원 및 규제혁 신으로 첨단산업 도약을 위한 전담지원반 신설
		「첨단산단 조성 통합지원단」 구성·운영('23.6월~)	
31	신기술 인검증시설의 검사항목 축소  <span style="float: right;">완료</span>	환경신기술 인·검증과 비점오염 저감시설 성능검사의 중복요소 로 행정적, 재정적 부담	환경신기술 인·검증 및 성능 확 인을 받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성능검사 항목 축소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완료 ('23.8.16.)	
32	건축자재 오염물질 관리 관련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  <span style="float: right;">완료</span>	실내용 건축자재는 오염물질 방 출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확 인 표지 부착의무가 있으나 단 순 표지 미부착 사업자와 표지 무단사용 사업자를 동일하게 제 재(과태료 최대 2천만원)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충족했으 나 표지를 단순 미부착하는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감 경된 수준의 과태료 부과(최대 5백만원)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 완료('23.9.14.)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33	통합허가 사업장 수질기준 합리화	통합허가사업장이 한계배출기준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입지와 관계없이 일관적으로 청정지역의 불소 배출허용기준 적용 * 폐수내 불소 배출기준: (기존) 15mg/L → (통합허가) 3~15mg/L	청정지역 외 사업장이 불소에 대하여 한계배출기준(청정지역 수준 3mg/L)을 적용받는 경우,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
		수질 배출영향분석 모델링 개선방안 연구용역 완료(과학원, '22.10.~'23.8.) 「통합관리 대상한계 배출기준고시」 개정 완료('23.12.29.)	
34	수도꼭지 제품(EL. 221) 환경표지 인증기준 폐지	현재 수도꼭지 제품(EL. 221) 환경표지 인증기준은 KS·KC 인증 기준과 유사하나, 지자체·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기업 부담	수도꼭지 제품 환경표지 인증기준(EL. 221)을 폐지하여 기업 부담 경감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개정 완료('23.12.29.)	
35	업종 특성을 고려한 디스플레이 특화 시설기준 제정	업종별 유해화학물질 취급 형태 등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급시설 설치·검사기준은 취급 특성을 미고려	완제품, 모듈형태로 설치운영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디스플레이 업종 맞춤형 시설기준 마련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완료('23.12.29.)	
36	LED조명 환경표지 인증기준 합리화	LED 조명과 관련하여 환경표지 인증과 성능시험인증(KS, 고효율인증)이 유사항목을 운영 중이나 환경표지 기준이 높게 설정	LED 환경표지 인증기준 중 타 인증(KS, 고효율인증)과 유사한 항목은 기준을 동일하게 개선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개정 완료('23.12.29.)	

01 환경표지인증  
02 탄소중립인증  
03 수질환경표지  
04 환경표지인증평가  
05 국민체감  
06 환경영향평가  
참고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37	목재 건축자재의 폼알데하이드 방출 시험방법 이원화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ue; border-radius: 5px; padding: 2px;">완료</span>	'실내용 바닥장식재' 및 '벽 및 천장 마감재'의 환경표지 인증 기준을 소형챔버법으로 일원화	목재 건축자재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시험방법을 소형챔버법 또는 데시케이터법으로 가능하도록 개선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개정 완료('23.12.29.)	
38	녹색산업 관련 31개 시스템 통합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ue; border-radius: 5px; padding: 2px;">완료</span>	사업별로 다수의 시스템이 난립하고 시스템간 정보가 연동되지 않아 사용자(환경기업, 연구자 등)의 불편함 증가 ※ '20년 국민참여 예산과제	분산된 31개 시스템을 유사 사업별로 통합구축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제고
		시스템 통합 구축 완료('23.11월, <a href="http://www.ecosq.or.kr">www.ecosq.or.kr</a> )	
39	반도체업종 스크러버 온도계 부착 의무 면제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ue; border-radius: 5px; padding: 2px;">완료</span>	반도체 업종의 스크러버의 소각/반응시설 기준이 불명확하여, 일부 사업장에서 소각시설로 간주하여 온도계 부착 의무 이행중	스크러버를 반응시설로 분류하는 등 기준 명확화
		유권해석(스크러버를 반응시설로 분류) 안내('23.10월)	
40	비산배출시설 총유기탄소(TOC) 측정방식 개선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ue; border-radius: 5px; padding: 2px;">완료</span>	동일 냉각탑에 연결되었더라도 냉각수가 열교환기에서 냉각탑으로 유출되는 모든 지점에서 측정	냉각탑에서 냉각수가 1개 배관으로 유입·유출되는 경우 시료 채취지점을 1개 지점으로 같은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세부 이행지침」 개정 완료('23.12.22.)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41	재난(대설·한파 등) 시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면제	섬에 위치한 배출시설로서 기상 악화로 인한 장기결항이 발생한 경우 자가측정 생략	태풍, 호우, 한파, 폭염 등 재난 경보 발령으로 대기 자가측정 수행시 인적·물적 피해발생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자가측정 생략 가능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23.6.28.)	
42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분담 분할납부 요건 확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및 원료물질 사업자가 가습기살균제피해 구제분담금 납부 시 분할납부가 가능하나, 납부 대상 사업자 중 일부*에 국한 * 부과 분담금 100억원 초과, 중소기업	기업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분할납부 요건을 전체 사업자로 확대
		가습기 살균제 추가분담금 부과 및 징수 완료('23.5월)	
43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 금리 인하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 운영 중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의 급격한 상승 등으로 중소기업 이자부담 가중 및 자금 경색 우려 * 정책융자 대출금리 : '22년 1분기 1.82% → '22년 4분기 3.73%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시 정책금리 대비 1~2% 금리 인하 * '24년 1분기(정책금리) 3.442% → (금리인하) 1.44~2.44%
		「환경개선특별회계 등 융자금 지원조건 고시」 개정 완료('23.7.1.)	
44	수질 TMS 상대정확도 시험결과 활용 규정 개선	상대정확도 적합 판정을 받은지 30일이 지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도 행정청 지도·점검시 환경공단의 상대정확도 시험을 다시 받게 함에 따라 사업장 부담 가중	환경공단의 상대정확도 시험 적합결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청 지도·점검시 상대정확도 시험결과로 활용
		수질TMS 업무편람 개정 완료('23.12.27.)	

01  
환경정책기본계획  
02  
탄소중립기본계획  
03  
수질환경기준  
04  
환경영향평가  
05  
국민체감  
06  
환경영향평가  
참고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45	환경개선용수 회귀유량 측정설비 설치의무 완화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ue; border-radius: 5px; padding: 2px;">완료</span>	환경개선용수 사용 신청 시 회귀 수량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측정설비 설치 의무화	환경개선용수 사용신청시 유량 측정 설비 설치의무 폐지 및 대체수단 도입(물이용체계도, 유수 흐름도) 등 절차 간소화
		「댐 용수공급 규정」 개정 완료('23.11.22.)	
46	수질자동 측정기기 부착사업장 배출부과금 산정기준 완화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ue; border-radius: 5px; padding: 2px;">완료</span>	수질오염물질 배출부과금 산정 시 배출량과 배출농도를 '3시간 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	'24시간 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여 일시적인 수질악화에 사업장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개정 완료('23.12.29.)	
47	동물원 수족관법에 따른 과태료 금액 조정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ue; border-radius: 5px; padding: 2px;">완료</span>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고, 기존과태료 금액 과다	안전관리 통보 미흡 등 과태료 금액 과다한 것에 대한 경감 등 과태료 금액 조정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완료('23.12.12.)	
48	특정수질 유해물질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대상 농도기준 완화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ue; border-radius: 5px; padding: 2px;">완료</span>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대상이 되는 일부 특정수질오염물질(아크릴아미드, 나프탈렌, 폼알데하이드 등 7개 물질)의 농도기준으로 정량한계값 적용	정량한계 값보다 완화된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낮추고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23.8.16.)	
49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ue; border-radius: 5px; padding: 2px;">완료</span>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부착면제 기준 모호	가이드라인을 통해 측정기기 부착 면제기준 구체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개정 완료('23.6.30.)	

진행중 과제 (45개)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50	플라스틱의 탄소발자국 산정에 필요한 기초정보 DB 등 확충 <span style="color: green;">[진행중]</span>	일부 기초데이터는 없었으며, 나프타 등 일부 데이터는 20년 이상된 노후 데이터임	노후데이터는 최신데이터로 개정, 없었던 기초 데이터는 제정
		필수 기초유기화학물질의 탄소배출량 정보 DB 구축('22년~'30년)	
51	환경표지인증 개선 <span style="color: green;">[진행중]</span>	① 인증마크 사용료 폐지 필요 ② 환경과 무관한 평가항목(내구성, 안전성 등) 삭제 필요 ③ 일부 품목 인증실적 저조	① 인증마크 사용료 폐지 ② 환경과 무관한 평가항목 삭제 ③ 인증실적이 저조한 품목 축소
		① 환경표지 인증심사 사용료 폐지 시행('24년~) ②, ③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개정('22년~'25년)	
52	하수 분뇨찌꺼기 성분검사항목 개선 <span style="color: green;">[진행중]</span>	찌꺼기 성분 검사항목이 토양오염우려기준에 해당하는 물질들로 규정	실 처리상황에 맞게 검사항목 정비 * 찌꺼기의 50% 이상이 소각-건조 등으로 처리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중	
53	집수구 삽입형 IoT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적정 분류항목 마련 <span style="color: green;">[진행중]</span>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상 여과형시설, 스크린형시설 등으로 분류 → 집수구 삽입형 시설은 자동역세척 기능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성능검사 시 스크린형시설로 분류되고 단독 설치를 허용받지 못해 판매 애로 * 동 시설은 IoT센서로 모니터링하여 필터 자체를 교체하므로 자동역세척 기능이 불필요	비점오염저감시설 구조, 처리기작 등을 고려한 유형분류 등 관련 규정 및 매뉴얼 개정안 마련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매뉴얼」 개정중	

01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

02

탄소중립 실현

03

수질환경개선

04

환경오염평가

05

국민체감

06

환경애로

참고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54	제재처분 효과 승계시 선의 양수인 보호 (「환경오염피해 구제법」)  <span style="color: #00AEEF;">▶ 진행중</span>	영업 양·수도 등으로 인한 사업 자 변경 시 양도인 등이 받은 행 정처분이 양수인에게 승계되도 록 규정	처분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양 수인 등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이 승계되지 않도록 개정
		「환경오염피해구제법」 개정중(국회발의, '22.12.27.)	
55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의 제재기준 합리화  <span style="color: #00AEEF;">▶ 진행중</span>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를 관 리하고 있으나, 행정형벌이 위 반의 경중과 관계없이 획일적으 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의 경 우 과태료 조항 신설 등 경미한 위반행위 행정제재 기준 합리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중(국회발의, '23.4.13.)	
56	토양정화업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제도 도입  <span style="color: #00AEEF;">▶ 진행중</span>	토양정화업자가 2년 이상 영업 실적이 없는 경우 등 「토양환경 보전법」 위반사항 발생 시 영업 정지 조치만을 부과할 수 있어 기업경영에 상당한 애로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할 수 있 는 과징금(대체과징금) 제도를 도입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중(국회발의, '22.11.18.)	
57	「가축분뇨법」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  <span style="color: #00AEEF;">▶ 진행중</span>	「가축분뇨법」은 과태료 가중부 과 기준이 최근 2년간 동일 위반 행위 여부로 규정되어 타법 (통 상 1년) 대비 과도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 법」, 「폐기물관리법」, 「수도법」 등	과태료 가중 부과기간을 1년으로 조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마련중	
58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규제 개선  <span style="color: #00AEEF;">▶ 진행중</span>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재활 용업체 등의 동일 위반행위에 대해 벌칙·과태료가 이중으로 부과	조문 정비 등으로 불합리한 처벌규 정 등 개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중(국회발의, '23.9.26.)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59	규제·의무사항 데이터베이스 구축  <span style="color: green;">진행중</span>	중소기업은 인력 한계로 환경안전관리 규제준수 및 ESG 관련 동향에 적기 적정 대응 곤란	영세업체가 스스로 환경법령·ESG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시스템 개발 및 적용 지원
		환경안전통합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수립('23.5월), 시스템 구축예산 반영 등 추진중	
60	녹색분류 체계에 다양한 화학적 재활용 포함 검토  <span style="color: green;">진행중</span>	열분해 외 기타 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 방식*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관련 투자 시 애로  * 해중합, 용매추출, 가스화 등	다양한 화학적 재활용 기술에 대해 기술발전 추이를 보아가며 환경 영향, 자원순환 기여 등을 고려해 추후 녹색분류체계 개정(매 3년)시 포함 검토
		녹색분류체계 개정 검토중	
61	사용후배터리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 개선  <span style="color: green;">진행중</span>	배터리(이차전지)의 재활용 물질 함량 정보 확인하지 않음	배터리(이차전지)의 재활용 물질 함량(%)을 부가적인 환경정보로서 표시할 수 있도록 지침 마련
		「배터리(이차전지)의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 고시 개정안 마련중 ※ EU 전기차 배터리 산정 가이드 최종본(~'24.6월) 확인 후 고시 예정	
62	사용후배터리 원부자재 기초정보 DB확충 및 탄소배출량 평가 기법 개발  <span style="color: green;">진행중</span>	환경성적표지 공통지침(일반제품) 및 해외 LCI DB 활용하여 탄소배출량 평가	국내 배터리(이차전지) 업계 현황 및 특성을 반영한 지침 마련
		배터리 주요 원료물질 및 외장재질 LCI DB 개발('22년 18개, '23년 3개) 「배터리(이차전지)의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 고시 개정안 마련중 ※ EU 전기차 배터리 산정 가이드 최종본(~'24.6월) 확인 후 고시 예정	
63	친환경 생분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규제 개선  <span style="color: green;">진행중</span>	생분해 일회용제품 인증 불가, 인증 사용료 부담, 생분해 플라스틱 퇴비화 조건 인증	생분해 일회용 제품 인증 유예(~'24), 인증 사용료 폐지('24.1), 토양조건 마련('22), 해양조건 마련('24)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개정('22.12.29.) 「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 고시」 개정('22.3.21.) 「해양조건 인증기준」 개정중(~'24년)	

01

환경영향평가제도

02

탄소중립

03

순환경제

04

환경영향평가

05

국민채권

06

환경영향

참고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64	제재처분 효과 승계시 선의 양수인 보호 (환경오염 시설법)	영업 양·수도 등으로 인한 사업 자 변경 시 양도인 등이 받은 행 정처분이 양수인에게 승계되도 록 규정	처분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양수인 등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이 승계되지 않도록 개정
		「환경오염시설법」 및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중('23.9.~'24.7.)	
65	환경성적 표지인증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국제환경규제 대응 불가 - 검·인증제도의 국제통용 성확보 필요</li> <li>② 인증실적 저조 품목군 축소, 생산재 위주 제품군 운영</li> <li>③ 인증심사위원회 폐지, 제경 비 폐지 필요</li> <li>④ 유사파생모델 기준 無</li> <li>⑤ 현재 유효기간 3년 - 기업의 인증부담 완화를 위해 유효기간 확대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LCI DB 국제플랫폼 등록 및 해외인증기관과 상호인정 체결</li> <li>② 인증실적이 저조한 품목 축소</li> <li>③ 인증심사위원회 폐지 여부 검토, 인증심사 제경비 폐지</li> <li>④ 유사파생제품 범위 확대</li> <li>⑤ 유효기간 확대 타당성 검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LCI DB 개발 국제플랫폼(GLAD) 등록(누적 170건, ~'23년), 해외 인증기관(노르웨이 EPD) 상호인정 협정('24년)</li> <li>②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고시 개정(안) 마련(~'24년)</li> <li>③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수수료」고시 개정 추진(~'25년)</li> <li>④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고시 개정(안) 마련(~'24년)</li> <li>⑤ 국제상호인정 협정기준 고려한 유효기간 확대 타당성 검토(~'24년)</li> </ul>	
66	정수시설의 폐수배출시설 제외기준 개선	고온의 소각시설에 냉각수를 공 급하기 위해 설치되는 정수시설 은 폐수배출시설로 분류되어 별 도의 방지시설 설치·운영 또는 위탁처리 등으로 비용부담 가중	정수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사 업장 내 폐수처리시설 공정으로 유입시,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 함으로써 기업의 인허가 행정절 차 부담 감소와 환경시설 중복 투자 해소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중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67	자연재난(가뭄 등) 시 저수조 청소 의무 유예	수돗물을 다량 사용하는 대형건 축물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저수조를 반기 1회 이상 청소 의무 有	가뭄으로 인해 제한급수 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물 절약을 위해 저수조 청소의무 유예 가능토록 제도개선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중(~'24년)	
68	액비 살포기준 관련 규제 합리화	액비 살포 시 흙을 갈거나 로터리작업을 하여 액비가 흘러내리지 아니하고 토양속으로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하여야함 ※ 나무가 식재되어 있거나 하우스 등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로터리작업 곤란	시설 원에 및 과수 농업은 액비 살포시 흙을 갈거나 로터리 작업을 하지 않을수 있도록 허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중(~'24년 상반기)	
69	수산물 단순 가공시설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대상에서 제외	고정된 배수관을 통하여 해조류·갑각류·조개류를 채취한 상태 그대로 또는 삶은 제품을 구입하여 물세척만 하는 시설은 “기타수질오염원”으로 분류	채취한 상태 그대로 또는 삶은 제품을 구입 후 물세척만 하는 기타수질오염원의 취급 대상을 수산물 전체로 확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중(~'24년 상반기)	
70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 국고보조금 지원 관련 규정 정비	산업단지 내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입주 시 1개 사업장 면적이 전체의 75% 이상 또는 배출 오염부하량이 총 유입부하량의 80% 이상일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제외 대상 사업 중, 2개 이상 사업장이 입주하는 경우 1개 사업장 면적이...(중략)...일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로 개정 추진
		「'24년도 집행관리 및 '25년도 예산편성지침」 수립 시 반영 예정	

01 환경정책기본법  
02 탄소중립기본법  
03 수질환경보전법  
04 환경영향평가법  
05 도시계획법  
06 환경영향평가법  
참고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71	산업공정 배출수의 재이용 허용	폐수배출시설에서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만 다른 사업장의 공업용수로 공급할 수 있었음	가뭄으로 공업용수 공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폐수를 사용하려는 사업장에서 안전 요건(적정처리 후 최종 방류, 연접 위치, 고정관로 사용 등)을 갖추면 공급사업장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도 용수공급 가능토록 개선
	진행중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중	
72	생분해성 제품 인증기준 다양화	생분해성 제품 인증기준(환경표지 인증 EL 724*)에서 생분해 조건을 매립 등 퇴비화 조건**으로 한정 * 임의인증으로 인증시 녹색제품 포함, 폐기물부담금 면제 등 혜택 부여 ** 온도 58℃, 180일 이내에 90% 이상 생분해	상온 일반 토양에서 지속 사용되며 회수 곤란한 제품*에 대한 생분해 조건** 인증기준을 마련('22.9)하고, 해양/수계 환경의 인증기준도 마련('24년) * (예) 농업용 멀칭, 묘목포트 등 ** 온도 20~28℃, 24개월 이내 90% 이상 생분해
	진행중	「환경표지대상 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개정 완료('22.12.29.)	
73	안정적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위한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기준 준수 예외 설정	하수는 최종 방류구를 반드시 거쳐 방류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강우시 처리수와 미처리수(By-Pass)가 최종 방류구에서 합류되어 전체 방류하수의 수질이 악화로 재이용시설에 유입 곤란	강우시 처리수와 미처리수(By-Pass)가 합류되는 최종방류구 전에도 재이용시설에 유입할 수 있도록 하여 하수재이용수의 안정적 수질 확보
	진행중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중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74	폐수 전량위탁 사업장의 위탁처리실적 보고의무 개선	폐수 전량위탁 사업장은 매년(다음 해 1월 10일까지) 폐수성상별 위탁물량 및 폐수수탁처리업소 등에 관한 사항 의무 보고 - 미준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폐수 전량위탁 시 관련 정보를 전자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보고의무 면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중	
75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기준 완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대상 물질(먼지, NOx, SOx) 배출시설을 증설 또는 폐쇄하는 경우 허가 또는 신고 의무 * 대기오염이 심각한 권역·지역을 지정, 사업장별로 연도별 배출허용 총량을 할당하여 관리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절차 간 소화 방안 마련
		「대기관리권역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중(연구용역 추진중, '23.10.19. ~'24.4.15.)	
76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및 기술진단 전문기관 등록기준 합리화	①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 신청 시, 사무실과 실험실 위치가 상이할 경우 최단거리에 위치하도록 행정지도 ②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및 기술진단전문기관 중복 신청시 중복되는 측정장비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 부재	① 사무실과 실험실 소재지가 상이하더라도 허용 ②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및 기술진단 전문기관 중복 신청시 중복 장비 인정
		「하수도법 시행령」 및 「기술진단 전문기관 등록·관리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마련중	

01 환경영향평가제도  
02 탄소중립 실현  
03 수질환경보전법  
04 환경영향평가제도  
05 국민체감  
06 환경영향평가  
참고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77	가축분뇨 처리업 의무고용 기술인력 기준 완화	가축분뇨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전문업체와 대행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도 기술인력을 그대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어 업체경영 등 어려움	가축분뇨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전문업체와 대행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는 기술인력을 채용하지 않도록 법령 개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마련중	
78	계획관리 지역 내 특정 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 합리화	계획관리지역 내 아스콘 생산공장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을 현장에서 이행하기 어려워* 업계의 부담 가중 * 서울·경인지역 50개 아스콘 업체들이 유해물질 저감시설을 설치했으나 기준을 달성하지 못했으며, 최적방지시설 공모도 추진했으나 기준치 충족설비 개발 실패	아스콘 사업장을 포함하여 배출허용기준 적절성 연구를 거쳐 차기 특정대기유해물질 설치허가 대상 적용기준 합리화 추진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 마련중	
79	조선소 도장시설에 대한 친환경 도로 사용률 기준 한시적 유예	옥내·야외도장 시설에서 '19년까지 방지시설을 30%이상 설치했을 경우 친환경도로 사용률을 '20년 2%, '21년 10%, '22년 30%, '23년 45%, '24년 이후 60% 이상 달성해야 함	방지시설을 30% 이상 설치했을 경우 친환경도로 사용률을 '24년 30%, '25년 45%, '26년 이후 60% 이상 달성하도록 2년 유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중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80	한국수자원 공사의 해외 하수도사업 추진을 위한 기능 부여  <span style="color: green;">▶ 진행중</span>	한국수자원공사는 해외사업 범 위에 하수도 분야 각 법적 기능 으로 부여되지 않아 해외사업 불가 * 하수도 분야는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하고 있으나, 위탁집행형 준 정부기관 특성으로 사업발굴, 마 케팅 등 주도적 해외사업 추진에 한계 존재	한국수자원공사의 해외 하수도 사업 기능 부여를 통해 대규모 물 인프라사업 추진근거 마련
		「한국수자원공사법」 개정안 마련중	
81	비산배출시설 전산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span style="color: green;">▶ 진행중</span>	비산배출시설 인·허가 신청, 점 검결과 등 서류로 제출	비산배출시설 인·허가와 같은 각종 행정서류의 효율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전산관리 의무화 등 법적 근거 마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중	
82	온배수 재이용 범위 확대를 위한 물 재이용법 개정  <span style="color: green;">▶ 진행중</span>	재이용 가능한 온배수의 범위에 발전소(원자력 제외) 온배수만 규정	재이용 가능한 온배수의 범위를 공장 온배수까지 확대
		「물 재이용법」 개정중(국회발의, '21.12.16.)	
83	통합환경관리 계획서 정보공개 제도 개선  <span style="color: green;">▶ 진행중</span>	환경오염시설법 제27조에 따라 통합허가사업장의 사전협의, 허 가(변경허가), 연간보고서의 모 든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 록 하고 있어 사업장 영업비밀 유출 우려	통합환경허가 대상 사업장의 영 업비밀을 보호하되,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환경정보 위 주로 공개항목 개편
		「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 심의위원회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 정」 개정안 마련중(연구용역 추진중, '23.11.~'24.3)	

01  
환경정책기본법  
02  
탄소중립기본법  
03  
수질환경보전법  
04  
환경영향평가법  
05  
국민체감  
06  
환경정보  
참고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84	유해대기오염 물질(HAPs) 비산배출시설 검사제도 개선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5px; padding: 2px;">진행중</span>	통합환경관리사업장 비산배출 시설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비산배출시설 정기점검과 「환경오염시설법」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 정기검사로 각각 구분지어 실시	대상사업장의 검사 일정을 사전 검토하여 같은 해에 환경청의 정기검사와 한국환경공단의 정기점검이 실시되는 경우 합동점검을 통해 사업장 부담 완화
		합동점검 실시	
85	전기차 전압측정방식 간소화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5px; padding: 2px;">진행중</span>	전기차 전류, 전압측정 시 환경부 형식승인을 취득한 장비로 측정	전류, 전압 측정시 OBD 단자를 활용한 측정방식도 허용, 전기차 전압 측정시 OBD 방식의 전류, 전압 측정값이 직접 측정장비와 동일함을 입증하였을 경우 OBD 방식을 허용
		전류, 전압측정시 OBD 단자를 활용한 측정방식 허용방안 마련중	
86	특정대기 유해물질 설치허가 적용기준 합리화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5px; padding: 2px;">진행중</span>	정량한계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는 배출시설의 특정대기유해물질 설치허가 적용기준	특정대기유해물질 설치허가 대상 적용기준 합리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중	
87	비산먼지 발생 신고 시 직함 기재 허용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5px; padding: 2px;">진행중</span>	비산먼지 발생신고 시 대표자 성명만 기재 허용	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대신 직함 기재 허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중	
88	배출물질 자체측정 인정범위 확대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5px; padding: 2px;">진행중</span>	사업장에서 자체측정한 경우 정도검사 성적서 제출 의무화	일정요건*에 따라 측정기기를 관리한 경우 측정기기의 형식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자의 자체 측정값을 인정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세부이행지침」개정안 마련중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89	자가측정 주기 개선 등 전반적 제도 개선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5px; padding: 2px;">진행중</span>	자가측정 주기 신뢰성 확보 및 환경오염시설법 자가측정주기와 형평성 고려 필요	1~5종 사업장 측정주기 개선 및 타 법령과의 형평성 고려 등 전반적 제도개선 용역 추진 및 법령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중	
90	자동차연료 첨가제 촉매제 검사합격 증명서 영문병기 추진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5px; padding: 2px;">진행중</span>	자동차연료 첨가제 촉매제 검사 합격증명서 국문인증서 발급	기업의 별도요청 없이도 영문인증서 또는 국영문 병기 인증서를 발행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수출 기업의 부담 완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중	
91	대기관리 권역의 사업장 변경신고 방식 개선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5px; padding: 2px;">진행중</span>	배출총량에 미미한 영향을 미치는 증설, 교체 건마다 신고 필요로 기업 부담	배출총량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신고 건은 연말 합산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중	
92	대기관리권역 월별 배출량 산정결과 제출기한 조정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5px; padding: 2px;">진행중</span>	월별 배출량 산정결과 제출기한이 익월 15일로 규정	제출기한을 익월말로 변경하여 신고로 인한 기업부담 완화
		대기관리권역 월별 배출량 산정결과 제출기한 조정 개선안 마련중	
93	자동차 평균배출허용 기준 위반 시 제재 합리화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5px; padding: 2px;">진행중</span>	자동차 평균배출허용기준 위반 시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자동차제작사(수입사 포함)는 연도별 판매하는 휘발유 및 가스차의 해당 평균배출량을 허용기준 이하로 준수하여야 함	자동차 평균배출허용기준 위반 시 과징금 부과(매출액의 1.5%)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마련중	

01  
환경정책기본법  
02  
탄소중립기본법  
03  
수질환경보전법  
04  
환경영향평가법  
05  
국민체육진흥법  
06  
환경영향평가법  
참고

연번	과제명	세부내용	
		Before	After
94	기타수질 오염원 설치관리 신고시 직함 기재 허용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신고 시 신청서상 대표자 표기 방식 이 성명으로, 대표자 바뀔 경우 수시로 변경신고서 제출 필요	허가(신고) 서식에 '대표자 기재 란'에 법인의 경우 성명 대신 직 함 기재하도록 통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중	

진행중

### ☑ 과제별 담당 부서

	과제번호	담당 부서 (044-201-****)
과제 분류 (총 94개)	30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6392)
	59, 60	녹색전환정책과 (6694)
	11, 12, 14, 21, 34, 36, 37, 45, 50, 51, 55, 61, 62, 63, 65, 72	녹색산업혁신과 (6712)
	13, 38	녹색기술개발과 (6672)
	3, 4, 5, 15, 17, 19, 20, 33, 46, 48, 83	통합허가제도과 (6717)
	85	대기미래전략과 (6946)
	39, 40, 41, 49, 75, 78, 79, 81, 84, 86, 87, 88, 89, 91, 92, 94	대기관리과 (6910)
	90, 93	교통환경과 (6933, 6924)
	32	생활환경과 (6798)
	45, 80	물관리총괄과 (7615)

	과제번호	담당 부서 (044-201-****)
과제 분류 (총 94개)	16, 23, 24, 27, 31, 53	물환경정책과 (7011)
	6, 18, 26, 44, 57, 58, 66, 68, 69, 70, 71, 74, 77	수질수생태과 (7071)
	2, 8, 25, 52, 73, 76, 82	생활하수과 (7021)
	29	물이용정책과 (7151)
	10	수도기획과 (7112)
	1, 22, 28, 56	토양지하수과 (7185)
	47	생물다양성과 (7244)
	9, 67	환경보건정책과 (6753)
	7, 42, 54, 64	환경피해구제과 (6803, 6813)
	35	화학안전과 (6841)

01  
환경정책기획과

02  
탄소중립기획과

03  
수질환경과

04  
환경보전정책과

05  
국민체감

06  
환경유역

참고

## 참고 1

## 현황 및 담당부서

☑ (현황) 총 363개 추진과제 중 234개 완료, 129개 정상 진행 중  
(완료/진행, '24.3월말)

화학물질 관리 (43개)	탄소중립 추진 (51개)	순환경제 구현 (79)	영향평가 내실화 (32개)	국민체감형 규제 (64개)	기업 현장애로 (94개)
38/5	37/14	42/37	26/6	42/22	49/45

☑ 주요과제 담당 부서

구분	주요업무	담당부서	연락처 (044-201-****)
총괄	규제업무 총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6392
기후· 녹색 산업	탄소중립	기후전략과	6643
	배출권거래, 온실가스	기후경제과	6582
	통합허가사업장 배출기준	통합허가제도과	6692, 6735
대기	친환경차	대기미래전략과	6846, 6882
	대기배출허용기준	대기관리과	6905, 6914
수질· 수자원	상수원보호구역	물이용정책과	7151
	수변구역	물환경정책과	7013
	도양정화, 먹는샘물	도양지하수과	7177, 7184
	공공폐수처리시설, 가족분뇨배출시설	수질수생태과	7068, 7079
	친수구역	수자원관리과	7658
자연	공원관리	자연공원과	7318
	환경영향평가	국도환경정책과	7271, 7280
자원	순환경제, 포장재·다회용용기	자원순환정책과	7350
	폐기물처리시설, 음식물류폐기물	폐자원관리과 /폐자원에너지과	7371, 7403
	폐기물 수집·운반, 재활용 허용	자원재활용과	7393
화학	화학물질관리, 유독물질 지정관리	화학물질정책과	6779, 6784
	취급시설기준, 기술인력, 안전교육	화학안전과	6837, 6832

※ 동 업무 핸드북 상의 과제 구분은 '24.3월말 기준으로, 관련 법령의 제·개정 완료 여부 및 시행시기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과제별 담당자 연락처는 추진과제별 목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의 순환을 촉진할 수 있는 **혁신적인 신산업의 실현**을 돕기 위해 **순환경제 분야 규제특례** 제도가 '24년부터 시행됩니다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에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 및 서비스의 실증사업과 신속한 시장출시 지원
- 사업기간 : 2024. 1. 1. 부터
- 근거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22.12 제정) 제27~제34조

## ☑ 특례분야

### ① 신속확인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 및 서비스 관련 허가 등의 확인이 필요한 기관·기업

**규제 유무가 불분명한 경우 규제 신속확인을 신청하면  
30일 이내 규제의 유무를 확인**

### ② 실증특례

※ 2년 이내, 1회 연장 가능

- 신기술 서비스가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여건 등이 없는 경우
- 기준·규격·여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아 사업 시행이 어려운 경우

**일정 조건(구역, 기간, 규모 등) 하에서 실증테스트를 허용,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정부는 관련 규제법령 정비**

### ③ 임시허가

※ 2년 이내, 1회 연장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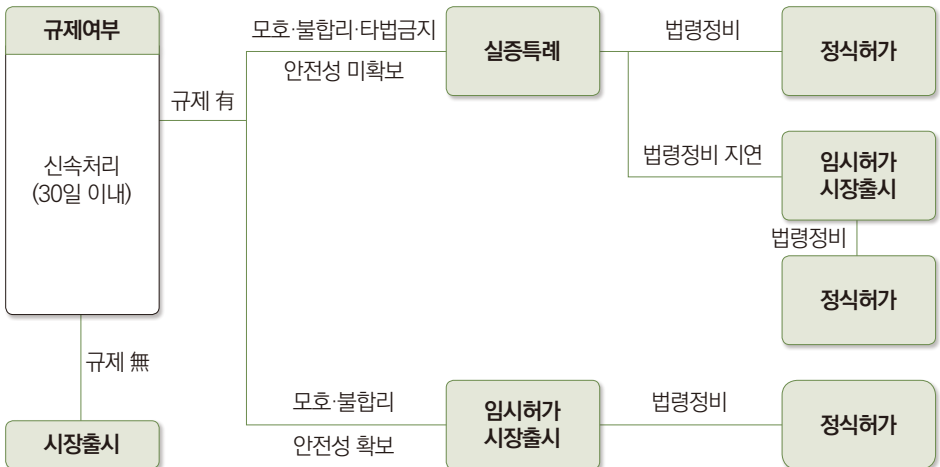
-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여건 등이 없는 경우
- 기준·규격·여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아 사업시행이 어려운 경우

안전성이 확보된 신기술 및 서비스에 대하여  
우선 시장출시가 가능하도록 임시허가 부여, 규제범령 정비

### ☑ 지원사항

- 실증특례,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실증사업비(최대 120백만원) 및 책임보험료(최대 15백만원) 지원
- 1:1 컨설팅, 신속처리·규제특례·임시허가 신청서 작성 지원 등

### 규제샌드박스 제도 흐름도



- ▶ (신청접수) [sandbox@keiti.re.kr](mailto:sandbox@keiti.re.kr)  
※ 신청서류 및 자세한 안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http://www.keiti.re.kr))에서 확인
- ▶ (상담 및 문의) 02-2284-1790, 1791(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TF)

화학물질 등록비용 절감 등으로 기업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위험에 비례한 화학물질 차등관리로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하였습니다(’24.2.6.).  
개정 법률은 내용에 따라 ’25.1.1., ’25.8.7. 순차 시행 예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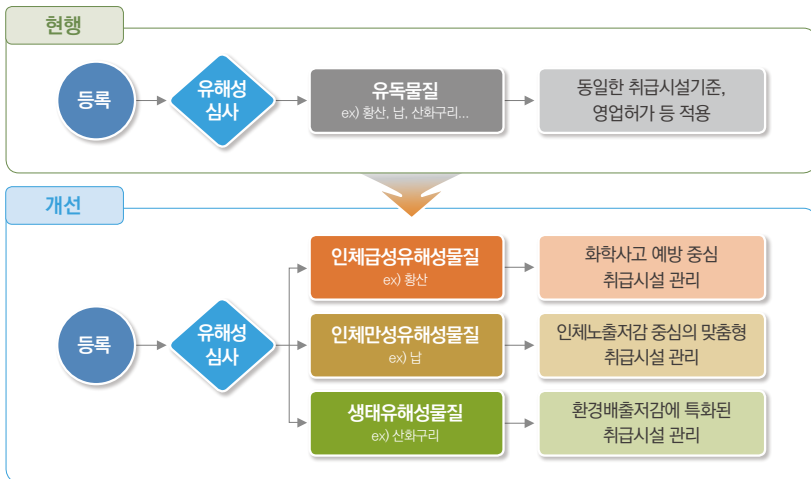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

#### ☑ 신규화학물질 등록·신고 기준 조정(’25.1월 시행 예정)

- 신규화학물질의 등록·신고 기준을 현행 연간 취급량 0.1톤에서 유럽연합, 일본 등과 동일한 연간 취급량 1톤으로 변경

#### ☑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25.8월 시행 예정)

- 기존 ‘유독물질’을 유해 특성에 따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등 세 가지로 분류하여 물질의 특성에 맞는 관리수단 적용





## 화학물질관리법

###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주기 차등화(\*25.8월 시행 예정)

-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및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위험도에 따라 취급사업장의 검사주기 차등화

### ☑ 유해화학물질 영업 신고제 도입(\*25.8월 시행 예정)

- 취급량이 적거나 위험도가 낮은 경우 신고로 간소화  
\* (기존) 유해화학물질 취급하려는 자 영업허가 대상 → (개선) 취급시설 없는 판매업은 신고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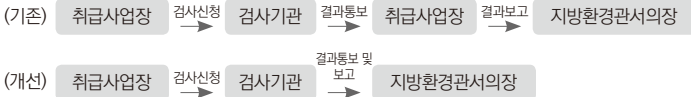


### ☑ 연구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 일원화(\*25.8월 시행 예정)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실 화학약품 취급시설에 대하여 일상점검을 실시한 경우 화관법에 따른 자체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  
\* (기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은 화관법 자체점검 및 연안법 일상점검 중복실시  
→ (개선) 화관법 자체점검 면제

###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 신고절차 효율화(\*25.8월 시행 예정)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 보고 주체를 변경하여 신고 절차 효율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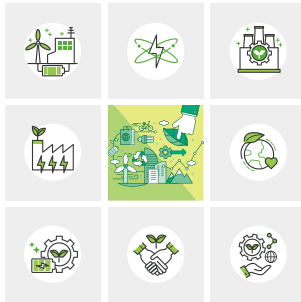
### ☑ 국외 화학물질 수입업자 부담 완화(\*25.8월 시행 예정)

- 국외에서 화학물질을 제조 생산하려는 자는 국내 대리인을 통해 화학물질확인, 허가 신청 등의 업무 수행 가능

▶ 법률 개정 방향에 맞춰 하위 법령 마련중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안내될 예정입니다.

www.me.go.kr

기업현장·지자체 담당자를 위한  
**환경규제 혁신 핸드북**



환경부